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경찰관 교육방안

《研究陣》

연구위원 : 김 용 세 (대전대학교 법학부 교수)

: 김 재 민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범죄사건처리와 경찰의 피해자대책	6
제1절 범죄피해와 피해자보호	6
제2절 형사절차와 피해자보호	28
제3절 경찰의 피해자대책	42
제3장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56
제1절 경찰수사와 피해자보호	56
제2절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현황	65
제3절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대책 개선방안	78
제4절 경찰의 위기개입: 가능성과 활용범위	116
제4장 경찰관 교육훈련	125

제1절 경찰인사와 교육훈련체제	125
제2절 피해자대책에 관한 교육훈련체제	165
제5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79

< 표 차 례 >

<표 2-1> 형범범 및 특별범범 발생현황(2003)	6
<표 2-2> 재산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2001~2004)	7
<표 2-3> 범죄유형별 재산피해정도(2003)	8
<표 2-4> 죄명별 재산피해금액 및 회수현황(2003)	8
<표 2-5> 재산범죄 유형별 피해품 회수율	9
<표 2-6> 강력범죄 발생건수(2004)	10
<표 2-7> 피해자대책을 위한 조직개편안	51
<표 3-1> 112접수 후 도착시간 현황	68
<표 3-2> 미국 미시간 주 CARE팀의 가정폭력사범 위험성 평가척도	95
<표 3-3> 사망사실 통지요령 예시	101
<표 3-4> 절차진행 단계별 정보제공	112
<표 4-1> 근무성적평정요소	130
<표 4-2> 제2단계 심사항목 및 배점	132

<표 4-3> 승진인사에 있어 교육훈련평정점의 반영률	134
<표 4-4> 경찰대학생 교육과정개요	139
<표 4-5>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과정개요	140
<표 4-6> 경찰대학 경정기본교육과정개요	141
<표 4-7> 경찰대학 경감기본교육과정개요	141
<표 4-8> 경찰대학 경찰홍보 교육과정개요	142
<표 4-9> 경찰대학 청문감사 교육과정개요	142
<표 4-10> 경찰대학 정보검색사 교육과정개요	143
<표 4-11> 경찰종합학교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개요	144
<표 4-12> 경찰종합학교 경위기본교육과정개요	144
<표 4-13> 경찰종합학교 경사기본교육과정개요	145
<표 4-14> 피해자 서포터 전문과정 교과 체계	146
<표 4-15 >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요소의 비중 개정	157
<표 4-16> 강의평가 설문지 예시	164
<표 4-17> 일본경찰의 피해자대책 교육과정	167
<표 4-18> 일본경찰의 피해자대책지도 전문교육과정 수업일정표	168
<표 4-19> 피해자상담기술(초급) 교육과정 수업일정표	168
<표 4-20> 피해자상담기술(상급) 교육과정 수업일정표	169
<표 4-21> 피해자 서포터 전문과정 교과 체계 (수사보안연수소)	170
<표 4-22> 경찰 피해자대책 교육과정 개요	172
<표 4-23> 표준교육훈련계획(직장훈련) 예시	173

< 그림 차례 >

<그림 2-1> 형사절차의 진행단계와 피해자 관련성	30
<그림 3-1>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58
<그림 3-2> 초동수사의 피해자대책 체크포인트	80
<그림 3-3> 경찰의 정보제공체계	109
<그림 3-4> 피해자안내서 예시	114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2002년 보고서(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연구보고서 2002-10)의 후속편이다. 이번에도 한국 경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

2003년 이후 경찰은 눈부시게 변화하였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2005년 한 해 동안 전개된 ‘인권경찰’ 캠페인은 (비록 부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자기혁신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대해 시민사회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경찰직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우수한 인재가 속속 경찰조직에 합류하고 있다. 2005년 말에는 한국 경찰의 염원이 드디어 성취된 듯 보이기도 했었다. 어쨌든 경찰은 머지않아 독자수사권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흐르는 물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시시때때로 ‘동네북’이 되곤 한다. 정책부서의 구상이나 최상층의 지휘방향이 언제나 조직의 말단에까지 침투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많은 시책이 한건주의 상징조작으로 매도될 위험을 내포한 채 출범되기도 한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진정한 혁신은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태동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학생들이 나의 학문적 역량과 가르치는 자로서의 열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이 싸가지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그들이 오해했다 할지라도, 오해할 빌미는 반드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만 한다. 경찰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그 노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경찰의 노력이 거짓이거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점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모든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이 본격 시행된 지도 어느새 만 2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본청 피해자대책실은 부단히 새로운 시책들을 제시하고 직무원칙을 만들어 홍보해 왔

다. 기본적인 규정, 조직체계 또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직무매뉴얼은 선진국 경찰에 견주어도 그다지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선의 범죄피해자(시민)들은 우리 경찰이 그토록 ‘훌륭한’ 피해자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바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실현가능성 없는 이상론을 배격하고자 노력했으며, 말 하나 마나한 ‘원칙’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으려 애썼다.

이 보고서에서는, 서구선진국 보다 수 십년 늦게 재작년에야 첫발을 내딛었음에도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국 경찰의 피해자정책에 내재된 문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의 인사·교육 및 조직운영 전반을 두루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의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이 보고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글이 우리나라 경찰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할 따름이다.

2006. 9.

김용세 · 김재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형사절차의 목표는 범인을 확인하고 그자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을 밝혀서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가혹한 취급을 받거나,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근대 이후 형사절차법 발전과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해자 권익보호에 치중해 왔다. 「고문금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보장」,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 억울한 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는 매우 많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격언이다.

그리하여 최근까지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형사절차는 범죄자를 체포·처벌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손실을 배상받거나 복수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서 가해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할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참고인으로만 취급되었다. 심지어 피해자는 개인적 감정이나 이욕을 앞세워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범죄사건의 ‘해결’이라는 궁극 목표 앞에서 피해자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또는 더 중하게)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은 잊혀지고 말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피해자학에 관한 이론과 실무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범

죄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는 단지 사회적 갈등상황의 일방당사자라는 지위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 관해 더 이상 이론이 없다. 범죄사건 처리의 제1차적 책무를 지며 범죄발생 후 제일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관계가 극도로 복잡해지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불가결하다. 피해자의 신뢰와 협조는 이처럼 경찰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인권경찰의 이미지를 고양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독자수사권 획득을 위한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리라는 구체적 기대감이 크게 고양된 2006년 초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대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필자(김용세)는 2002년 말 선진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소개하고 한국경찰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용역연구 보고서를 치안연구소에 제출한 바 있다.¹⁾ 2004년6월에는 우리 경찰도 범죄피해자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피해자보호업무 담당직원을 배치하였다. 2005년 상반기에는 피해자대책실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경찰 인권보호정책의 일환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할 기초를 세웠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찰의 피해자대책이 크게 발전하였음은 물론이다. 피해자대책의 필요성에 관한 수뇌부의 인식은 확고해졌고, 피해자정책 시행을 위한 기본조직도 갖추어졌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면- 한국 경찰의 피해자보호대책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경찰 업무수행의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직무집행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자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교육하는 것만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일선 경찰관 모두가 그 정책을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직무집행 원칙들을 충실히 실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도 함께 강구되어야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1) 金容世,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연구보고서 2002-10), 치안연구소, 2002.12..

이 연구는 2002년 연구보고서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보고서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 일반을 소개하였지만,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과 경찰 교육체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첫째, 경찰 수사절차상 피해자 대책의 첫 단계인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둘째, 경찰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모색하며 셋째,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 분석 및 법령 해석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수사실무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어떤 지원과 보호를 원하는지, 제2차 피해를 유발하는 수사행태는 어떠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용역 연구에서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조사연구는 불가능했으므로, 피해자대책의 선진국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2. 연구범위

범죄피해자 보호는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문제되지만, 여기서는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수사는 형사절차 진행의 첫 단계이므로,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보호대책은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사기관의 피해자처우는 결국 전체 피해자대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범죄현장이란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장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살인, 강도, 방화 또는 절도와 같은 범죄는 수사기관이 현장에 임하여 그 상태를 관찰하거나 그곳에 남겨진 자료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범죄를 임검범(臨檢犯)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는 범죄현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신체에 남아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되거나 소실되기 전에 그 진술을 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현장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테크닉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과제는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대책**이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은 현장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임검범’ 피해자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부 강력사건, 가정폭력사건 및 아동학대사건, 대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는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이후에 새로이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재확인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범죄발생 직후 초동단계에서 문제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의 첫 번째 과제는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대책**’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범죄피해자 대책에 관한 교육체제를 구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경찰관 교육체제를 도외시하고 오직 피해자 문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만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현행 경찰관 교육시스템 전반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한 후 전체 교육프로그램과의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피해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관 교육훈련과 그 성과 측정은 경찰인사행정의 핵심적 과제에 속하므로, 교육훈련과 인사시스템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경찰관 **인사시스템 전반의 ‘혁신’ 방안** 제시를 이 연구의 세 번째 과제로 삼을 밖에 없었다. 교육훈련은, 그것을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지식과 능력이 향상되고 경찰조직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인정된다. 따라서 모든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의 성과를 최대한 흡수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활용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경찰관이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교육훈련에 임하고 보

다 높은 개인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교육효과 및 직무행태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제2장 범죄사건처리와 경찰의 피해자대책

제1절 범죄피해와 피해자보호

1. 범죄피해

1) 한국의 범죄 및 피해현황

(1) 일반적 피해현황

한국에서는 아직 범죄피해 및 피해자실태에 관한 전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범죄통계를 이용하여 피해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2004년 사법당국에 의해 파악된 범죄사건 총수는 208만901건이며 그 중 186만2,234건의 범인이 검거되었다. 전체범죄사건 중 형법범은 82만6,886건 특별법범은 125만4,015건이었다.²⁾ 2003년의 범죄유형별 발생현황은 <표2-1> 과 같다.³⁾

<표 2-1> 형법범 및 특별법범 발생현황(2003)

범죄유형		발생건수(백분율)	
형법범	재산범죄	470,826 (23.5)	1. 재산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강력범죄	75,446 (3.8)	2. 강력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위조범죄	19,806 (1.0)	3. 위조범죄: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문서, 인장의 각 위조·변조.
	공무원범죄	1,592 (0.0)	4.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죄.
	풍속범죄	14,276 (0.7)	5. 풍속 범죄: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 음란행위, 도박·복표, 신앙에 관한 죄.
	과실범죄	6,900 (0.4)	6. 과실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치사상, 실화.
	기타 형법범	38,586 (1.9)	7. 특별법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향군법, 부정수표단속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등.
특별법범	1,376,897 (68.7)		
합 계	2,004,329 (100)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04), 32, 36면을 기초로 재작성

2) 대검찰청, 『범죄분석(2005)』, 13면 이하.

3) 범죄분석에는 형법범의 유형별 발생현황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 2004년판 범죄백서의 통계를 인용하였다.

이 통계만으로는 개인적 범익에 대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재산범죄, 강력범죄 및 과실범죄의 대부분은 이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특별법범 중에서도 폭처법위반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행위는 대부분 구체적 피해자의 개인적 범익에 대하여 범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재산범죄 피해현황

2004년도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44만7,163건, 검거건수는 30만9,653건, 검거인원은 25만43명이다. 2003년도의 재산범죄 발생건수 47만826건과 비교하면 약 5%정도가 감소한 수치이다<표 2-2>.

<표 2-2> 재산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2001~2004)

년도 \ 죄명	합 계	절 도	장 물	사 기	횡 령	배 임	손 괴
2001	392,473	169,121	1,319	180,350	22,867	4,842	13,974
2002	415,572	179,208	1,418	195,914	21,990	4,767	12,275
2003	470,826	187,871	1,145	240,359	23,895	5,322	12,234
2004	447,163	154,850	1,581	246,204	27,224	6,736	10,568

*출처: 범죄백서(2004), 46면과 범죄분석(2005), 16면을 참조하여 재작성

우리나라 재산범죄의 대중을 이루는 것은 사기죄와 절도죄로서 이 두 가지 범죄가 전체 재산범죄의 89.7%를 점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재산범죄 발생추이를 보면, 대체로 장물범죄는 현저히 감소한 반면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적 경제범죄는 크게 증가하였다.⁴⁾

피해규모는 죄종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03년 재산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 정도를 보면 절도죄와 손괴죄 사건은 피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이 전체의 70~80%에 이르지만,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인 사건이 가장 많다<표2-3>. 절도죄는 전체 재산범죄 발생건수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사기죄는 전체 재산범죄의 약 51%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액이 10억원을 넘는 사건 중에서

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04)』, 45면.

63%를 점할 정도로 피해액도 큰 편이다. 이에 비해서, 횡령죄와 배임죄의 발생건수는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10억원을 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 중에서는 32%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절도죄보다는 사기죄의 피해규모가 크고, 사기죄에 비하면 횡령 및 배임죄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범죄유형별 재산피해정도(2003)

피해액 죄 명	합 계	피해없음	1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미 상
절 도	187,871	15,164	81,393	34,212	5,090	247	25	51,740
사 기	240,359	24,913	29,363	68,269	54,299	6,438	428	56,649
횡 령	23,895	3,317	2,570	5,255	4,643	1,002	121	6,987
배 임	5,322	1,221	153	600	976	474	98	1,800
장 물	1,145	209	228	157	84	16	3	448
손 괴	12,234	1,945	3,198	850	154	30	2	6,055
합 계	470,826	46,769	116,905	109,343	65,246	8,207	677	123,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출처: 범죄백서(2004), 50면

일반적으로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피해금품을 회수하는 일이다.⁵⁾ 그러나 실제로 피해금품이 회수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표 2-4> 죄명별 재산피해금액 및 회수현황(2003)

구 분	죄 명	절 도	사 기	횡 령	배 임
피해현황(10만원)		42,664,264	41,575,036	7,556,490	6,596,916
회수현황(10만원)		215,382	1,178,742	114,197	106,472
회 수 율 (%)		0.5	2.8	1.5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출처: 범죄백서(2004), 50면.

5) 金容世, 『경찰의 범죄피해자 호보대책(前註1)』, 49면 참조.

2003년 통계에 나타난 회수상황을 살펴보면, 절도죄의 경우 총 피해액 4조2,664억여 원의 0.5%에 불과한 215억원만이 회수되었을 뿐이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금액의 회수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표2-4>.

경찰청 통계에서는 재산범죄 범죄유형에 따른 피해액과 피해품 회수율이 전혀 다르게 파악되어 있다<표2-5>. 경찰청 통계에는 법무부 통계보다 전반적으로 회수율이 높게 나타나 있으며, 절도죄의 피해금품회수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은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표 2-5> 재산범죄 유형별 피해품 회수율

	강도	절도	공갈	사기	횡령	배임
피해액(10만원)	1,113,608	28,608,904	2,931,466	230,303,541	40,495,869	2,489,430
회수액(10만원)	162,605	4,451,081	1,010,463	18,897,249	2,968,826	581,692
회수율 (%)	14.5%	15.5%	3%	8%	7%	23%

*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5, 146면

<표2-4>는 2003년도 통계이고 <표2-5>는 2004년 통계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자는 피해액과 회수액 모두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통계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검찰은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경찰은 검거한 사건에 대해서만 피해액과 회수금액을 집계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아무튼, 재산범죄 피해자의 제1차적 관심사가 피해의 회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2-4>의 경우든 <표2-5>의 경우든 피해금품 회수비율이 너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강력범죄 피해현황

① 강력범죄의 범위

강력범죄의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 개념에 불과하다. 더구나 경찰과

검찰이 강력범죄의 개념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통일된 개념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강력범죄를 살인·강도·강간·방화 4종류로 분류하여 집계하는데 반하여, 검찰은 이 네 가지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유인·체포감금죄와 특별법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범 등을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⁶⁾ 검찰과 경찰이 강력범죄에 포함시킨 범죄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력범죄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폭행 협박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화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권 또는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 있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⁷⁾ 따라서 강력범죄는 재산범죄와 함께 피해자관련성이 가장 큰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파악한 2004년 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상황을 보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22만2천208건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해 10.7%, 폭행 5.9% 강간 3.7%, 강도 1.8%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표2-6>.

<표 2-6> 강력범죄 발생건수(2004)

죄 명	발생건수(백분율)
살 인	1,082 (0.4)
강 도	5,762 (1.9)
방 화	1,590 (0.5)
강 간	11,105 (3.7)
폭 행	17,382 (5.9)
상 해	31,701 (10.7)
협 박	2,333 (0.8)
공 갈	2,271 (0.8)
약취·유인	377 (0.1)
체포·감금	435 (0.1)
폭처법위반	222,208 (75.0)
합 계	296,246 (100.0)

*출처: 범죄백서(2004)

6) 박노섭, 『강력범죄수사론』, 경찰대학, 2005. 5면.

7) 박노섭, 『강력범죄수사론(前註6)』, 5면은 경찰이 분류하는 4대 중요범죄를 중심으로 강력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살인죄 피해현황

2004년도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살인범죄의 피해자의 반 이상이 범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용인인 경우, 피고용인인 경우, 직장동료인 경우, 친구인 경우, 애인인 경우, 동거친족인 경우, 기타 친족인 경우, 거래 상대방인 경우, 이웃인 경우, 기타 지인인 경우가 총 1200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715건(59.5%)이나 되는 것이다. 서로 아는 사이일 경우 살해 위협의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든지 징후가 보여도 본인은 물론 형사사법기관이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중 특히 가정불화에 의한 살인이 122건(10%), 보복에 의한 살인이 71건(5.9%)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살인피해가 보이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⁸⁾ 최근 집중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치명적 위험성 존재시 적절한 위기개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살인사건 수사는 63% 정도가 피해자 등의 신고에 의해 개시되고 있다. 경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비율은 17.5%에 불과한데 비해서, 피해자 가족의 신고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만도 24.6%에 달한다.⁹⁾ 살인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남자가 589명(54.4%) 여자가 494명(45.6%)이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41세~50세 이하가 164명(27.8%)으로 가장 많고, 31세~40세 이하가 138명(23.4%)으로 31~50세의 장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상(51.2%) 차지하고 있다. 여성피해자의 경우도 유사하다.¹⁰⁾ 살인 피해를 당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화중에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348건으로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¹¹⁾

살인의 일반적인 경향은 남성의 경우 격정이나 싸움, 말다툼에 의한 기회적인 살인이 많기 때문에 면식이 없는 사람이 살인사건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여성에 의한 살인사건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로 범행에 이르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어느 정도 계획적이거나 가족 간의 불화나 원한,

8) 경찰청, 『2004범죄분석』, 892~893면.

9) 경찰청, 『2004범죄분석』, 522면.

10) 경찰청, 『2004범죄분석』, 540면.

11) 경찰청, 『2004범죄분석』, 544~545면.

분노에 의해서 보다 많이 발생하고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 자녀, 애인 등 가해자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가 많은 편이다.¹²⁾

③ 강도죄 피해현황

2004년도 경찰청 범죄분석은 강도죄의 유형을 형법상의 일반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10가지 유형의 강도죄와 그 밖의 유형을 포함하여 총 20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형법상 강도죄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유형은 강도상해·치상으로서 총 5,832건 중 2,054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 많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일반강도(1,423건), 특수강도(1,210건), 강도강간(398건), 특가법상 강도(242건), 준강도(233건), 인질강도(108건) 등의 순이다.¹³⁾

전체 강도사건의 86.7%가 성인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범죄수법별로 보면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1,990건), 그 다음으로 노상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는 경우이며(1,308건), 그 다음이 강간의 기회에 강도행위를 하는 강도강간(181건), 사람을 인질로 삼아 강도를 하는 인질강도(176건),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는 차량강도(123건) 순이다.¹⁴⁾

강도 피해자는 전 연령층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다.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308명, 16세~20세 이하가 214명, 21세~30세 이하가 460명, 31세~40세 이하가 498명, 41세~50세 이하가 489명, 51세~60세 이하가 247명 등으로 대체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¹⁵⁾ 강도피해와 피해자의 연령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20대부터 50대의 피해빈도가 높고 20세 이하 미성년자와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피해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활동의 빈도 또는 경제력에 비추어 자연스런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보행 중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17.8%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일하는 중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와(15.3%) 취침 중에 피해를 당하는 경

12) Svalastoga, Kaare, "Homicide and Social Contact in Denmark",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2, 1966, 37~41면.

13) 경찰청, 『2004범죄분석』, 36~37면.

14) 경찰청, 『2004범죄분석』, 512~513면.

15) 경찰청, 『2004범죄분석』, 540면.

우(9.7%)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강도행위에 의한 재산적 피해는 절도나 사기, 횡령죄에 비교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1억원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 수는 절도피해가 150건, 사기피해가 1,410건인 반면 강도피해는 1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¹⁷⁾ 신체적 피해의 경우 2004년도에는 2,168건의 강도사건으로 67명이 사망하고 2,101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강도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도 매우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⁸⁾

④ 성폭력범죄 피해현황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말한다. 강간과 추행 뿐 아니라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온라인 성폭력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어·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유형·무형의 폭력적 방법에 의한 성적 침해 또는 지배적인 성윤리의 침해가 모두 ‘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형벌은 가장 가혹한 공적 제재수단이므로 사회질서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최후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제2조는 “형법 제22장의 성폭속에 관한 죄,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죄,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내지 제14조의2 카메라등 촬영의 죄 등”을 성폭력범죄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밖에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도 넓은 의미에서의 성범죄 내지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수사기관에 인지되는 성폭력사건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사건은 총 14,089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16) 경찰청, 『2004범죄분석』, 544~545면.

17) 경찰청, 『2004범죄분석』, 658~659면.

18) 경찰청, 『2004범죄분석』, 666~668면.

19) 金容世·文成植,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 『서울법학(제7권2호)』,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2, 3면이하.

이 수치는 2003년 대비 1,578건 증가, 1995년에 비하면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최종별로는 형법상 강간이 6,959건(49.3%), 성폭력특별법 위반행위가 4,264건(30.2%),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2,866건(20.3%) 등이다.²⁰⁾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와 면식 있는 자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2004년도에 발생한 총 6,481건의 강간사건의 약 20%에 달하는 1,335건이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졌고,²¹⁾ 1997년 성폭력 피해 상담사건의 70.4%가 면식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기도 하다.²²⁾

최근 들어 공식통계상의 성폭행범죄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성범죄피해 및 피해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종래 한국에서는 (실은, 서구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하는 측면이 강하다거나, 부주의하거나 자기관리에 미숙하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당한다는 편견이 만연해 있었다. 그리하여 성범죄 피해여성들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동정과 보호보다는 호기심과 의혹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심각한 2차 피해를 겪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강화되고 여성의 권익과 성범죄의 비인도적 특성에 관한 일반의 인식이 증진됨으로써, 성범죄피해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크게 시정되었다.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활동에 나서는 공·사단체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감추기 보다는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이 공식통계상 성범죄사건 수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⑤ 방화죄 피해현황

방화죄는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예가 많다. 2004년 경찰통계에 따르면 방화죄의 발생원인은 우발적 요인이 612건, 현실불만이 194건, 가정불화가 155건, 보복이 65건 순으

20) 경찰청, 『경찰백서(2005)』, 117면.

21) 경찰청, 『2004범죄분석』, 892~893면.

22) 경찰청, 『대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2002, 7면.

로 나타나고 있다.²³⁾ 최근에는 사회적 불만이나 개인적 비관·분노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임야 또는 도로상에 주차된 자동차 등에 무차별적·충동적으로 불을 지르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무차별 방화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하다. 방화는 주로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사이에 발생하는데(전체의 21%),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피해도 적지 않다. 2004년 중 방화로 인한 사망자는 52명이었고, 상해피해자도 223명에 이르렀다.²⁴⁾

⑥ 기타 폭력범죄 피해현황

경찰청은 폭력범죄를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손괴 등 8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한 다음, 그 중 상해죄는 중상해·존속상해·상해치사 등을 포함한 10종으로 분류하고, 폭행죄는 특수폭행·존속폭행 등 13종, 체포감금죄는 14종, 협박죄와 약취유인죄는 각각 8종, 공갈죄는 3종으로 각각 세분하고 있다.²⁵⁾ 그렇지만, 간음 추행등을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죄를 제외한 성폭력범죄는 모두 강간죄(성범죄)로 분류한다.

폭력범죄는 그 밖에도 가해자의 신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또는 폭력범죄의 발생장소 내지 환경 등에 따라 조직폭력·학원폭력·가정폭력 등으로 세분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 외에는 주로 실무상의 편의를 위한 분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언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가 많다. 경찰에 접수된 폭력범죄의 28.6%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²⁶⁾ 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신고율이 높은 편이다. 2004년에 경찰에 접수된 폭력범죄 총 286,464건 중 49.6%가 신고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중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여 처리된 사건의 비중은 66.4%에 이르렀다.²⁷⁾ 피해자 신고로 범인이 검거된 것도 28.4%에 달한다.²⁸⁾ 요컨대 폭력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 협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

23) 경찰청, 『2004범죄분석』, 992~993면.

24) 경찰청, 『2004범죄분석』, 665~667면.

25) 경찰청, 『2004범죄분석』, 40~43면.

26) 경찰청, 『2004범죄분석』, 544~545면.

27) 경찰청, 『2004범죄분석』, 522~523면.

28) 경찰청, 『2004범죄분석』, 704~705면.

고를 포기하는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⁹⁾ 보복에 대한 공포는 경찰방법활동, 피해자 및 증인 보호시책에 대한 신뢰결여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 피해자화 단계에 따른 특성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현상 또는 그 과정을 피해자화(victimization)라고 한다. 이것은 일정한 원인으로부터 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범죄화(criminalization)’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범죄피해도 일정한 원인에 기하여 그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

경찰실무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화 단계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욕구(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제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경찰에 대한 환멸의 감정을 품게 만들거나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정신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 제시하는 경찰관 교육훈련 과정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을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³⁰⁾

(1) 제1차 피해자화

제1차 피해자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의해 직접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1차 피해는 문제된 범죄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범죄로 인해 직접 야기되는 피해의 종류는 크게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 및 정신심리적 고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피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컨대 폭행죄, 상해죄 또는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 할지라도, 그 피해는 육

29) 경찰청, 『2004범죄분석』, 538~539면.

30) 이에 관하여는 ‘2002년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논의 전개에 필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두기로 한다. 자세한 것은 金容世, 『被害者學』, 형설, 2003, [7] 참조.

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절도죄나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피해 역시 경제적 손실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상해죄 피해자가 건강침해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차례의 범죄피해로 인해 평생을 불구로 살게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그는 상해에 수반된 의복손상, 치료비 또는 입원치료로 인한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사건의 양상이나 그 자신의 정신·심리상태에 따라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는 비슷한 정도의 사고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정신심리적 상처에 시달린다. 그 양상과 정도는 사건의 성격이나 피해자 자신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범죄로 인한 심리적 상처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그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알려져 있다. 범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심리적 외상(trauma)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항구적인 심리적 장애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³¹⁾

(2) 제2차 피해자화

제2차 피해자화란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라, 사건 처리과정 또는 사건처리 후에 피해자가 제2차 상처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여하한 형태이든 일정한 사회적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 또는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기제의 발동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상처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주변사람들의 책망, 호기심 또는 양비론적인 비난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은 상처를 준다. 그밖에도,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또는 검찰의 권위적 태도, 불친절 더 나아가서는 비난이나 불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요인은 매우 많다.

전술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는 심리적 외상(또는 외상성 사건)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과 그 결과에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스런 경험에 동참하기를 꺼린다. 다른 사람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31) 정신·심리적 피해에 관한 설명은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7] 2이하.

나누는 것은, 자신도 같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 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예컨대, 피해자가 혼자서 위험한 곳에 갔다거나 옷차림이 도발적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강간피해자를 탓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3) 피해자의 기대

범죄피해의 실상과 피해자가 진정 필요로 하는 바는 1970년대부터 서구 여러나라에서 실시된 범죄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1) 제2차 피해방지

피해자는 스스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구조 또는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수사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도 범죄로부터 파생하는 피해의 일부로 본다. 특히, 출석요구의 횟수가 많았거나 수사기관이 끈질기게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수사활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그 9할 이상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피해를 범죄피해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접촉하는 수사관 등이 피해자의 입장 또는 감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언론매체의 보도 또는 주변사람의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정보제공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기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와 결과를 알고 싶어 하며, 자신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품는다. 가해자의 성명이나 주소, 체포여부, 수사의 진척도, 사건의 전모, 기소여부, 재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의 방청방법, 가해자의 석방여부, 판결 결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피해자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 등이 그것이다.

(3) 피해회복

범죄피해자들은 또한 자신이 당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데, 그 내용은 피해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재산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해의 배상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또는 가해자로부터의 진심어린 사과를 우선적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신체범 피해자나 그 유족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는 공포감 또는 가해자를 중벌에 처해야 한다는 보복감정이 완화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재산범의 경우에도 피해금품의 반환이 피해자의 보복감정과 증오심을 완화하고 용서의 감정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배상과 화해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심리적 외상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2.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보호의 기본원칙

1)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기 모이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증진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유럽평의회와 UN 등의 국제기구도 각 회원국에 대해 범죄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³²⁾ 이후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권

리보장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82년 범죄 피해자 문제에 관한 대통령 태스크포스팀(President's Task Force Team on Victims of Crime: 1982)이 피해자권리를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입법화하였다. 연방정부도 1982년에 「종합적인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Omnibus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의 일부로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a crime victims' Bill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OCA: The Victims of Crime Act 1982)」을 제정하였다. 그 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연방헌법 개정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된 끝에, 1998년 새로운 개정안으로서 「범죄피해자의 헌법적 권리(The Constitutional Rights for Crime Victims)」가 상원에 제출되었고, 2004년 10월 30일 부시의 서명을 통해 범죄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정의에 관한 법률(The Justice for All Act 2004)」이 확정됨으로써 연방법 개정의 이루어졌다.³³⁾

1980년대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UN과 유럽평의회 등의 권고, 각국의 관련법령 또는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피해자 권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 모든 피해자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필요한 지원을 획득할 권리 : 모든 피해자는 그가 범죄로 인해 피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③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모든 피해자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사건 처리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관련 정보를 얻을 권리를 지닌다.
- ④ 사건처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권리 : 모든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설명하고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지닌다.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언제나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⑤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피해자는 그 안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보호 받을 권리를 지닌다.

32) 자세한 것은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8] 참조.

33) Moriarty, Laura J., Policing and Victims, New Jersey: Prentice Hall, 2002, 118면.

- ⑥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모든 피해자는 공적 또는 사적으로 그 피해를 (적기에 완전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⑦ 사건 해결에 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 : 피해자는 사건 해결 또는 범죄자 처리와 관련하여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즉,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게 범인 검거 또는 범죄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에 협조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범죄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책임은 국가에 귀속하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피해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해자보호의 기본전제

(1) 피해자대책 전담기구

① 필요성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형사사법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조정하는 동시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대책의 선진국에서는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다양한 피해자 보호시책이 시행됨으로써 종합적인 피해자대책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³⁴⁾

우리나라는 민간차원의 피해자 지원활동이 미미하고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반인식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 차원의 피해자대책을 먼저 구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피해자 문제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정부조직 내의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정책에 관한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피해자 정책은 매우 다양한 국가작용과 광범하게 관련되어 있다. 피해자문제는 단지 형사사법체제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제반 국가작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피해자 정책 일반을 종합적으로 조정 집행할 수 있는 정부기구를 구성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

34)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20] 참조.

화하는 동시에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구선진국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은 여성부에서, 가정법률상담소는 법무부에서 각각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간 조직들도 각각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필자(김용세)는 2004년 하반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인권과의 자문에 응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정책에 관한 총괄부서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여러 부처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업무과중과 피해자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 결여 등을 이유로 피해자 관련업무의 인수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일반적 권한을 법무부장관에 부여하게 되었다(피해자보호법 제16조). 그 결과, 여성부나 보건복지부 등이 종전부터 수행해 왔던 피해자관련 업무를 법무부의 그것과 종합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에 무산되고 말았다. 법무부장관이 다른 부처의 소관업무를 조정·감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피해자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그 업무를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

② 여성부

한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또는 보호를 설립목적의 일부로 표방한 최초의 조직은 아마도 1994년에서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일 것이다. 그 후 전국각지에 유사한 목적을 지닌 소규모 민간조직들이 산발적으로 출현하였는데, 이 조직들은 대부분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공적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1년1월 여성부가 신설되기까지 피해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조직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여성부는 출범 직후부터 권익증진국 인권복지과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를 지원 육성하며,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훈련,

피해예방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부는 2005년6월에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외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③ 법무부

2003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범죄피해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관심이 급속도로 증진되었다. 법무부 2004년 하반기부터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을 성안하기 시작했고, 2005년1월부터 전국의 55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법무부가 성안한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수정되어 2005년12월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제12조 이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및 보조금 교부(제16조 이하) 등의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가정폭력상담소 내지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단체는 이 법 제16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존속과 활동에 제약에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법의 피해자지원법에 포함될 수는 없으므로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2006년3월1일부터는 보조금 교부를 희망하는 민간조직의 지원법인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분간은 전국의 지검과 지청에 설치된 피해자지원센터만이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복권기금으로부터 2006년도 피해자지원예산을 확보하긴 했지만, 신청액의 상당부분이 삭감되어 전국의 지검과 지청에서 설치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건비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④ 경찰청

2004년6월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되었다. 2005년에는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도 피해자대책관 및 피해자서포터가 임명되었고, 본청의 피해자대책실은 인권보호센터 범죄피해자대책계로 개편되었다.

피해자대책계는 피해자관련 치안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피해자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을 정비하고 교육·홍보하는 것을 주된 책무로 한다. 그러나 아직은 예산부족과 근거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정책의 수립 집행 및 교육훈련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후술 46면 이하).

(2) 법적 근거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은 1985년 UN의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이하 “UN의 1985 사법의 기본원칙”라 한다)』과 1987년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권고의 영향으로 가속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각국의 법체계와 실무현실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자대책의 내용 및 근거법규의 존재형식은 상이하다.

① 헌 법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이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② 범죄피해자보호법

영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되고 1996년에 개정된 피해자헌장(Victim's Charter)이 실질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해 왔는데, 2004년 11월15일에는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The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피해자헌장의 내용 중 일부가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었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실무규범 제정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2년에 제정된 『연방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OCA, The Victims of Crime Act 1982)』이 형사절차상 피해자와 증인 등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차원의 ‘피해자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규는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각 주 별로 범죄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주 헌법을 개정하거나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규를 제정하는 예가 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권리를 헌법적으

로 보장하라는 헌법개정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2004년10월30일에는 드디어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한 『법적 정의에 관한 법률(The Justice for All Act 2004)』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결과, 2004년12월1일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8일 공포되었다.

한국에서도 2005년12월1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제2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제8조에서는 수사 및 재판의 모든 절차에서 피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및 신변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격, 보조금 교부에 관해 규정하고 제5장에서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다.

③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 특히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1993년12월17일 제정되었다. 동법은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명시하고 형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성범죄유형을 규정한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절차상 특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성폭력피해자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은 전술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지원법인과는 별도로 여성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다.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조류 및 이 문제에 관한 입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여성단체와 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97년12월에 제정되었다. 이 두가지 법률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가정폭력사건을 특별형사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성폭력특별법과 유사하게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은 각각 그 시행규칙에서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상담원 교육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④ 범죄피해자구조법

1987년 헌법이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같은 11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구조금 지급요건이 까다롭고 광범한 지급 배제사유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한국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지닐 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³⁵⁾

이에 2005년 개정 법률은 구조금지급요건 중 ‘생계유지 곤란’을 삭제함으로써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무자력이어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계곤란을 소명하지 않아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3조). 그밖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제5조 제1항, 3항) 구조금 지급신청기간을 피해발생을 안날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제12조 제2항) 가구구조금 지급신청권을 신설하였다(제14조 제1항).

⑤ 형사소송법

1987년 헌법 제27조가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명문으로 보장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도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제294조의2).³⁶⁾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³⁷⁾

35)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24] 참조.

36)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26] 8이하.

37) 2006년2월 현재 이 규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무부는 2004년12월15일 수사기관의 조사절차와 법원의 재판절차에 범죄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이하 ‘2004.12. 법무부안’이라 칭함). 이 법률안은 형소법 제294조의2의 피해자의진술권을 강화하고, 수사·재판절차에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피해자 신문, 사생활보호를 위한 피해자 진술 비공개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어 2006년2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 법률안에서는 피해자보호에 관한 신설규정이 대부분 삭제되었다.

⑥ 기타 법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는 국가가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또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한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동법 제6조),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에 범죄신고인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고(동법 제7조), 그들의 인적사항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있는 소극적 의미의 피해자보호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동법 제5조의9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죄), 제257조 제1항(상해죄), 제260조 제1항(폭행죄),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죄) 또는 제283조 제1항(협박죄)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목적이거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각 조의 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동법 제5조의9 제1항 내지 제2항).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상해, 폭행, 체포·감금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치사하게 한 경우, 그 목적이 피해자 보복 목적일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이는 행위’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행위로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피해자보호와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가해자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은 지난 수세기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 및 형집행기관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암흑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언제나, 그것이 과연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래의 원칙들과 조화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2절 형사절차와 피해자보호

1. 형사절차 진행과정과 피해자보호

북미와 유럽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뉴질랜드와 영국을 필두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책을 마련해 왔다. 1970년대부터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익옹호 문제가 학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으로 발전되어 1979년에는 세계피해자학회가 창립되었고, UN에서도 1985년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피해자가 “정의롭고 공정한 대우·배상·화해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제적·지역적 및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에 이르렀다.³⁸⁾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80년대 이후 유럽 각국의 형사절차법 개혁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를 둘러싼 제도변혁은 급기야 전통적인 형사사법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기에 이른다. 1980년대 중반이래 캐나다

38)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9] 5 이하 참조.

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에까지 전파된 ‘징벌적 배상명령’ 또는 ‘형사화해제도’로 대표되는 회복적 사법실무는 가해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의 화해처우로까지 이어져서 전통적인 행형사상에까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1970년대 서구유럽에 널리 확산된 ‘피해자운동’의 영향으로 범죄피해자 문제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결과, 1980년대에는 유럽평의회와 UN에서도 이른바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그 중 중요한 것만 열거해보면, 유럽평의회에서는 1985년6월 『형법 및 형사절차상 피해자지위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권고』, 1987년9월 『피해자지원과 피해자화 방지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권고』 등이 채택되었다. UN총회도 1985년11월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을 채택하였다. 1996년5월 UN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985년에 선언된 ‘사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기본원칙선언의 활용과 적용』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에는 『피해자를 위한 사법핸드북』 및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서구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절차법 개혁에 적극 나서게 된다. 한국도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체제의 구축과 운영 및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제4조) 범죄피해자 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도 흔히 수치심이나 공포로 인해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는 김용세의 2002년 보고서에서도 자세히 언급되었다. 그러나 2003년 말 이후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피해자대책을 강구하고 법무부와 대법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피해자 대책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

<그림 2-1> 형사절차의 진행단계와 피해자 관련성

담당기관	절차진행의 단계	피해자와의 관련성
경찰 또는 검찰	<pre> graph TD A[사건발생] --> B[수사개시] B --> C[범인확인] C --> D[피의자 체포·구속] C --> E[피의자의 임의출석]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등의 신고 또는 고소는 수사개시를 위한 단서가 된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때에만 수사를 개시한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수사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조사 :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제보자이며, 매우 중요한 참고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가 범행현장에서 사건에 관해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조사가 완료되지 않는다. 경찰서 또는 검찰에 나와서 진술해 달라는 이유로 소환되는 경우가 많다. ◎증거물제출 : 사건당시 피해자의 의복이나 소지품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신체(상처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증 등에의 입회 :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는 사건현장에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거나, 현장 검증에 입회해 달라고 요구받을 수 있다.
경찰	<pre> graph TD A[사건송치] --> B[기소] A --> C[불기소]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이 수사를 담당할 경우, 수사를 모두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사건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 일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모두 송치해야 한다.
검찰	<pre> graph TD A[기소] --> B[구공판] A --> C[구약식] B --> D[정식재판] C --> E[약식재판]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처리 :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고소사건에 한하여 사건처리 결과를 고소인(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항고재항고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 상급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수 있다.
법원	<pre> graph TD A[정식재판] --> B[판결] C[약식재판] --> D[약식명령]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식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재판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명한다. 대부분의 경우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방청 : 형사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방청객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가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배려하는 제도는 없다. ◎증언 : 피해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다. ◎의견진술 :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싶은 피해자는 신청에 의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교도소 등	<pre> graph TD A[형집행] --> B[석방]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보호감호는 보호감호소에서,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다. ◎자유형 수형자는 형기만료, 가석석방, 형집행정지 등의 사유로 석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집행과정은 물론이고 가해자가 석방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2. 피해자보호의 원칙

1) 기본원칙: 피해자의 입장 배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요인은 너무나 많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치심과 자괴감에 시달리는 것이 보통이다. 설상가상으로 낯선 경찰관 또는 검찰직원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반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판정에 불러 나가 방청인들 앞에서도 또다시 악몽을 되새겨야 한다. 그렇지만 사건해결 또는 실체발견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수사담당자나 재판관계자로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주지 못한다.

수사, 재판 및 행형의 전 과정에서 모든 형사사법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해결을 위한 단서제공자 또는 절차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한사람이라는 점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피해자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시달린다. 형사사법 종사자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 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1) 일반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이 규정은 피해자보호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개개의 문제 상황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무수행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형식은 다음의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행형법 등에서 각 지역별로 직무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과 피해자의 안전 및 프라이버시가 특히 문제되는 범죄에 관하여 개별법으로 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한국에는 아직 직무집행의 일반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

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특히 문제되는 특정한 범죄유형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둔 예가 있긴 하지만, 보호대상 피해자 및 보호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2)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된 범죄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 불이익처우금지, 보좌인, 소환 및 신문에서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통한 신고자 등 보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또는 상해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중벌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자 또는 고소·고발인을 보호하려고 한다.

(4)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별조치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기타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5) 발전방향

① 안전보장

수사, 재판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형집행이 종료되어 가해자가 석방된 후에도 피해자의 안전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범죄의 종류와 사건의 성질에 따라 예컨대, 피해자(증인)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거처와 직업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 문제는 후술하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② 프라이버시 보호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 때로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 또는 어떤 경위로 어떤 종류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순수한 사적 비밀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언론은 물론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적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수사상의 필요성은 최대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사건 관련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

피해자의 사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예컨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소환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때에 타인의 눈에 띄이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피해자의 신원 등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수사단계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는 국가는 버모지피해자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도 아직은 일반적 선언에 불과하므로 향후 구체적인 직무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통지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종래,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한해서 검사가 사건처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고소인 아닌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지 않으며, 통지의 내용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수사사항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물론, 2004년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이 정비된 이후 각급 경찰서에 피해자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사상황에 대한 통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만큼 잘 운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 ① 수사절차에서는 수사담당 경찰관의 성명과 연락처, 범인이 확인되었는가의 여부, 범인의 체포·구속 또는 석방 여부, 검찰에의 송치여부와 송치된 검찰청과 담당 검사, 사건의 기소여부 및 기소한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 불기소의 경우에는 불기소 이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 ② 재판절차에서는 담당 재판부와 공판기일, 재판의 경과, 피고인의 석방여부, 피해자도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판결의 내용, 재판확정 여부 등을 통지한다.
- ③ 형집행 단계에서는 형집행의 장소와 방법, 가해자의 석방시기 등을 통지한다.

4) 피해자 의견진술권

헌법 제27조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도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선언한 기본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은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며, 이때 그 증인에게 사건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006년2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의견진술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원이 이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형사소송법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적극적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하거나(형소법), 법원이 피해자를 신문하는 때에만 비로소 의견을 밝힐 기회가 부여될 뿐이다(가정폭력법). 그러나 피해자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2004년12월 법무부안'에서처럼 "피해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격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형사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원한다면 피고인을 마주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지해 주거나, 법원이 공판절차진행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만 비로소 이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유로운 진술(또는 증언)의 보장

(1) 피고인 또는 증인의 보좌인제도

①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제6조제1항에서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의 참고인 등도 이 법률에 의하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보좌인 지정의 주체는 피해자 또는 증인 등이 아니라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이다.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2에서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과는 달리,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보좌인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보좌인제도는 흔히 피해자의 변호인 제도와 혼동되거나 관련지어져서 논의된다. 우리 현행법상으로도 보좌인은 변호사 자격자라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변호

사일 필요는 없다.

피해자의 보좌인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자신의 심리적 문제 또는 법률지식의 결여로 인해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제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반드시 보좌인의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제2차 피해의 방지라는 관점에서는 변호사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폭력특별법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좌인의 동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좌인과의 동석을 허용하고 보좌인의 권한과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좌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서는 그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피해자(참고인 또는 증인)와 가해자의 격리

한국에서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범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식별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편면경으로 차단된 조사실을 설치해 두고 있다. 또한 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이외의 장소로 소환하거나 그가 있는 곳에서 신문할 수 있다.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법정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증인)의 자유로운 진술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법정밖 신문제도는 1954년에, 피고인 등의 퇴정규정은 1961년에 각각 마련된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증언의 획득을 통한 실체규명에 있다. 즉, 이 제도들은 애당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효율화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① 경찰서 및 검찰청사의 피해자 조사실 설치

범죄피해자 문제에 관한 검찰과 경찰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피해자를 위한 조사실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검찰은 2005년 초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등에 피해자와 아동조사실을 설치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피해자조사실, 아동조사실 및 비디오신문실 등이다. 피해자조사실은 일반 검사실에 비하여 외부와 잘 격리되어 있고 분위기도 편안한 편이다. 아동용조사실에는 장남감과 간단한 놀이기구가 비치되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아동심리 전문가 등이 조사대상 아동과 놀이하며 신문하는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신문실은 폐쇄된 소규모 법정과 같은 모습으로 피해자 조사 또는 피의자신문의 전과정과 진술내용을 CD로 채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 시설 자체는 대체로 피해자대책의 선진국에 못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은 과제는 시범실시 단계를 넘어 모든 검찰청(지청)까지 이와 같은 특별시설을 설치하고,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지침을 확정하는 데 있다.

경찰도 2005년 이후 각급 경찰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해 두고 있긴 하지만, 조사실의 구조와 설비 등이 통일되어 있지는 못하다. 각 경찰서의 여유 공간 또는 재정 형편이 다르고, 피해자문제에 대한 지휘관 또는 담당부서 책임자의 이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52면이하).

② 증인을 위한 차폐장치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과 피고인 및 방청객 사이를 병풍과 같은 가리개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이 피고인(가해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³⁹⁾ 대만에서는 2004년초 법정의 전면에 증인을 위한 작은 방을 설치했다. 이 방의 전면에는 편면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증인은 법정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나 방청객들은 증인을 볼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은 마이크를 통해서 법정에 전해지는데, 자동으로 변성되므로 방청석에서는 증인의 진짜 목소리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9)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27].

③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정 이외의 장소에 있는 증인과 신문자가 모니터를 통하여 서로를 보면서 신문, 진술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술한 차폐시설보다 진보된 형태로,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신문방식이다.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4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법률에서는 아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2005년 초 대전지방법원에 증인신문을 위한 음향 및 동영상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고 공개적으로 시연한 후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⁴⁰⁾ 향후 전국의 모든 법원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부착한 법정설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신문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3) 녹화기록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① 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2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영상물에 대해 공판정에서의 증언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에 의하여 촬영·보존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 있는 자가 그 영상물이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영상물을 공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술을 녹화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 즉, 녹화기록에 대해서도 조서의 일부로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국회에서의 검토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40)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27] 15이하.

②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자칫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통상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증인들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전문법칙). 그들이 재판장의 면전에서 직접 신문받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모든 재판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의 표정이나 태도를 종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에게 서로 상대방의 주장 (또는 상대방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특히 피고인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반대신문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성범죄피해자에 한한 것일지라도, 비디오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보상)제도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 국가가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한국은 범죄피해자의 공적 구조청구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0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법률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다.

이 법률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조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거나, 구조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2005년 개정 법률은 구조금지급요건 중

‘생계유지 곤란’을 삭제함으로써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무자력이어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계곤란을 소명하지 않아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3조). 그밖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제5조제1항, 3항) 구조금 지급 신청기간을 피해발생을 안날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제12조제2항) 가구조금 지급 신청권을 신설하였다(제14조제1항). 그러나, 구조금 지급대상 피해가 제한적이고 구조금액이 너무 적다는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 배상명령제도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없이 형사재판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형사소송에 부수해서 민사배상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부대소송이라고도 한다.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이 제도를 수용하였다.⁴¹⁾

2005년12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배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민사적 합의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구법에 따르면 법원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를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한정하고 있었지만, 신법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외에 “위자료의 배상”도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제25조). 그러나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는 여전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의 기본적인 성격과 내용이 변화된 것은 아니므로 종래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3) 민사화해에 대한 집행력 부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 ‘합의’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죄사건 당사자 사이의 화해에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온 것

41)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33] 8이하.

이 사실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화해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는 기소단계에서 양형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인정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의 회복에 기여하기 어렵다.⁴²⁾

그렇지만 2005년12월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새로운 제도는 일본 피해자보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내용도 동일하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한 민사상 합의에 대해 집행력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부여하였을 뿐이다.⁴³⁾

(4) 피해회복에 기여할 새로운 제도

① 징벌적 배상명령

영국과 미국이 채용하고 있는 배상명령(restitution order) 제도와 우리나라의 부대소송(배상명령)제도는 전혀 다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자를 징벌적 배상명령이라고 하기로 한다. 영미의 징벌적 배상명령제도는 명백히 형벌의 일종이다. 즉 범죄자에게 전통적 의미의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대신 그에게 부과될 형벌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⁴⁴⁾

42)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33] 3~7 참조.

43) 자세한 내용은 金容世, 일본 범죄피해자보호법(2000.5)의 피해자보호시책, 『피해자학연구』 제9권1호(2001), 127면 이하; 『被害者學(前註30)』, [32] 65이하 참조.

44) 자세한 내용은 金容世, 『被害者學(前註30)』, [32]; 회복적 사범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2권2호(2004), 27면 이하; 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적 사범, 『형사법연구』 제23호(2005), 224면 이하 참조.

② 형사화해

우리나라에서는 victim-offender mediation 이나 독일어의 Täter-Opfer Ausgleich를 ‘가해자-피해자 조정’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에는 민사조정과 혼동되기 쉽다. 민사상의 조정은 재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피해자 조정은 재판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화해의 과정을 말한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형사화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형사화해는 주로 민간인 중재자의 조정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여 화해를 이루어냄으로써 법적 평화를 회복하고 재통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가 수궁할만한 배상이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제3절 경찰의 피해자대책

1. 경찰피해자대책의 목표

1) 제2차 피해자화 방지

경찰수사는 피해자가 형사사법제도와 접하는 최초의 단계이다. 경찰은 범죄발생 후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마주하며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가장 많이 피해자와 접촉하므로 피해자도 경찰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형사사법 기관에 의한 피해자 보호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수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사실무의 현실은 피해자 보호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북미와 유럽의 범죄피해실태 조사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중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3할에 이르며, 그 대부분(90%)이 수사

절차에서 경험한 제2차 피해를 범죄로 인한 피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종사자의 인식은 사뭇 달라서 “피해자는 다소 고통을 받더라도 수사에 협력할 의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⁴⁵⁾ 경찰·검찰의 수사실무자들은 한편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법집행기관이 주체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단지 수사정보를 얻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제2차 피해자화를 낳는 원인이 된다.⁴⁶⁾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바로 이러한 제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2) 사법경찰의 임무 완수

사법경찰 활동을 단지 형사사법기관과 범죄자(피의자)의 대립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에 의해 이익을 얻는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3면관계로 이해한다면 범죄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불가결하다. 이 경우, 사법경찰작용은 이미 발생한 범죄사건의 가해자를 체포하고 피해물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소극적인 기능을 넘어, 범죄(및 피해) 발생을 억지하고 기왕에 발생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회복시키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3)수사의 효율성 제고

20세기 중반 이래의 서구 산업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이나 사회규범이 붕괴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가치관의 다양성이 중시됨에 따라 특정의 단일한 보편원리나 평가기준을 찾아내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상황(이른바 ‘보더레스(borderless)’ 사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범죄유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사회변화에 수반하는 범죄화(犯罪化) 목록의 증가).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안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피해자

45) 椎橋隆幸·小木曾綾, ‘犯罪捜査と被害者保護’, 宮澤浩一 外編,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137면.

46) Joutsen, M. 水谷規男 譯, ‘被害者政策の變化’, 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東京: 成文堂, 1995, 307면 ; 新屋達之, ‘刑事手續への被害者參加’, 宮澤浩一 外編,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193면.

대책은 필요하다. 범죄신고와 증언 등 시민일반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사법경찰작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요컨대, 피해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경찰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법경찰 작용의 효율을 배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 한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체제

1) 범죄피해자대책실의 성과

범죄자의 개선·교화 및 갱생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고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재활을 지원할 국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과 행정적 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국제적 준칙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김용세)는 ‘2002년 보고서’에서 한국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기본구상 및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경찰 범죄피해자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서 ①경찰수뇌부의 인식전환 ②충실한 연구와 준비작업 ③정책시행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확충 및 ④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⁴⁷⁾

그렇지만, 일선에서 흔히 피해자를 접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기대를 깨닫고 있었던 일부 하위 직원들과 중견 지휘관들의 조급한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피해자대책 수립을 위한 분위기는 쉽게 무르익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3년9월에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같은 해 11월에는 대전지검이 각각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경찰에서도 피해자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6월에는 드디어 경찰청 수사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됨으로써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2005년에는 수사국 산하에 인권보호센터를 새로 설

47) 金容世,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前註1)』, 235면.

치하고, 범죄피해자대책실은 인권보호센터 피해자대책계로 개편되었다.

아무튼, 2004년 하반기 부터 범죄피해자 대책실의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에 힘입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은 급속도로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1) 조 직

① 본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 피해자대책계는 경찰의 범죄피해대책을 연구, 홍보, 교육하고 종합, 조정하는 총괄부서이다.

지방경찰청에는 수사과에 인권보호업무 담당관(경위)을 두어, 피해자대책을 포함한 인권보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경찰서에서는 수사1계장이 피해자대책관을 겸하고 강력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팀별로 피해자서포터를 지명하였다. 서포터는 평상시에는 형사활동 또는 지역경찰 활동 등 기본임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대책관, 피해자지원기관단체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사건이 발생하면 소속팀의 피해자대책을 전담한다.

현재는 인권보호센터가 수사국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경찰의 피해자대책이 수사부서만의 문제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급 경찰서에는 경무·생활안전·여성청소년·형사·정보2계장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여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② 민간조직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및 인권보호 업무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민간조직도 결성되어 있다. 본청 인권보호센터에는 인권수호위원회를 두어 인권관련 연구, 정책개발 및 인권침해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는 각각 행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를 두고 있다.

(2) 연구 및 정책개발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은 오직 피해자대책계가 전담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대책을 수립하려면 대규모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연구용역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책계는 선진국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을 참고하여 잘 정리된 지침서를 발간하고 새로운 직무모델들을 제시해 왔다: 각급 경찰관서에 피해자 관련업무를 담당할 조직 설치, 이동식 피해자조사실 운영, 피해자지원 임상심리사 양성·활용계획 수립,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발간 및 피해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단기 교육 등이 그것이다.

2) 문제점과 개선과제

피해자는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 이제는 한국경찰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없다. 상부의 지시와 설득만으로 모든 경찰관의 직무행태가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일반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백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보호 업무가 표준화되어야 함은 물론 다른 영역의 직무집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보호 관련업무를 집행과 관련해서도 상벌(賞罰)이 명확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 피해자보호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관련 법규 또는 직무규정에 명시하고 b) 구체적 실천방법을 시행세칙(또는 지침 등)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한편 c) 직무내용별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d) 당해 직무집행을 둘러싼 공과(功過)에 대해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피해자보호업무와 관련한 상벌 기준에 까지 언급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그 비중이나 형식이 어떻든, 피해자관련 직무집행 성과를 근무성적평정점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표4-1><표4-15>), 명백한 과오⁴⁸⁾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8) 金容世,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前註1)』, 224면이하 참조.

(1) 조직개편: 피해자대책계

① 현재의 조직체계와 문제점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전담하는 인권보호센터 피해자대책계는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는 업무영역이 수사부문이고,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제2차 피해자화 가능성도 주로 수사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그 외 하부조직에서는, 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인권보호업무 담당관(경위), 각급 경찰서의 피해자대책관(수사1계장), 형사팀마다 지정되어 있는 피해자서포터 등이 피해자대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 밖에도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임상심리 전문교육 이수자 및 임상경력자 30명을 특별 채용해서 지방경찰청에 배치함으로써 피해자지원 임상심리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살인·강간 등 강력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을 담당할 위기개입팀(crisis intervention team)으로 활약하고, 평상시에는 범죄피해자 상담활동 및 일선경찰관 대상 피해자보호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별로 민간협력단체(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도 조직되어 있다. 전술한 조직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대책을 위한 외형상의 인적 구성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 a) 범죄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수사과의 업무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보과, 생활안전과 및 교통과도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보호대상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범죄'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고, 수사대상인 범죄사건 피해자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형벌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고소가 없거나 처벌조각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사건의 피해자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과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b) 현재의 피해자 보호업무는 경찰청 수사국으로부터 경찰서 수사과에 이르는 지휘계통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찰조직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업무효

울성 확보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자대책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무·생활안전·여성청소년·형사·정보2계장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수사과 소속 경찰관 이외에는 피해자대책은 타부서의 업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예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 c) 현 체제 아래서는, 범죄피해자대책계의 업무가 마치 '수사국의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부서 간 경쟁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2005년8월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와 여성부의 협력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이하 'one stop 센터)」를 들 수 있다.

'one stop 센터'는 당초 고위층 부인의 각별한 관심표명에 부응하여 경찰청과 여성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구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8월31일 경찰병원 내에 최초의 'one stop 센터'가 개설된 것을 필두로 동년 12월22일 부산센터, 2006년1월17일 강원센터 등이 설치되었고, 2006년 상반기 중 전국 13곳에 'one stop 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⁴⁹⁾ 'one stop 센터'는 2001년10월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했던 경찰병원 내 성폭력의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및 증거채취, 법률지원, NGO연계 등을 실시할 국내최초의 통합피해자지원시스템이라고 한다.⁵⁰⁾

일견 나무랄 곳 없는 과학적 피해자지원체제인 듯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효성 없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거나 -적어도 경찰의 피해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상실케 함으로써 인력과 자원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경찰 피해자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없지 않다.

첫째, 앞에서 인용한 '경찰청브리핑 자료', '강원센터 웹페이지의 홍보자료' 등에 제시된 피해자지원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전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 국립대학 부속병원에 설치되어 재정형편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생각되는 강원센터조차 - 겨우 2~3명의 상담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의 인력

49) 여성가족부 웹페이지 뉴스(www.mogef.go.kr).

50) 경찰청 브리핑,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정책자료 게시물(2005.10.03) 참조.

으로 위에서 열거한 업무를 모두 -그것도 24시간 체제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종래에도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간조직들은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 조직들은 대부분 범죄피해자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적어도 관심을 가진) 지역의 개업의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형식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해 왔다. 그들의 의료지원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무료’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적어도 피해자문제에 관한 전문적 경험을 갖춘 상담원(종사자)과 의사에 의해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one stop 센터’는 대부분 지역의 종합병원에 설치된다. 피해자가 종합병원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직원들이 관여될 수밖에 없고 제1차적 진료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에 맡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수시로 교체되며 격무에 시달리는 ‘견습의’들이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를 ‘지원’하기보다는 ‘제2차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경영상의 압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상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병원’은 없을 것이다.

넷째, ‘one stop 센터’가 아무리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다 해도, 오랫동안 지역 내로 터 잡아 활동해 온 민간 피해자지원조직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여성부 출범 초기에, 여성부가 직접 조직·운영했던 ‘여성의 전화 1366’이 결국 각 지역의 민간조직에 이양된 경위를 되새겨 보면, ‘one stop 센터’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섯째, -특히 경찰의 피해자대책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경찰 내 각 부서가 앞다투어 독자적인 피해자지원에 나서게 된다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정책시행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② 개선방안

전체 경찰조직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인권보호센터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2006년 초 그 소속을 경찰청 수사국에서 감사관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경찰수뇌부 인사 및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등과 맞물려 최종 결정이 늦추어졌다.

생각건대, 경찰청 감사관은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보호에 관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정해진 직무수행 원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족한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 대책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새로운 제도와 직무지침을 개발하고 전국의 경찰관서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는 감독이 아니라 조성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피해자제는 -여성청소년과는 물론-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정책을 개발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집행하며, 경찰 피해자대책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경찰관을 교육 훈련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전술한 학교 및 여성폭력 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도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각 지역의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 아래 운영되어야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인사·재정·교육에 관한 권한 및 각 부서 간의 업무조정을 행할 수 있는 **경무기획국 산하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경무기획국은 “조직 내 혁신역량을 높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 관리하며 보다 적합한 조직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업무 그리고 기관운영을 위한 각종 예산의 편성과 배분 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법령심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 관련부서를 <표2-7>과 같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피해자담당계는 2006년부터 특별채용할 예정인 임상심리사 등 특수한 지식을 갖춘 경찰관 또는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하되(<표4-22>참조), 피해자대책만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 현재는 피해자관련 업무가 적은 편이지만, 피해자대책이 체계를 잡아 갈수록 업무량도 증가할 것이다.

b) 「범죄피해자 서포터」를 「(범죄)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 ‘서포터’라는 표현은 일본 경찰의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지만, 서포터라는 표현으로는 민간인 전문가와 구별되지 않고, 한글표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어 표현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 피해자에게도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 혹은 「피해자보호 경찰관」이라는 표현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표 2-7> 피해자대책을 위한 조직개편안

	현 행		개 선 안	
	경찰 내부조직	협력조직	경찰 내부조직	협력조직
경찰청	수사국 인권보호센터 피해자계	인권수호위원회	경무기획국 인권보호센터 피해자계	인권수호위원회 소속 피해자보호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지방경찰청 행정발전위원회 소속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경무과 피해자계 (전담직원)	피해자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독립기구)
경찰서	피해자대책관 (수사1계장)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소속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경무과 피해자계 (전담직원)	폐지
	형사팀별 피해자서포터		피해자고충 청취 (청문감사관)	
		피해자지원 담당 (필요 부서별)		

c) 이상과 같은 조직체계에서 (가) 경찰청 피해자계는 인사·교육·예산을 관장하는 각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인력수급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찰 피해자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하부기관의 정책추진상황을 점검 감독한다. (나) 지방경찰청 피해자계는 본청에서 시달된 피해자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고, 예산집행,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며 일선의 피해자보호 업무를 감독한다. (다) 경찰서 피해자계는 본청 및 지방청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범죄피해자대책을 실천하고, 소속 직원의 관련 업무 수행을 지도·관리한다. (㉠) 경찰서 청문감

사관은 초동단계에서 전달된 『피해자안내』에 따라(후술 제3장) 피해자의 고충이나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에 (피해자계와 협의하여) 해당 직원의 직무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d) 각급 관서의 피해자계 근무자는 모두 범죄피해자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보한다. 경찰청 피해자계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범죄피해자대책 전문가양성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제4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국의 피해자계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표4-22>).

소속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또는 순찰지구대 근무자 등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모든 경찰관은 경찰청에서 발행한 피해자보호 직무지침과 각자 교육받는 바에 따라 피해자를 원조·보호하되, 자신이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 피해자계에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지방청별로 설치된 『피해자 지원단체 협의회』 소속단체 또는 병원 등에 지원을 요청한다(51면). 경찰청 피해자계는 모든 경찰직원에 대해, 제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지속적인 추수(追隨)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기능을 함양케 하기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장).

(2) 인적·물적 설비

- ① 2005년 수사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된 이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까지 피해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설치되었고, 피해자문제에 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피해자보호 담당직원들조차 피해자문제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더구나 경찰의 피해자보호는 소수 담당직원의 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대책을 위한 조직체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피해자보호 전담인력이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어야만 피해자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둘째, 그 밖의 모든 경찰관에 대해서도 피해자보호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문제는 후술하는 경찰관 교육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셋째, 성폭력사건, 가정폭력 사건 또는 아동학대사건 등 특수한 범죄사건의 경우 초동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여성 전문경찰관을 양성하여 일선에 배치해야 한다.

② 경찰의 피해자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물적 설비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피해자대책계가 2005년 종래의 호송차량 등을 개조하여 이동식 조사실로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밖의 물적 설비는 사실상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 a) 초동단계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장비이다. 이것은 예컨대, 성폭력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즉시 확보하지 않으면 흩어지거나 사라져버릴 우려 있는 증거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와 약품 등을 갖춘 장비셋트를 말한다.
- b) 둘째 모든 경찰서에 피해자(증인)를 위한 조사실, 피해자용 출입구 또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가해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도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진술녹화실’이 설치되어 있긴 하다. 경찰서에 따라서는 꽤 완비된 시설을 갖춘 곳도 없지 않지만, 본청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조사실을 한 칸 마련해 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수사과 또는 생활안전과의 책임자와 경리계의 ‘줄다리기’ 끝에 시설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피해자계는 피해자 등을 위한 ‘진술녹화실’의 표준화와 장비현대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표준설계도면’과 ‘최소설비목록’ 정도라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신축 경찰관서의 설계과정부터 민원실 및 조사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 후 여타 시설을 배치하는 새로운 표준도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⁵¹⁾

51) 경찰 선진화를 위해서는 ‘예산에 맞춘 건축’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관서’를 건설해야 한다. 경찰서도 수사관련 부서 외에는, 시청이나 구청처럼 밝고 개방적인 구조로 건축되어야 한다.

(3) 교육체제

경찰청이 아무리 훌륭한 피해자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현장의 수사관들이 그 내용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모처럼 구상한 경찰 피해자대책의 의미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자의 문제성과 보호필요성 및 방법 등을 숙지하게 할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단계의 한국경찰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피해자대책제도 교육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2005년 초 경찰 종합학교에서 피해자서포터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을 시행할 핵심요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교육만으로 충분한 소양을 갖추 수는 없으며,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수만점제'를 채택한 현행 교육시스템에서는 그 효과마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독자수사권 행사에 대비한 경찰관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피해자대책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종래의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제4장).

(4) 민간전문가(조직)와의 협력체제

현재 한국에는 수많은 피해자지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 대다수가 아직은 충분한 전문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여성부 등의 보조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급조된 경우도 있지만, 확고한 사명감과 오랜 경험으로 단련되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조직도 많다.

① 피해자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경찰의 피해자대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이들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마음 편하게 접촉할 수 있는 민간조직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미국이나 영국처럼 피해자지원 민간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가정폭력범죄나 성범죄는 물론이고 그 밖의 폭력범죄사건도 민간조직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예가 많다. 또한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은 물론 정확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찰관보다는 피해자가 마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

우가 많다.

보다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문제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산하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를 각 지역의 피해자지원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피해자지원 민간단체 협의회**』로 대체해야 한다(<표2-7>).

- (가) 기왕에 결성된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를 갑자기 해체하면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되, 이미 임명된 ‘지원협의회’ 회원의 임기가 끝난 뒤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후술하는 것처럼, 모든 경찰관이 만사에 능통할 수는 없다. 수사경찰관의 주된 임무는 ‘범죄수사’이다. 이들을 모두 피해자문제의 전문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도 아니다. 수사경찰관은 제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피해자계 또는 전문 민간조직의 도움을 받도록 하면 족하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민간단체 협의회’의 존재의의는 더욱 빛날 것이다(<표2-7>, 제4장).

② 기타 전문조직과의 연계

피해자지원조직 외에도,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단위로 피해자문제에 관심을 가진 병·의원과의 연계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한 처치를 -그 범죄유형에 따라- 담당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조직 중에는 지역의 병의원과의 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예가 많다. 따라서, 이 문제는 『피해자지원 민간단체 협의회』만 구성해도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 밖의 범죄 피해자에 관하여도 -경찰의 노력여하에 따라- 유사한 의료지원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처치라 할지라도 언제나 무료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병의원의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망감과 피해자문제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 연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지닌) 양심적인 의료진을 찾아내는 일이다.

제3장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제1절 경찰수사와 피해자보호

1. 수 사

1) 수사의 개념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탐색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 초기에 정립했던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합리적 절차이다.⁵²⁾ 다시 말해서, 수사란 범죄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포괄범위를 여하히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견해차가 존재한다.

(1) 최광의의 수사

수사개념을 가장 넓게 이해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수사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첩보 수집, 수사단서를 얻기 위한 활동, 내사 등이 모두 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러한 최광의 개념은 입건하기 전의 내사단계에 있는 용의자(피내사자)까지도 피의자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보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⁵³⁾ 우리의 현행 수사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수사개념을 최광의로 파악하면, 사법경찰관의 내사종결권(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범죄수사규칙 제73조)을 최종적인 수사종결권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수사종결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의 태도와 합치하지 않는다.

52) Osterburg, James W., *Criminal Investigation(3th edition)*, Anderson Publishing, 381면.

53) 피내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는, 내사를 병자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해서는 아니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후단)는 추상적 규정이 있을 뿐이다. 피내사자도 헌법 제2조(신체의 자유),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선임권의 고지·가족에의 통지 등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광의의 수사

최광의 수사개념 중 입건 전의 활동을 제외한 개념이다.⁵⁴⁾ 즉,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입건) 후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활동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후는 불문한다. 범인 검거와 증거 수집 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 및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활동도 모두 수사에 포함된다. 다만, 그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수사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부수적 수사활동에 경찰의 피해자호보 및 지원활동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경찰이 인질강도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질을 구출하는 과정도 수사에 포함되며, 가정폭력사건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인을 제지하는 것과 피해자를 구호하고 상담시설에 인도하는 것도 수사활동의 일부이다. 같은 이유로, 성폭력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범인이 도주해 버린 경우에 피해자를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는 것도 수사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수사활동 지원행위는 수사에 협력하는 행위일 뿐 그 행위 자체가 수사에 속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행위일지라도 수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예컨대 수사경찰이 야간 방법활동에 동원되거나 행사장의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것은 수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현행법 규정이나 실무 현실을 고려하면 수사개념을 광의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협의의 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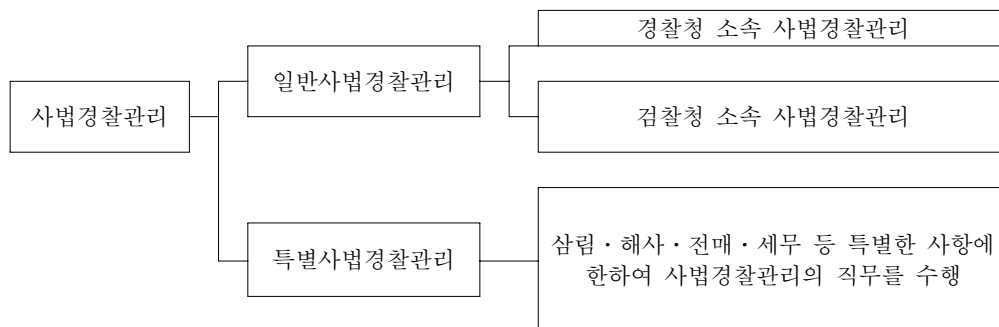
수사개념을 좁게 파악하면, 수사란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의 활동은 수사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54) 아직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내사, 불심검문 또는 변사체검시 등은 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신동운, 『형사소송법 I』, 법문사, 1997, 80~86면).

2) 수사기관

검사는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림 3-1>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따라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여 검찰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실무가 운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모든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체제는 분명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2005년 하반기 경찰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었고, 2005년12월에는 대부분의 범죄사건에 관하여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여당의 법률개정안도 제시되었지만, 2006년1월 시위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이 사퇴하면서 2006년2월 현재 수사권 재분배 논의도 일단 답보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가 성숙할수록 검찰이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는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2006년 초 현재 한국 경찰의 가장 긴요한 과제는 -서론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모처럼 무르익은 독자수사권 부여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과 향후에 부여될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다.

3) 경찰수사의 특성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은 검사를 비롯한 여타 수사기관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경찰은 통상 범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제1차적으로 현장에 임한다.

둘째, 경찰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 직후에 그 위기상황에 개입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셋째, 경찰은 2003년 현재 1만 5천명의 수사인력을 보유한 대규모 수사기관으로서 일반시민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하고도 밀접한 조직이다.⁵⁵⁾

넷째, 경찰의 업무특성상 수사도 다른 경찰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컨대, 파출소 직원이 방법순찰을 하다가 불심검문을 하었는데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수사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파출소에서 초동수사를 마친 후 경찰서 수사관에게 수사상황을 인계하게 되며, 범인검거를 위하여 방법·경비·교통부서 직원이 공조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직무부서가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

4) 수사절차 진행과정

(1) 수사단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수사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있다고 사료할만한 사실을 인지(認知)하는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된다. 수사의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고발, 풍문, 언론보도 등이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관이 우연히 범죄혐의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수사착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입건과 수사개시

수사기관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든 범죄혐의사실을 인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

55) 2003년7월 현재 전국의 수사인력은 15,742명에 달한다(2003 경찰청 수사국 통계자료).

사착수의 필요성과 수사착수의 시기 등을 판단하고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고소·고발·자수 이외의 단서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이 때 객관적 범죄혐의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에 기록한 후 내사할 수 있다. 내사결과 객관적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고, 혐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 내사를 종결한다.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사건을 사건부에 기록해야 하며(범죄수사규칙 제51조1항), 이 절차를 입건이라고 한다. 이 때 수사기관은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과급효과와 모방범죄 가능성 또는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 시기·방법 또는 완급을 정해야 한다.⁵⁶⁾ 수사기관은 a)누가 b)언제 c)어디서 d)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 e)무엇을 f)어떻게 하였는가, g)동기·원인은 무엇인가, h)공범은 없는가(‘8何의 원칙’)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한다.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에 관한 부분도 상세히 조사한다. a)피해자의 직업·가정상황·평소의 행동·인격·재산정도·환경 b)피해자의 주변인물 c)피해자 집에 드나드는 사람 d)피해일시·기후 e)피해상황 f)피해장소 및 주변상황 g)피해물건의 종류·수량·위치·특징 등이다.

(3) 초기수사

초기수사 또는 기초수사란 주로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현장관찰, 목격자확보, 피해자조사, 피해물품조사 등, 향후의 수사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발견, 수집하는 단계이다.

초기수사는 흔히 현장수사라고도 하는데, 현장수사의 필요성과 의미는 범죄의 종류와 행위태양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살인, 강도, 방화 또는 절도와 같은 범죄는 수사기관이 현장에 임하여 그 상태를 관찰하거나 그곳에 남겨진 자료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범죄를 임검범(臨檢犯)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현장수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 중수뢰·배임·횡령·사기 또는 선거법위반죄 등은 대부분 범죄현장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런 범죄를 비임검범(非臨檢犯)이라고 하는데, 범죄현장이 따로

56)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33면.

없거나 현장에 가더라도 범죄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에 임할 필요도 없다.⁵⁷⁾

임검법에 있어서는 특히 초기의 현장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범죄현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면 이후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4) 본격수사

수사기관은 기초수사를 통해 수집된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이후 계속될 수사의 방향(수사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본격수사란 수사방침에 따라 범인을 발견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가는 단계를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수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다음의 수사방법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첫째, 현장 및 그 부근에서부터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는 「행적수사」,

둘째, 범죄현장 및 부근에 남겨져 있는 흉기 등의 유류물에 대하여 출처를 추적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유류품수사」,

셋째, 현장상황과 피해자의 생활상태 등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 또는 주변지역을 잘 아는 자인가를 밝히는 「감별수사」,

넷째, 범인의 침입, 도주방법, 범행전후의 사정 또는 수단과 방법을 살피는 「수법수사」,

다섯째, 지문조회, 혈액감정 등을 행하는 「감식수사」 등.⁵⁸⁾

(5) 송 치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적용법조와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만큼 수사가 진척된 다음에 모든 기록과 증거물을 피의자의 신병과 함께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는 잠정적으로 종결된다.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 자신의 의견(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등)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송치의견은 검사의

57) 網川政雄, 편집부역, 『초기수사의 실제』, 제일가제법령출판사, 35면.

58) 임창호, 『범죄수사론(前註56)』, 35면.

사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그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송치 후에도 검사의 보강수사 지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6) 사건처리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사건처리라고 한다. 사건처리에는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이 있는데, 이로써 (기소 후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2. 범죄현장수사와 피해자

1) 범죄현장수사

(1) 기초수사와 초동수사

기초수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초기에 수사사항을 결정하고 수사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수집 활동으로서 사건해결의 성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⁵⁹⁾ 광의의 기초수사(초기수사)는 범행현장 및 주변에서의 초동수사와 그 밖의 초기단계 수사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초수사와 초동수사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⁶⁰⁾

첫째,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초동수사는 사건 발생 직후의 현장부근에서 범인체포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초수사는 초동수사에 의해서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사건 혹은 발생 후 상당한 날짜가 경과하여 발각된 살인사건과 같이 현장부근에서 범인이 검거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실시한다.

둘째, 수사목적과 관련하여, 초동수사는 주로 범인의 검거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초수사는 장래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초동수사는 대체로 사건인지 후 몇 시간 이내의 수사이지만, 기초수사는 자료·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수사방침을 확립하는 과정으로서 대체로 1주일 내지 10일 정도의 기간에 실시된다.

59) 임창호, 『범죄수사론(前註56)』, 215-216면.

60) 網川政雄, 『초기수사의 실제(前註57)』, 294-321면 ; 임창호, 『범죄수사론(前註56)』, 216면.

넷째, 수사의 태양 및 방법과 관련하여, 초동수사는 긴급 활동이므로 신속이 그 핵심이지만, 기초수사는 장래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수사의 기초로 되는 활동이므로 신속보다는 확실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초동수사라 함은 요컨대, 사건발생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 수사를 말한다. 초동수사는 범죄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행해지는 초기수사의 일종으로서, 현장감식, 현장수사, 현장탐문 등 범죄현장 및 현장주변에서의 수사활동을 총칭한다. 사건인지, 긴급전파, 긴급출동, 긴급배치, 긴급조치(범인체포, 긴급처치, 사태진압, 확산방지), 긴급채증 및 현장보존 등의 초동조치도 여기에 포함된다.⁶¹⁾

초동수사를 현장 및 현장주변 수사와 구별하기도 하지만 실익은 없어 보인다. 또한 송치 후 검사가 행하는 제2차적 보완수사와 구별하여 송치하기 전까지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제1차적 수사를 광의의 초동수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⁶²⁾ 송치 전에 사법경찰관이 실행하는 수사를 모두 ‘초동(初動)’수사라 칭하는 것은 이 단어의 일상적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장수사와 초동수사

현장수사란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를 말한다. 여기서 범죄현장이라 함은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장소를 의미한다. 범죄현장은 반드시 단일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범행현장이 여러곳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제1의 장소에서 사람을 살해를 한 뒤 제2의 장소로 사체를 옮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속범의 경우처럼 시간 동안에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며 범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예컨대, 협박, 공갈 또는 인질강도범 등 유무선 전화를 통해 범행하고 있는데 범인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거나 끊임없이 변경되는 경우처럼 수사 초기에는 범행의 현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예도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부득이 피해자의 현재지를 범행현장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수사는 - 전술한 바와 같이 - 직접 범죄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그곳에 남아있는 자료들

61) 임창호, 『범죄수사론(前註56)』, 167면.

62) 임창호, 『범죄수사론(前註56)』, 166면.

을 확보해야 하는 이른바 ‘임검법’에 한해서만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상술한 기초수사 내지 초기수사와 구별된다.

초동수사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최초로 행하여지는 현장중심 수사활동으로서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초기의 수사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① 사건인지, 긴급전파, 긴급출동, 긴급배치, 긴급조치(범인체포, 긴급처치, 사태진압, 확산방지), 긴급채증 및 현장보존을 의미하는 초동조치와 ②현장감식, 현장수사, 현장탐문 등 협의의 초동수사가 포함된다.⁶³⁾ 초동수사도 현장성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현장수사와 같지만, 현장수사는 반드시 사건발생 초기에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초동수사와 구별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초동수사는 사건발생 초기의 현장수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동단계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안전한 현장 접근 ②부상자 등 구호를 포함한 현장지원(Render assistance) ③피의자 검거 ④목격자 확보 및 인적사항 기록 ⑤ 목격자 격리와 진술의 청취 ⑥현장보존 ⑦피의자 신문 및 피해자 조사 ⑧기본적 사실관계 기록 ⑨증거수집을 위한 준비(Arrange for collection of evidence) ⑩현장상황에 대한 정확하고도 완전한 보고 ⑪담당 수사기관에의 인계.⁶⁴⁾

2)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실체 확인을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사건의 실체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은 단지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보호라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적 접근은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사경찰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그러한 신뢰가 적극적인 협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수사목적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초동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조사해 두어야 할 사항은 피해자의 진술확보·

63) 임창호, 『범죄수사론(前註56)』, 167면.

64) Adams, Thomas F., *Crime Scene Investigation*, 2000. 20~21면.

피해품 내역확인·피해자 신원확인 등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일이다. 범죄사건 해결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중요성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목격자 진술의 완전성과 정확성이 사건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⁶⁵⁾ 이 목격자 속에 피해자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초동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거나 수사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서 그 입을 닫게 만든다면, 그는 사건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조자를 잃게 된 것이다.

제2절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현황

1. 경찰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 정책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일반법규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 범죄 피해자보호법이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에 관하여는 각각의 특별법규에 추상적 주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28면이하).

물론 특정 절차(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직무집행 방식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해당 기관의 고유한 업무특성에 따라 직무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모든 수사관이 이를 숙지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 훈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찰도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된 피해자보호의 사회적 요구에 상응하여 다수의 실무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대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2002)』 『아동성폭력수사매뉴얼(2004)』 『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2005)』 등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간된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은 이전의 두 가지 실무지침에 수록된 피해자보호의 기본원칙을 거의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도 한층 높은 것으로 보인다.

65) Sanders, A. 외, *Victims with learning disabilities : Negotiat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xford University Centre for Criminological Research, 1997; Milne, Rebecca, 외, *Investigative Interviewing*, Wiley, 2001, 1면. .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2005)』은 초동수사를 포함한 수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직무지침을 제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지능범죄, 절도범죄, 소년범죄, 성매매 및 교통사고 등 범죄 유형별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직무수행 가이드라인을 신고접수와 현장출동 등 수사진행 단계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경찰청 피해자대책계가 외국의 자료들을 두루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해 준수할 기본 원칙들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상 이 매뉴얼에서 제시한 직무지침만 충실히 이행해도 초동 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기존의 매뉴얼에 따른 직무집행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뒤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신고접수와 현장출동

1) 신고접수

범죄신고를 정확하게 접수하고 범죄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구호하면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은 수사경찰 뿐만 아니라,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비롯한 외근활동을 하는 모든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신고는 112전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지령실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근경찰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예도 있다.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신고시간과 주거, 직업, 성명, 연령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고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친지 또는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를 밝히도록 요청하고, 사건의 내용을 청취하여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유형·발생일시·발생장소·범인 인상착의·피해자·피해를 입게 된 경위나 동기·피해품·피해정도·범행방법·범인의 주요 행위·범행 결과·범인의 도주방법·기타 목격자 등을 청취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2) 신고접수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

최초 신고사건을 접수하는 경찰관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신고를 접수, 피해자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⁶⁶⁾

- ① 피해자는 신고 당시 몹시 당황한 상태이거나 생명·신체·재산 등을 침해받아 의지할 곳은 경찰 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한다.
- ② 경찰관 스스로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피해자를 안도하게 한 뒤 필요한 내용을 간절히 청취하고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 ③ 과거 경험이나 선입견에 의한 주관적 판단으로 사건의 진상을 잘못 청취하면 이후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④ 관할 외 사건은 관할기관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은 범죄 유형별 피해자 특성에 대응한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요령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⁶⁷⁾

3) 현장출동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

경찰관이 신속히 범죄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 구조, 피의자체포, 피해품회수, 중요한 증거와 목격자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범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현장도착에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인근 근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⁶⁸⁾

66)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2005)』, 30면.

67)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2005)』, 43면 이하 참조.

68)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2005)』, 31면.

<표 3-1> 112접수 후 도착시간 현황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건수	2,403,265	2,937,212	3,143,494	3,332,025	3,755,008	4,389,349
5분 이내	539,556	868,001	910,657	894,245	3,192,814	3,527,632
10분 이내	125,996	202,366	185,665	168,194	455,674	714,908
10분 이상	24,307	32,348	42,024	24,262	106,520	146,809

*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2005), 69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80% 이상) 112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다(<표3-1> 참조).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구호하고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범죄수사규칙 제83조 등). 범인이 도주하여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경찰은 임무를 분담하여 부상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해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 83조).

현장출동시 피해자보호를 위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⁶⁹⁾

① 상황에 따른 출동방법을 고려하여 노출·비노출 출동여부를 판단한다.

순찰차량을 이용할 것인가 일반승용차를 이용할 것인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켜 것인가의 여부, 현장에서 하차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에서 하차 도보로 이동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예컨대, 성폭력사건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짐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근무복보다는 사복, 순찰차보다는 일반승용차를 이용하여 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12지령실과 수사지휘 간부는 지구대와 출동형사들에게 출동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체·생명의 보호 및 구호활동을 전개하며 인명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는 금물이다.

변사사건의 경우,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 사자(死者)에 대한 예우를 잃지 않도록

69) 경찰청 범죄피해자계,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2005)』, 31면.

정중히 취급하며, 변사자의 가족에게도 그 심정을 헤아려 공손하게 대하고 지나치게 사무적인 언행을 지양한다.

- ③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현장 도착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취하고 현장은 가능한 한 원 상태로 보존한다.

구호 과정에서 범죄현장의 원상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원상보존으로 인해 피해자구호가 늦어지거나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경찰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구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이동시킬 때에는 그 위치 등을 표시하여 사후에 범행의 진행 경과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경상인 경우에는 위로의 말 등으로 피해자를 진정시키면서 구체적인 사건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및 제반 정황에 관해 질문을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이 때에도 수사관의 입장에만 서지 말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0조).

- ④ 피해사실 청취시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여 신뢰감을 부여한다. 예컨대, 강·절도 현장에서 “도둑놈이 증거를 남겨 놓았겠어요?”라며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조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 ⑤ 피해자에게 피해자 안내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각종 제도 및 지원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1) 피해자 신변보호의 일반원칙

범죄신고자 또는 목격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 인질강도 및 약취유인,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⁷⁰⁾ 가해자가 실제로 보복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피해자가 보복의 공포를 호소한다면 그 불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범위의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

70) 경찰청 범죄피해자계,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2005)』, 31면.

보호법』 제9조 후단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지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이다. 신변보호의 대상 및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 상술한 -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의 ‘추상적 권고’와 다름없는 수준이다. 법무부 인권과는 2006년3월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몇몇 개별법령이 특정 범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정한 예가 있다. 범죄신고자 등은 자신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이하 ‘특신법’ 제13조제1항). 이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범죄신고자에게는 피해자가 포함됨은 물론이다(특신법 제2조제2호 참조). ‘특신법’은 신고한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보복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은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강법’ 제7조제1항). 그러나 이 규정은 신변보호조치의 청구권자를 특정 강력범죄사건의 증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신변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피해자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지등을 밝히지 않는 신분노출 금지조치(‘특신법’ 제7조), 피의자와의 대면차단 및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 있는 자의 접근차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9조), 사생활의 노출차단(특신법 제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특신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특정시설에서의 피해자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동행, 주거지역에 대한 순찰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그 밖에 간접적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 신변안전 확보를 도모하

기도 한다. ‘특강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2호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나 그 친족 및 기타의 자에 대하여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 석방 및 보석을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은 여전히 범죄신고자 또는 피해자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현재 수사기관에서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0.7%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51.8%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⁷¹⁾ 또한 “범죄신고자가 보복의 위협을 느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관심을 갖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가에 관해 조사대상의 3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58.9%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한다.⁷²⁾ 그 이유는 아마도 추상적 일반원칙을 실천할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부수조치가 강구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2) 신변보호조치 실패 사례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는 그다지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종래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변안전 보호조치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신변안전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방법 등을 정비하고, 모든 경찰관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처한 위협의 정확한 판단과 차질 없는 보호조치 실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강력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법방해 또는 증인 등에 대한 복수감정의 해소를 위한 범죄도 보다 치밀하고 흉포하게 진화할 가능성이

71) 조병인, 『범죄신고보상제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9-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70~171면.

72) 부정적으로 응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적당히 보호해 주는 시늉만 할 것이다(38.3%), ②업무가 바빠다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13.7%). ③ 도리어 짜증을 내며 신고자를 원망할 것이다(6.9%)(조병인, 『범죄신고보상제도에 관한 연구(前註71)』, 177면).

있기 때문이다. 신변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국내외 경찰의 신변보호 실패 사례를 소개해 둔다.

(1) 국내사례

<사례1>⁷³⁾

“...이에 위협을 느낀 최호형은 같은 해 6.15. 수원○○경찰서에 한○열을 고소함과 아울러 같은 달 20. 경찰청장에게 탄원서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달 말경 경찰청장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관서에 최호형의 신변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사실, 한○열은 위 사건이 이첩된 수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7.8. 최호형에게 사과를 하여 최호형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21.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중략)... 한편 1995.4.경부터 최호형과 재결합하여 살고 있었던 최호형의 전 남편 안○현은 최호형이 귀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25. 새벽 군포경찰서 ○○파출소에 최호형이 한○열에게 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최호형은 한○열로부터 풀려 난 후 같은 달 27. 15:00경 위 파출소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서 파출소 소속 경장 임○영에게 사정을 설명함과 아울러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하면서 사건을 수리도 하지 않았으며, 퇴근길의 최호형을 버스정류장까지 순찰차로 몇 번 태워 주는 데 그친 채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방관한 사실, 최호형은 같은 달 28.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다시 한○열을 고소하였고, 담당경찰관인 이○희는 최호형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1994년 이후부터 최호형이 위와 같이 위해를 당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최호형의 말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택시운전사의 소재를 알아 오라고 하면서 한○열에게는 12.5.10:00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만 보내고 만 사실, 한○열은 같은 해 12.2.08:00경 명진투미용실에 찾아가 최호형과 그의 어머니인 박연숙을 망치로 치고 칼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하였다가 같은 달 16.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열은 최호형을 살해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원한을 품고 집요하게 최호형을 괴롭혀 왔고, 이후에도 최호형의 생명·신체에 계속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하여 최호형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최호형이 살해되기 며칠 전인 1995.11.25. 새벽과 같은 달 27. 오후에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군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나 같은 달 28. 고소장 접수에 따라 최호형을 조사한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담당경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한○열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최호형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최호형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73) 대법원 1998.5.26, 판결 98다11635.

이 사례는 피해자로부터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보호의무를 대만히 한 나머지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예이다. 이 사례에서 담당경찰관은 피해를 당한 범죄의 종류와 경중, 가해자의 전과, 환경 또는 수사와 공판 진행상황 등을 토대로 요보호자의 신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였어야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잠재적 위험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2) 외국사례

<사례2>⁷⁴⁾

1982년 10월에 시작해 1983년 6월까지 계속해서 Tracy Thurman은 계속해서 경찰당국에 그녀와 별거중인 남편 Buck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 몇 차례 고소장을 내어 보았으나 경찰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가정 내의 문제로 여기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구타하던 날도 Buck는 칼로 찔러냈지만 경찰은 Buck에게 칼에 관해 질문하였을 뿐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경찰에 주고서 Tracy의 머리를 짓밟았다. 이 때 다른 경찰관들이 도착하였고 Tracy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순간까지 Buck은 체포되지 않았다. 이처럼 Tracy가 위기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24명의 경찰관에 대해, 연방법원은 총액 230만 달러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례는 미국 코네티컷주 토링턴(Torrington)시에 거주하는 트레이시 써맨(Tracy Thurman)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신변보호요청을 묵살한 토링턴시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예이다. 지속되는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조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경찰관들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으며, 위협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4. 현장에서의 증거수집과 피해자보호

74) Wallace, Harvey, Victimology, Allyn and Bacon, 156면.

1) 물리적 증거 수집

(1) 현장감식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초동수사에 임하는 경찰은 사건발생 후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그 자리에 남겨진 증거물을 수집하여 감식을 의뢰하는 등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현장관찰, 현장도면 작성, 사진촬영, 현장기록 작성, 현장 유류물에 대한 감정 및 사체부검 등 체계적인 현장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범행현장에서의 물리적 증거수집활동, 즉 사건발생 직후의 감식수사를 총칭하여 ‘현장감식수사’라 한다. 초동수사 단계의 현장감식은 대체로 현장보존, 현장관찰, 현장상황기록, 증거물수집 및 감정의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넓은 의미의 감식수사에는 현장감식 외에 국과수 및 경찰청 과학수사과 등이 의뢰받은 감정물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요컨대, 감식수사란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범행현장을 관찰하고, 현장에 남겨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수사과정을 말한다.

현재 지문·족흔적 감식·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은 경찰청 과학수사과를 비롯한 경찰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사체부검·유전자감식·생물학적 감정·화학적 감정·약독물 감정·화재원인 판정을 위한 물리학적 검사·총기 감정·문서 감정·성문(聲紋) 감정·토양 검사·유류 감정·수퍼 임포즈 기법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감식수사를 위해서는 출입자 통제를 비롯한 현장보존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실시할 때에는 사후 입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집한 자료는 현장사진 현장도면 등에 정확히 기입하고, 필요에 따라 증거물 채취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그 채취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⁷⁵⁾ 살인사건을 비롯한 강력사건 수사에서는 특히 철저한 현장 감식을 요한다.

75) 지방경찰청현장과학수사실시운영규칙(지방경찰청훈령 제83호), 중요사건비디오촬영및보존에관한규칙(경찰청예규 제248호), 현장사진작성및기록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300호).

현장감식은 사건발생 직후의 생생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만큼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형소법 제310조) 그 밖의 진술증거도 증거능력이 엄격히 제한되는(형소법 제311조 이하) 현대 형사소송절차에서 자백위주의 전근대적 수사기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범죄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물리적 증거의 수집이 불가결하다. 더구나 범죄가 지능화, 첨단화될 수록 과학적 현장수사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2) 현장감식수사의 유형과 피해자 조사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물리적 자료는 주로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살체의 사후경과시간 추정자료, 자살과 타살을 구별하기 위한 판단자료, 사망원인 추정자료 및 손상형태 감식에 의한 흉기 또는 기타 범행방법 추정자료 등이었다.

그 밖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를 비롯한 모든 강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관련된 감식수사는 매우 중요하다. 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증거물을 채취하기에 앞서 증거물이 놓여있는 위치, 증거물의 상태(색·냄새·오염·부패 여부)를 상세하게 기록한 후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경우라면, 흐트러진 이부자리, 깨진 물건, 머리카락과 체모(體毛), 혈흔, 정액, 기타 가해행위 및 피해자의 저항상태를 나타내는 현장상황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후 감식요원이 직접 증거물을 채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치녀막이 파열되었거나 기타 신체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⁷⁶⁾ 피해자가 입었던 속옷 등 의복은 경찰관이 도착 전까지 갈아입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갈아입어야 하거나 이미 갈아입은 경우에는 종이봉투를 이용하여 그 옷을 보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6) 경찰청,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86~87면.

2)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진술증거 수집

(1) 피해자 진술 획득의 어려움

현장감식수사를 통한 물리적 증거 수집 외에, 피의자·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탐문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탐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증거수집활동에 속한다. 특히 범죄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강력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매우 놀라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2) 일반적 주의사항

①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 담당 형사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할 것이 아니라, 질문 사항을 종합하여 가급적 피해자서포터가 질문과 조서작성을 전담하도록 한다.

②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진술하기를 원하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조직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찰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③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언행을 금지한다.

④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사하는 등 보안유지에 유의한다.

⑤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범죄유형별 피해자 대응방법

이미 충분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히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범죄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상황과 정신 심리적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피해자를 접촉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는 수사경찰관은 각 범죄유형별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은 상술한 일반적 주의사항 외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지능범죄, 절도범죄, 소년범죄, 성매매, 교통사고 및 기타 강력범죄의 각 유형별로 피해자 조사의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⁷⁷⁾

3) 기타 증거 수집

해당 행위가 수범범죄에 해당할 경우 범인을 검거하였다면 철저한 현장관찰 및 피해자 면담을 통하여 수범원지를⁷⁸⁾ 작성하여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되, 범인검거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품 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통보표를⁷⁹⁾ 작성하여 전산입력을 통해 공조수사를 전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7)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2005)』, 45면 이하 참조.

78) 수범범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위변조, 약취유인, 방화, 강간)가 발생하여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공조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수법·인상과 특징·범행장소·공범관계·범행사실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경찰대학, 『경찰수사론』, 2003, 288면).

79) 수범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조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즉시 범인을 검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사건의 범죄수법, 피해품 내역,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 현장에 입장한 임장자가 작성한 표를 말한다(경찰대학, 『경찰수사론(前註78)』, 289면).

제3절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대책 개선방안

1. 현상분석과 개선방향

1) 현상분석

(1) 현존하는 한계

범죄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크다. 그들은 초동수사에 임한 경찰관의 사소한 말이나 거동으로부터도 깊은 상처에 빠지거나 의심을 품기 쉽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마음을 닫거나 그 기억이 왜곡된다면 그들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경찰의 신중하고도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2004년 경찰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신설된 이후 범죄피해자 문제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다. 범죄피해자대책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서포터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임상심리사를 특별채용하여 「위기개입」전문가로 활용할 계획이기도 하다. 특히 2005년에 발간된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은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해 준수할 기본 원칙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이 매뉴얼에서 제시한 직무지침만 충실히 이행해도 초동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수사경찰관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보호가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직무집행의 일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본청 피해자대책계의 정책구상이 일선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범죄수사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경찰관에 대해 심도 깊은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집행 상황을 엄중히 점검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원칙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강제'하는 일이다. - 전술한 바와

같이 - a)피해자보호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관련 법규 또는 직무규정에 명시하고 b) 구체적 실천방법을 시행세칙(또는 지침 등)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한편 c)직무내용별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d)당해 직무집행을 둘러싼 공과(功過)에 대해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직무매뉴얼은 단지 가장 기본적인 행동수칙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범죄수사의 모든 장면과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그 모든 상황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원칙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은 각 직능별로 많은 수의 직무매뉴얼을 출판하였지만, 일선에서는 그것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읽지도 않는 매뉴얼’ 보다는 충실한 반복 훈련과 관련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 감독의 효율화가, 경찰관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보다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가능한 한,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동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직무수행방식을 모색해 보고, 현장수사에 임하는 수사관이 반드시 휴대하고 숙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숙지사항만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2) 초동수사의 피해자대책 체크포인트

사건발생 초기 현장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관이 현장에 임하여 피해자와 현장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그곳에 남겨진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이른바 ‘임검범(臨檢犯)’이다. 대체로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의 강력범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진행이 빠르다.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후 즉시 현장을 이탈하므로 신속한 출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남아 있는 인적·물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기 쉽다.

〈그림 3-2〉 초동수사의 피해자대책 체크포인트

초동수사 체크포인트	피해자보호 체크포인트		
	기본사항	필요한 경우조치	
• 신고접수	신고자·피해자 등 상태 파악, 신뢰 확보		
• 현장출동	범죄유형에 따라 피해자 입장배려	전문수사인력 대동	
• 부상자구호 등 현장지원	피해자 안정	병원이송 진료, 치료 내·외 전문가 제휴 의사소통기술 개발	
• 현장보존	증거수집준비, 수집		
• 피의자검거			
• 피해자·목격자 확인	인적사항 등 확인	안전확보 보호조치	내·외 전문가 제휴 의사소통기술 개발
• 피의자·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현장에서의 기초조사		
•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현장상황, 사실관계의 정확한 기록, 보존, 보고 또는 인계	정보제공	추수관리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정확한 조기 지원을 요청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에 직면하거나 실제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심리적 혼란과 흥분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의 폭력배가 개입된 사건의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초동수사에서의 체크포인트(61면)와 비교하여 초동단계 피해자대책의 체크포인트를 〈그림3-2〉와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2〉에 제시된 구체적 피해자보호 조치에 관하여는 이 절의 제Ⅱ항에서 설명한다.

3) 피해자 대응의 기본자세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대할 때 유의해야 할 기본자세에 관하여는 수많은 문헌이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종 문헌을 종합 정리한 책자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⁸⁰⁾

(1) 전문가다운 처신과 일처리

범죄피해자에게 수사관은 안전과 정의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다. 수사관이 침착하면서도 능숙하게 사건처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피해자도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 불필요한 질문의 최소화

사실관계를 조사받기 위하여 면담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건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질문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상호 조정이 있어야 한다. 수사관의 지극히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질문은 억제되어야 하고, 오로지 수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질문에 집중하여야 한다. 사후에 어떤 사실관계를 알고 싶으면 불필요하게 피해자를 접촉하기 전에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먼저 참조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육체적 성적 학대에 대한 반복적이고도 불필요한 질문들은 아동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 소득은 적기 때문이다.

(3) 피해자 비난 금지

수사관은 피해자가 그 범행을 촉발시켰다고 암시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증대시켜서는 아니된다. 때로 피해자들은 수사관이 자기를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80) Reynolds, J. & Mariani, M., *Police Talk: A Scenario-Based Communications Workbook for Police Recruits and officers*, New Jersey: Prentice Hall, 2002, 50~53면; Moriarty, Laura J. *Policing and Victims*(前註33), 19면도 참조.

적대적이고 의심스러운 태도로 질문한다고 불평한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질문태도는 수사과정에서의 제2차 피해자화 원인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강간죄 피해여성이 노출 심한 옷을 입었다거나 술에 취했다거나 경솔하게 악인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절도사건 피해자에게 집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책망해서도 아니된다. 수사관의 책무는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이지 피해자를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관이 범인을 옹호한다고 오해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대신 자신을 탓한다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사건 해결이 극히 어려워진다. 만일, 피해자가 정말로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자신을 탓하게 된다면 그는 헤어나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된다.

(4) 인내와 동정심으로 진술청취

고통이나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한다. 수사관이 이러한 감정상태 빠진 피해자를 대할 때 깊은 이해와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감정표출을 받아 주면서 현장에 있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치유를 도와주는 첫 걸음이 된다.

그러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그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해야 한다. 진술을 독촉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사기관이 성마르게 피해자를 독촉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상태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면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하게 된다.

(5) 피해자의 안전 확보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이 현재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의 두려움이 매우 커서 진정되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경우 현장을 떠나 며칠 동안이나 친구나 친척집에 가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다. 수사관은 현장에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안전감을 확보해주지 못하면 신고를 꺼리게 되어 암수범죄화 한다.

특정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 특히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형사고소를 결심

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부끄러워 할 것 없다는 사실, 그들이 범죄를 촉발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인체포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의료적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추가적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준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도 격려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해자들은 대체로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다. 그리하여 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수사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정내에서의 폭력이나 학대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6)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기회 제공

범죄피해의 후유증을 겪거나 겪을 가능성 있는 피해자들은 수사관 외에 피해자문제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한 때 안전하게 보였던 집이나 자동차가 고통스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들은 절망, 죄책감, 두려움과 분노를 떨치지 못하여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고통은 질병, 이혼, 심지어 자살행위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미리 막을 수 있는 위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

(7) 필요한 정보 제공

일부 수사관들은 아직도 범죄수사는 은밀히 진행되어야 효율적이라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자신도 한 사람의 당사자로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절차의 중요한 당사자임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들은 궁금한 점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적절하고도 예의바른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사건처리와 형사절차에 관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

피해자들이 사건과 사건처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그들이 재피해의 두려움을 떨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일이다. 수사기관은 더 나아가,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피해자 지원단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및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2. 신고접수와 현장에서의 피해자대책

1) 신고접수와 피해자보호

범죄신고자는 신고 당시 당황하거나 놀란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상대가 흥분한 상태라면 우선 진정시키고 사건에 관한 기본사항을 확인하면서 즉시 긴급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때 신고자의 말에 조리가 없더라도 편견하거나 독촉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신고접수자의 선입견에 의해 사실에 대한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진정한 신고를 허위신고로 오판하거나 중대한 사건 신고를 경미한 신고로 오판하여 누락대처 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의욕저하로 인해 신고를 묵살해버리거나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한국경찰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능한 한 사건 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신고접수를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묵살 또는 과소평가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가 피해자 본인은 물론 시민 일반의 경찰불신을 야기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⁸¹⁾ 이것은 신고접수의 요령 및 피해자대책에 관한 모든 직무지침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02년 보고서에서도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경찰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든 역량을 '수량화'하여 평가하는 '형식적 실적주의'만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1) 金容世,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前註1)』, 224면 이하.

- ① 112신고센터를 포함한 모든 경찰관서의 신고접수는 반드시 경찰관이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똑똑한 대학생’이라 해도 의무경찰은 ‘전문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책임감이나 경험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의무경찰의 ‘가벼운’ 응대나 ‘비전문적’ ‘형식적’ 근무자세는 경찰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 ②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은 신고자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경찰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해 주리라는 신뢰감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신고접수의 전후에 반드시 접수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전화신고의 경우에는 “모일 모일 모시에 경사 김〇〇가 신고를 접수했으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겠다(또는 〇〇 조치를 이미 취하였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고지할 것이며, 방문신고인 경우에는 기본적 사항을 기재한 신고접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으로써 신고자는 경찰이 자신의 신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 ③ 신고접수에 관한 직무지침은 각종 직무매뉴얼에서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것을 모든 경찰관이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다. 112신고센터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경찰관이 후술하는 일반적 피해자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일반재직자 교육과정(<표4-22> 참조)의 감수성훈련과 역할극을 통한 실습에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화요령과 예절을 익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2) 현장출동과 피해자보호

사건현장에 출동하는 수사관은 범죄유형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상황에 따라 경광등과 경적을 울리면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복경찰관보다는 사복경찰관이 자가용으로 은밀하게 출동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획일적 출동방식이 사건의 조기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2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성폭력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훈련받은 여성경찰관이 함께 출동하고,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여성경찰관이 먼저 현장에 임하도록 하거나, 최소

한 피해자와의 최초 접촉만은 우선적으로 여성경찰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형사반원 전체가 현장에 득달하여 한꺼번에 현장을 장악하는 종래의 수사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⁸²⁾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사후에, 자신이 강간당하여 정돈되지 않은 상태 또는 남편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여러 명의 남성경찰관에게 그대로 보인 것 자체를 수치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 관해서는 일단 여성경찰관이 먼저 현장에 임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보존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관련 피해자지원조직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병원이송과정 또는 의사나 민간조직 전문가의 협조 하에 제1차적인 진술을 청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일단 피해자의 상태가 대략적으로라도 수습된 이후에 나머지 반원들로 하여금 현장감식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은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여성수사인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여성경찰관의 절대수가 부족한 우리 경찰의 현실에서 위와 같은 권고는 공론(空論)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일단 형사반별로 지정되어 있는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서포터)』이 먼저 현장에 임하여 현장과 피해자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보존조치 및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감식을 실시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여성과 아동피해자에 대한 대처방법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수사경찰관을 생활안전과 여청계에 배치하여 여청계 담당사건의 수사에 임하는 동시에, 형사과 관할사건 중 강간사건을 비롯한 여성피해자가 관여된 사건의 초동대처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 다시, 경찰의 피해자대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훈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등, 인적·물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빈틈없는 현장임장을 위해서는 역할연기 및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훈련을 실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예컨대 미국 미시간주의 경찰교육기관에서는 가정폭력사건 대응 교육과 관련하여 일반 가정집 모형을 축조하여 놓고 가택진입요령 및 현장대응 조치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대응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실시한다.⁸³⁾

82) 金容世,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前註1)』, 225면 사례를 참조할 것.

- ① 초동단계에서 사건현장에 임한 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서둘지 말고, 먼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판단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여성 또는 아동피해자를 위한 전문인력 또는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서포터)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게 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 ②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 친지가 냉정을 잃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자신의 계급과 성명 그리고 피해자보호를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명함을 **첩부한 피해자안내서(<그림3-4>)**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피해자의 안정과 수사경찰에 대한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 또는 피해자보호조직에 피해자의 신병을 위탁**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주선하거나,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피해자계 또는 위기개입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 ④ 경찰 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3) 현장에서의 피해자 응급지원

범죄현장에 도착하면 예컨대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반인의 현장접근을 통제하는 등 사건처리를 위해 주변 상황을 장악하는 한편, 부상자를 확인하여 응급의료지원을 받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현장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이지만, 범인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착한 다른 경찰관을 엄호하는 등 협력태세를 갖추는 필요도 있을 것이다.

수사관이 현장에 임하여 최초로 피해자를 접촉할 때에 가장 주의할 사항은 피해자가 **안정**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을 **신뢰**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기술이다. 우선은 전술한 피해자 대응의 기본자세를 명심하고 피해자의

83) 필자(김재민)는 2004년10월 미국 미시간의 police academy 방문시 현장교육용 model house를 견학하고 담당자의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거나, 강간을 포함한 폭력사건처럼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역 내 병원과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의 효율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3. 피해자지원 전문가(조직)와의 협력

수사경찰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수사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범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수사경찰관에게는 범죄수사업무 관련지식을 함양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는 일이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학습보다 훨씬 중요하다. 범죄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은 제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초기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족하다.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었거나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피해자문제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춘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에, 상담전문가나 의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조사하는 편이 경찰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공명심을 앞세워 무리하게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다가는 제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사건 조기해결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말 우려가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그 상태에 따라 **의사, 위기개입전문가** 또는 피해자보호조직에 위탁하여 적절한 처치와 상담을 받도록 주선한다. 초기조사가 종결된 후에도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 보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도록 하고, 사건 종결 이후의 추수(追隨) 지원에 관하여도 민간조직 등과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1) 신변안전조치의 법적 근거와 내용

(1) 법적 근거

2004년도에 발생한 총 226만건의 범죄 중에서 5,563건이 보복성 범죄였는데, 그 중 보복을 위해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자행한 것이 총 223건에 이르렀으며, 폭행죄만 따로 계산하면 무려 2,929건이 보복성 범죄였다.⁸⁴⁾ 이처럼 (특히) 강력범죄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는 사후적 보복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범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형사사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범죄피해자와 신고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복범죄를 방지하거나 피해자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현행법도 보복 우려 있는 - 특정 -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① 신변보호를 직접 요구하고 있는 법규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을 직접 규정한 법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1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등에관한법률 제20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3조, 및 범죄피해자보호규칙(경찰청훈령) 제13조 등이 있다.

이 규정들은 대체로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은 보복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경찰서장 등은 피해자 등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② 간접적으로 신변안전에 기여하는 법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8조·제29조·제4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84) 경찰청, 『2004범죄분석』, 926면.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발생한 보복성 강력범죄는 살인이 71건, 강도가 68건, 강간이 19건, 방화가 65건이었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26조, 아동복지법 제27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규정들은 대체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난, 범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고를 발하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우려 있는 자 또는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등을 강제로 억류 또는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신변안전조치의 내용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많은 법규들이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극히 일반적 추상적이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와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 관한 규칙 제3조에만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동행, 주거지역 순찰 등 구체적 신변안전조치를 예시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규정은 일반적 선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개인적 범죄라 할지라도, 범죄양상이 지능화 흉포화할수록 보복범죄도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질 것이다. 특히 치정관계 또는 해묵은 금전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처럼 당사자 사이에 극단적인 감정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객관적 양상이 비록 사소할지라도 갈등전개와 신고·고소를 둘러싼 원한이 깊어지고 보복의 위험성도 더욱 커진다. 그렇지만 경찰이 모든 경우에 보복 우려 있는 피해자(또는 신고자)를 24시간 경호하거나 그 주변을 완벽하게 감시해 줄 수는 없다. 그리하여 드물게나마 보복범죄가 실현되고 나면, - 규정에 따라 복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경찰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피해자 등의 비난과 불만이 급등하곤 하는 것이다.

보다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현실적인 신변안전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현재의 법제도와 예산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한 획기적 결심’은 공론(空論)에 불과하다. 경찰은 (단기적인

홍보효과를 위한 미봉책을 제시하지 말고) 이사·전직·개명(改名)·긴급통보용 휴대전화 대여·경찰관서와의 긴급연락망 구축·이웃 주민의 감시체제 구축 등, 실천 가능한 신변보호조치들을 법제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긴급통보장치’를 대여해 주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청이나 통신내용의 녹음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경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윈터치 신고용 휴대전화 기증운동을 벌여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기증받은 전화를 대여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경보를 보낼 수 있는 팔찌를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휴대한 경보장치에 GPS 기능을 장착함으로써 피해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탐지해 내는 위기경보시스템(panic alarm system)도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⁸⁵⁾

2) 신변안전조치를 위한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의 의미

피해자의 신변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다른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그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피해자 또는 신고인 등이 신변의 위험을 호소해 올 경우에, 수사기관은 제반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실제적인 위험의 존재여부를 즉각 판단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관련된 범죄의 종류와 경중, 행위자의 전과관계, 행위자의 위험성 정도, 행위자의 환경, 수사 및 공판의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신변위험에 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⁸⁶⁾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피해자가 위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과대평가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해서도 아니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신변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징표들을 아무리 신중하게 검토하더라도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였더라도 적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신변

85) Roberts, Albert R., *Handbook of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Strategy*, Oxford, 2002, 116면.

86) 하태훈,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피해자학연구』, 1995, 115면; 안경옥, 독일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 『형사정책(제11호)』, 1999, 342면.

안전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요컨대,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의 존부, 정도와 긴급성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변의 위험성이란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육체적인 것 뿐 아니라 정신적 침해를 포함한다. 또한 반드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해(미래위험의 예견: future predictions) 뿐 아니라 현재 상존하는 위험(현존위험의 예견: concurrent predictions)도 포함된다.⁸⁷⁾ 예컨대,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미래위험 예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위한 경찰관의 위험성 평가는 ‘현존위험 예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범죄현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추가적인 위험이 현존하는지 혹은 장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황하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상황을 왜곡할 수도 있다. 어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기려 한다. 예컨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별 일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이런 예가 특히 많을 것이다). 이때 경찰이 위험의 존재여부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험성 평가의 오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위험이 존재하는데도 없는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잘못된 부정의 오류; false negative predictions)와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존재하는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잘못된 긍정의 오류; false positive predictions).⁸⁸⁾

(2) 위험성평가의 방법

누군가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을 호소하는 경우에, 사법기관은 우선 그 위험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지, 신고자의 주관에 의해 과장되거나 축소된 것은 아닌지 또는 현존하는 위험인지 장래 예견되는 위험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 때 피해자와 그가 처한 환경 등

87)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 Charles C Thomas Publisher, 2003, 75면.

88)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76면.

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주로 문제된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코크랜(Michael H. Corcoran)은 가해자의 위험성 예측을 위한 판단지표로 다음의 9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a)범인의 정신건강 기록 b)의학적 이상 소견의 유무 c)가족사항 d)대인관계 e)직장경력 f)폭력전과나 갈등상황 초래 경력 g)약물사용 경력 h)무기사용 경력 i)최근 혹은 현재의 사건이나 상황.⁸⁹⁾ 이러한 요소들을 각각 면밀히 분석, 종합하여 예컨대 (가) 위험성이 아주 적음 (나) 위험성의 정도가 보통임 (다) 위험성이 아주 높음 등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각 경우에 따라 유형화된 신변안전조치를 선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신변안전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코크랜의 아홉가지 평가지표는 대체로 초동수사 현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가해자가 확인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보한 이후라야 판단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초동수사 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위험성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미국 미시간주 랜싱지역에서 활동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민간기구 중의 하나인 CARE팀은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가해자의 과거 폭행 경력 등 위험성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약 17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후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표3-2>).

경찰도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표3-2>에 예시한 바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객관적 위험성 여부를 측정하는 방안을 구상해 봄직하다. 나아가, 여기서 조사된 위험성 판단 자료들을 수사자료로 관리하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범방지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은 범죄정보시스템(CIMS)이라는 범죄정보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CIMS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가해자의 범죄경력과 행적사항을 계속 저장하고 축적하여 유사시에 위험성 평가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89) Corcoran, Michael H. 외, *Violenc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CRC PRESS, 2003, 100~101면.

5. 의사소통의 기술

1) 피해자 면담과 의사소통

수사상의 ‘조사’란 면담과 신문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조사는 수사관이 대화를 주도한다면, 면담은 상호 수평적인 의사교환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현재의 수사실무에서 ‘피해자조사’라 함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되는 듯하다. 그렇지만 피해자 면담이란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범죄 관련사실에 관하여 자유롭게 질문하고 청취하는 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진술조서 작성을 전제한 것이 아니므로 장소, 시기 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현장 또는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가벼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하여 질의 응답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범죄수사규칙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는 피해자를 면담할 때의 태도와 자세 등이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범죄현장에서 임상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사법경찰관리규칙 19조),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그 사망에 대비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입회시키거나 검사에게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3조).

<표 3-2> 미국 미시간 주 CARE팀의 가정폭력사범 위험성 평가척도

질문 항목		답 변
1	가해자가 전에도 폭행한 일이 있나?	있다/없다
2	만일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가해자의 이번 폭행이 지난번 보다 심각한가?	그렇다/아니다/해당 없음/질문하지 않았음
3	가해자가 얼마나 자주 폭행을 하는가?	전에 폭행하지 않았음/전에 딱 한번/한달에 한번 이하/한달에 한번 정도/일주일에 한번 정도/일주일에 2-3번/거의 매일/해당없음/질문하지 않았음/기타
4	가해자가 최초로 상해를 가한 시기는?	____년__월 / 처음임 / 질문하지 않았음
5	가해자가 당신 혹은 친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있다(누구에 대하여?____) / 없다 / 질문하지 않았음
6	가해자가 당신에게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일이 있는가?	떠밀었음/뺨을 때림/주먹으로 때림/목을 조임/발로 찰/물어뜯음/귀찮고 성가시게 함/콧속 찌름/물건으로 때림/신체활동을 제한함/강제적 성교/무기로 협박함 옷을 찢음/기타/해당없음/질문하지 않았음
7	다음 항목 중 누군가의 면전에서 폭행한 일이 있는가?	친척들/경찰/아이들/이웃들/친구들/모르는 사람들/기타/다른 사람 앞에서는 폭행하지 않음/질문하지 않았음
8	폭행으로 인해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일이 있는가?	찰과상/타박상/이가 깨지거나 흔들리거나 빠짐/뼈가 뺨/골절/피하출혈/화상/유산 등 임신과 관련된 문제 발생/성병감염/기타/칼로 인한 상처 혹은 총상/상해를 입지 않음/질문하지 않았음
9	폭행으로 인해 당신이나 가족구성원이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일이 있는가?	피해자/가족구성원/둘다/없음/질문하지 않았음
0	가해자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행동시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질문하지 않았음 / 해당없음
1	가해자가 알콜이나 약물을 사용하거나 남용하고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불확실함 / 질문하지 않았음
2	가해자가 권총이나 소총, 연총 등을 소지하거나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불확실함 / 질문하지 않았음
3	가해자가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불확실함 / 질문하지 않았음
4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경찰과 접촉하였는가?	__회
5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를 체포하였는가?	출동시마다 체포/체포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였음 체포된 일 없음/질문하지 않았음/모름/기타/해당없음
6	가해자가 체포되었다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는가?	체포때마다 기소/기소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였음 기소되지 않았음 / 기타 / 질문하지 않음 / 해당없음
7	가해자가 기소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았는가?	집행유예/교도소수감/다른 범죄로 수감/상담치료/다른 이유로 상담치료/모름/해당없음/질문하지 않았음

* 출처 : 미국 미시간 주 랜싱지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기구인 CARE팀의 CARE ASSESSMENT FORM을 번역하여 표로 구성한 것임

피해자면담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진술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교감하고 친밀감과 신뢰감에 기초한 활발한 의사소통이야말로 ‘면담’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수사경찰관이 피해자와 교감하고 신뢰감을 준다면 제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훨씬 정확한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몽타주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친밀감이 형성되고 나면, 피해자의 범인인상착의 회상율과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한다.⁹⁰⁾

그렇지만 사실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술이 피해자조사에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공사(公私)를 막론한 모든 생활관계에 있어서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수사경찰관은 피해자조사 뿐 아니라, 피의자조사와 참고인조사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한다. 범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으박지르기보다,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그 마음을 열도록 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진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수사관이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수사업무도 보다 정교해져야만 한다. 이제는 용감하고 유능한 ‘더티 해리(dirty Harry)’⁹¹⁾ 아니라, 서비스지향의 상냥하고도 유능한 수사관이 더 필요하다.

그 밖에 수사경찰관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에서도 가족과의 의사소통, 상사 또는 부하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은 공사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평생 지속해야 할 “생애의 프로젝트”인 것이다.

- ① 말하기와 글쓰기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효율적인 대화능력과 문장력은 유능한 전문가의 필수덕목이다. 승진하고 싶다면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조직화하고, 자기 의견을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함양하라. 으박지르지 말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심복하도록 하라.⁹²⁾
- ② 의사소통의 기술은 잠재적 위험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제1차적 방어수단이다.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화법은 수사경찰관의 전문적 인상을 강화하고, 그 권위를 기초

90) 2003년12월8일 경찰청 수사국이 실시한 일일 수사전문가 교육과정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의 몽타주작성 전문가 박만수 경위로부터 청취한 경험담이다.

91) 1970년대 미국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영화 제목이다. 강력계 형사 해리(Harry)의 무용담을 그린 3부작이 크게 히트했다.

92) Reynolds, Jean, *Police Talk*, Prentice Hall, 2002, 1면.

지우며, 상대방의 협조를 촉진한다. 수사관의 문제해결 기술은 당면한 긴장상황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자신과 폭력에 직면한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⁹³⁾

2) 의사소통의 가이드라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리로 이해하여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의사소통의 기술이란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을 의미한다.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하며, 그의 입장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우선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⁹⁴⁾ 뒤이어 청취의 기술과 감수성 개발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1) 한마디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언어의 위력).

단정하고 예의바른 화법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의사를 촉발한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예의바르고 정중한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을 삼가라.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거나 허세 부리는 등 사술(詐術)을 동원하거나 권한을 과시하여 협박한다면 상대는 분노와 불신에 휩싸이게 된다. 두려움, 열등감 또는 분노를 촉발시키는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이며 비협조적으로 만든다.

(3) 태도에 주의하라.

수사관이 상대방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시선접촉을 유지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문가다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는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대방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⁹⁵⁾ 상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면 우선 자

93) Reynolds, J., *Police Talk*(前註92), 2~3면.

94) Reynolds, J., *Police Talk*(前註92), 4~7면.

95)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32면.

신의 몸높이를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예컨대, 상대가 앉아 있다면 수사관도 선 채로 이야기하지 말고 앉거나 상체를 구부려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야 할 상황이라면 상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최대한 접근하면서 대화를 시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수사관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4) 긴장국면에서는 강제력을 발동하기 전에 협조적 상황을 조성하라.

예컨대, 수사관이 다툼을 벌이거나 분개해 있는 다수인 사이에 개입하여야 할 경우에, 수사관의 처신은 그 자신의 안전이나 직무완수 또는 분쟁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관이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 긴장을 완화하고 시간을 끌어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인내와 예의바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갈등국면의 대처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⁹⁶⁾ 첫째, 통제 및 강압에 의한 대처방법(control and suppression model)이다. 폭력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한다든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갈등을 무시하는 방법(ignoring model)이다. 현존하는 갈등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대처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가정폭력을 사생활 문제로 치부하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셋째, 후퇴방식(withdrawal model)이다.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소극적이면서 갈등해결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태도이다. 최악의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문제해결을 통한 대처방법(problem solving model)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갈등해소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후퇴모델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 모델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지역사회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찰활동 모델은 ‘문제해결을 통한 갈등해소방법’에 가깝다 할 것이다.⁹⁷⁾

96)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54~57면.

97) 범죄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로 보고 지역공동체가 이 문제에 공동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라고도 한다.

(5) 문제해결에 적합한 언어구사 능력을 함양하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여 말을 건네면 상대방도 그 상황을 재평가할 여유를 찾고 협조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는 대체로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씨, 경찰관에게 저항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서 죄가 무거워집니다.”라고 경고하면 상대방이 상황을 재인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격앙되어 있거나 정신이 산만한 상대라면 말하는 중간 중간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해 보는 것도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하고 명쾌한 어조로 반복하여 알려주는 것도 사태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제된 사안과 직접 관련된 질문을 피하고 몇 개의 일반적 질문, 예컨대 자녀의 이름과 나이 기타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6)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에 관해 설명하라.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수사절차에 관하여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피의자·피해자 또는 참고인 등의 신뢰감과 협력의식을 증진시킨다. 복잡한 설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는 지금 지원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또는 “압수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 압수물에 꼬리표를 붙이는 중입니다”처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어도 좋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형사절차 진행과정, 피해자의 권리 또는 피해구제제도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수사관을 신뢰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성급한 판단이나 과잉대응을 자제하라.

(8)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를 배려하라.

보통 이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도 범죄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거나 기억력의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현장에서는 가능한 한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를 대할 때는

특히 프라이버시와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범죄수사에 임하는 수사관들은 무의식중에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어조로 사람을 대하기 쉽지만, 피해자나 목격자들을 대할 때는 특별히 주의하여 침착하고도 공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처절한 고통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며 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예컨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지하면서 “기분이 어떨지 잘 압니다” “세월이 약입니다”는 따위의 무책임한 위로를 던지는 것은 금물이다. 강간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액땀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찌고 하는 것은 상대의 분노를 깊게 할 뿐이다. 참고로,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공공안전국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사망 통지요령을 다음 페이지에 소개한다(<표3-3>).⁹⁸⁾

(10) 자신과 경찰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도록 처신하라.

수사관이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피해자나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문제된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민사분쟁에 불과하더라도, 우리 관할사건이 아니라거나,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소극적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 배신감이나 분노를 야기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을 안내하거나, 상황을 알아듣게 설명하고 그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당부하는 식의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3) 진술청취와 면담의 기술

많은 수사관들이 청취(listening)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해결이라는 적극적 목표를 지닌 수사관으로서의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강력한 어조로 질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관련 문헌이 강조하듯이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하기보다는 들어야 한다.

98) Moriarty, L. J., *Policing and Victims*(前註33), 30~31면.

청취의 기술을 익히려면 부단히 연습하고 집중력을 길러야 한다. 상대의 발언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잘 들어준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수사관의 전문적 역량이 돋보이고, 보다 훌륭한 보고서(조서)를 산출할 수 있게 되며, 사건의 조기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⁹⁹⁾

<표 3-3> 사망사실 통지요령 예시

권장되는 사망사실 통지방법	금지되는 사망사실 통지방법
<p>사망통지 실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 상대가 틀리지 않았는지 거듭 확인하라. • 소환하지 말고 집으로 찾아가라. • 시의적절한 예절을 갖추어 통지하라. • 최대한 빨리 피해자 지원단체를 연결해주라. •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두 대의 자동차로 가라. • 신분증을 제시하라; 들어가도 좋은지 양해를 구하라. • 앉아도 좋은지 허락받은 후 앉아서 통지하라. 가장 가까운 근친을 확인하라 (피해자의 할머니를 향해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안된다는 취지 -譯註) • (동정심을 가지고) 간단하고도 직접적인 표현으로 통지하라. • 모든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하라. • 알려줄 정보가 기록된 서면자료를 준비해가라(피해자안내서 등 -譯註). • 만일 사체의 신원확인이 필요하면, 운송수단을 준비해가라. 	<p>해서는 안되는 말: 사려없고 잔재하는 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분이 어떻지 잘 압니다. • 시간이 약입니다. • 틀림없이 이겨내실 겁니다. • 산 사람은 살아야죠. •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 • 소중한 추억을 잊지마세요. • 돌아가신 분이 살아 올 수는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 어찌고 하는 상투적인 말들. • 아직 다른 아이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p>해서는 안되는 말: 힘 빠지게 만드는 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 그건 말 할 수 없습니다. • 모르셔도 됩니다.
<p>어떻게 말할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말 유감입니다. • 정말 견디기 어려우실 줄 압니다. •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통곡하거나 광란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등의 취지 -譯註) •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일은 없으신가요? •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해 드릴 일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출처 : South Carolina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1999.

99) Reynolds, J., *Police Talk*(前註92), 31면 ; 위기개입자(crisis intervener) 등의 청취기술에 관하여는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34면 이하도 참조.

(1) 성공적 면담을 위한 조건

① 준비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방이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관 조사대상자의 눈높이가 같아지도록 의자를 준비하고, ‘상호신뢰와 이해(rapport)’ 증진에 지장을 초래할 요소는 제거한다.¹⁰⁰⁾ 현장에서의 피해자조사라면 예컨대 어수선한 사건현장 또는 구경꾼이나 통행인의 시야에 노출된 곳에 서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현장을 벗어나 최대한 안정된 장소를 물색하고, 가능하다면 앉아서 이야기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수사관과 피해자 사이에 출입문이나 가구 또는 나무 등이 놓여있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외에, 면담상대와의 신뢰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라포(rapport)는 쌍방의 상호신뢰를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대화상대와 상호신뢰, 조화 및 친밀감과 일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 즉 서로 마음이 통하여 무슨 일이든 상의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서 심리상담 분야에서 특히 중시된다.¹⁰¹⁾ 물론, 범죄현장에 출동한 수사경찰관이 조사대상 피해자와의 라포를 형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피해자조사와 심리상담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지만, 심리상담 기법이 조사와 면담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피해자보호 담당 경찰관(서포터)은 심리상담의 기초적 기술을 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담대상과의 라포형성을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심리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범죄피해자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담자는 상담대상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대(needs)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¹⁰²⁾ a) 상담대상은 (그저 그런 사람 중 한명이 아니라) 독특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한 개인으로 취급받기를 원한다. b) 상담대상은 부정적 느낌과 긍정적 느낌 모두를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해지기를 원한다. c) 상담대상은 공감과 이해(감정이입을 통한 이해)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는 느낌에 대한 감응을 원한다.

100) Reynolds, J., *Police Talk*(前註92), 32면.

101)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39면 참조.

102)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39면

d) 상담대상은, 자신의 개인적 문제나 지난날의 실패와 관계없이,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e) 상담대상은 자신을 심판하려 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싶어 한다. f) 상담대상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판단을 내리고 싶어한다. g) 상담대상은 비밀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범죄피해자의 기대도,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심리상담 수요자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피해자를 면담하는 수사경찰관은 피해자가 지녔을 위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면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

② 집중

수사관은 조사대상자의 감정변화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집중력은 연습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영화 또는 TV쇼를 보거나 남들의 대화를 들은 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몰입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유익하다.¹⁰³⁾

③ 대화의 핵심 파악

면담상대가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횡설수설하는 등, 그 진술에 두서가 없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발언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범죄현장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피의자·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은 대부분 그 진술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수사관은, 자신이 현장에서 획득한 제반 정보와 그들의 진술내용을 비교하고 적정한 질문을 던지면서 진술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수사상황 기록노트를 피해자, 목격자, 피의자, 증거관계, 현장 상황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현장에서 면담하고 관찰한 내용을 기입한 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중립성

수사관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상대방부터 청취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대의 진술을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집된 정보의 허실

103) 이하, Reynolds, J., *Police Talk*(前註92), 32~39면을 요약함.

(虛實)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수사관은 종교관·세계관 또는 교육관의 차이, 조사대상의 연령·생활방식·전력(前歷) 등에 기초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청취하였거나 현재 청취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상대에게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상대방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꼬덕거림이나 상대방의 진술 중간 중간에 “예” “예” 하며 단발적인 대답을 반복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판단을 확인받기 위한 유도질문이 오류를 낳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⑤ 정확성

수사상 면담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면담 대상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그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면담이 두 번째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혹시 질문이나 기록이 필요하더라도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있는 모순점이나 다른 정보와의 차이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의 성명이나 주소 기타 기본적 정보를 기록할 필요도 있다. 다만, 한번에 모든 정보를 얻으려는 듯 무리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금물이다.

⑥ 혼합된 메시지의 해독

진술자는 때로 언어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와 모순되는 거동(non-verbal language, body language)을 통해 내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예컨대,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가정불화일 뿐 자신의 남편은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눈 속에는 근심과 공포가 서려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사관은 면담상대의 언어적 메시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거동이나 표정 속에서 확인되는 메시지를 종합하여 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⑦ 면담 종료

너무 갑작스럽게 면담을 종결해서는 아니된다. 서서히 면담을 종결하면서 추가적인 정보의 존재여부를 탐색하다보면 뜻밖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차후에 다시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끝까지 친절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두는 것이 좋다.

(2) 감수성 개발

피해자와의 사이에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할 능력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피해자도 또한 수사경찰관이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관으로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인종, 사회적 지위, 윤리적 태도, 종교, 나이, 성별,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등, 특별한 보호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하다. 요컨대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찰공무원이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시민 일반의 감정적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¹⁰⁴⁾ 이것은 심리학에 관한 기본적 학습 및 역할극을 포함한 체계적 실습을 요하므로 여기서는 상대방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간단히 소개해 두기로 한다.

① 몸짓(body language)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더라도, 거동만으로 상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때로는 언어적 방법보다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감정이 훨씬 정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다.¹⁰⁵⁾

효과적인 눈맞춤은 신뢰구축의 첫걸음이다. 눈은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기도 하고 대화를 평가하거나 끝내는 역할도 한다.¹⁰⁶⁾ 상대를 노려보지는 말되, 이야기할 때에는 상대를 직접 바라보고 말해야 한다. 가능한 한 상대방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누워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의자를

104) Reynolds, J., *Police Talk*(前註92), 40면.

105)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32면.

106)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32면.

당겨 앉도록 한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앉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고, 아동과 이야기할 때에는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¹⁰⁷⁾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모두 지닐 수 있다. 성적인 오해를 부르거나 강제력을 발동하려는 것으로 비쳐질만한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과 접촉할 때에는 편안하게 악수를 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검거나 외모가 특이하게 보이는 외국인근로자 등은 사람들이 자신들과의 신체적 접촉을 회피한다고 생각되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AIDS)일지라도 태연한 자세로 악수하는 것이 좋다(후천성면역결핍증은 단순한 신체접촉으로는 절대 전염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접촉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휠체어를 밀거나 치울 때는 반드시 먼저 물어 보아야 한다. 맹인이나 환자를 돕기 위해 팔을 잡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부축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¹⁰⁸⁾

그 밖의 동작(body movement)에도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 팔이나 다리를 꼬는 행동들은 방어성을 표현하는 반면, 손을 펴고 팔과 다리를 완화시키는 행동들은 개방성을 상징한다. 대체로 대화의 상대방이 좋아하는 자세는 다음과 같다: 대화하는 동안 몸을 앞으로 내미는 것. 얼굴과 몸을 똑바로 상대에 향하는 것. 개방된 몸짓을 보이는 것. 긍정하듯 머리를 끄덕이는 것. 몸을 적당히 움직이거나 제스처를 쓰는 것.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것. 몸의 긴장을 풀고 있는 모습. 미소 등이다. 반면, 대화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자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몸의 방향이 상대를 향해 있지 않은 것. 상대를 바로 보지 않는 것. 시선접촉이 유지되지 않는 것. 눈동자를 굴리는 것.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 몸이 경직되어 있는 것. 시선의 초점이 없는 것.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긴장되어 있는 것 등이다.¹⁰⁹⁾

107) Reynolds, J., *Police Talk*(前註92), 40면.

108) Reynolds, J., *Police Talk*(前註92), 40면.

109)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33면.

② 말하기(verbal language)

언어는 일상생활의 기본도구에 속한다. 말의 위력은 크다. 반드시 사려 깊게 사용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적절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상대를 비하하거나 불쾌하게 할 말, 또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다른 장애인을 “그 절름발이가...”라고 칭하는 것은 상대를 직접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 다리 저는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아마도 대화가 더 잘 풀릴 것이다.¹¹⁰⁾

그 밖에 어떤 경우에도 비속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 한국의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명실상부한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경찰에 대해 더 높은 전문성과 정교한 직무집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저속한 언어 사용은 해당 경찰관의 전문가로서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전체경찰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 또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현장에서는 조속한 사건해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6. 정보제공

1)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와 실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간 내에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는 무력감에서 탈출하거나 자기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건처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제258조, 제259조)·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제15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4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범죄수사규칙(제66조)·범죄피해자보호규칙(제11조) 등 다수의 법규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인 등에게 사건처리의 중간통지·처리결과 및

110) Reynolds, J., *Police Talk*(前註92), 42~44면.

불기소처분의 이유 등을 통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 밖에도 피의자의 체포, 구속, 구속적부심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등 피해의 석방에 관한 사실, 기소여부, 기소된 법원의 명칭과 주소 등 피해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반 정보의 제공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최근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11조와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3을 통하여 피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수사진행 상황의 통지의무를 명문화하였다. 경찰수사관서에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피해자가 아니라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범죄수사규칙 제66조에 따라 처리지연 및 사건이송에 따른 중간통지, 최종 처리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경찰관서에서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민원인은 해당 경찰관서 및 그 감독관청인 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처리지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의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동시행령 제50조). 민원인의 시정요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동시행령 제58조)에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익(訴益)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이러한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민원인들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모를뿐더러,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2) 경찰의 정보제공업무 추진체계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의 피해자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a)이상에서 설명한 피해자보호업무를 각종 직무규정에 명시하고 b)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시행세칙 또는 직무지침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한편 c)직무내용별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명확히 한 다음 d)당해 직무집행에 관한 공과(功過)에 대해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보제공 대상범죄와 제공해야 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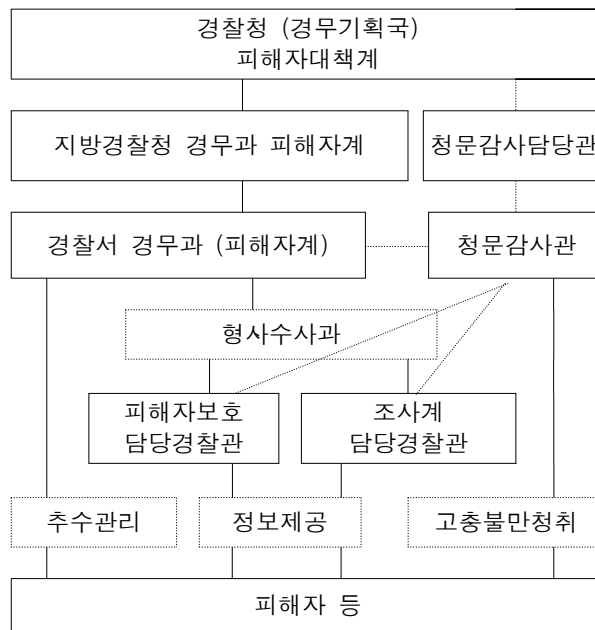
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여기서는 피해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책임부서 및 담당자, 정보제공의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한다.

피해자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체계에 대하여는 앞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표2-7>).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동일한 직무집행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제1차적 정보제공업무

초동수사와 본격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건담당 경찰관이 전담한다. 형사과 담당사건에 관하여는 - 과장지휘 하에 - 형사팀별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서포터)’이 담당사건 피해자 보호 및 정보제공업무를 맡는다. 다수의 형사팀이 관련된 경우에는, 각팀의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 중에서 형사과장이 지명하는 자가 해당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전담한다.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조사계) 및 교통과의 교통사고조사계(특히 이른바 ‘뺑소니전담반’)의 경우는 각 계·과장의 지휘 아래 사건담당 경찰관(또는 담당경찰관 중 1인)이 피해자보호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¹¹¹⁾

<그림 3-3> 경찰의 정보제공체계



이들은,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피해자계와 연계하여, 수사절차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제공을 포함한- 제반의 피해자보호조치를 전담하고 피해자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111)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조사계) 담당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정범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범죄사건(특히 수사) 및 경미한 폭력사범에 관한 남소(濫訴)로 인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담당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제반 기록을 경찰서 피해자계에 이첩하여 관련기록을 종합관리하고, 추수관리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2차적 정보제공업무

경찰서 피해자계는 각 관서별 피해자보호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소속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업무에 관한 교육·평가를 실시하며, 각 팀별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과의 협조 아래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종합·조율한다.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의 지원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조언 등을 제공한다. 수사가 일단락된 후에는 피해자관련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하고 담당경찰관과의 협의,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등을 거쳐 추수(追隨) 관리의 필요성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첫째 지방청별로 설치된 피해자지원 민간단체협의회(소속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상담·치료·보호를 요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민간조직 등의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당 피해자의 기록에 피해자 대책 종결의 취지를 기록하고 관련서류에 대한 보존조치를 취한다.

둘째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희망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검찰의 사건처리 절차, 재판 절차 및 형집행절차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이 경우 경찰은 검찰과 법원에서의 처리결과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검찰 및 법원 등의 '정보제공'업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찰에 의한 정보제공의 한계와 예상되는 어려움(문제점) 등을 피해자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만일 궁금한 점이나 고충이 있다면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 및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해달라는 취지를 밝혀둘 필요가 있다.

(3) 정보제공업무에 대한 감독·보완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부서는 범죄피해자의 고충과 불만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경찰관의 관련 규정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관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업무에 관한 감독도 역시 그 직무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3) 제공되어야 할 정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형사절차진행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1) 신고접수와 정보제공

신고접수시 가장 중요한 일은 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른 시간 내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다. 피해자가 매우 당황했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가령 도움이 될 만한 것일지라도) 접수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거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접수를 지연시키거나 사건처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다.

- ① 신고접수의 전후에 반드시 접수자의 소속과 성명을 상대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알려준다.
- ② 신고자에게 접수사실을 명확히 고지한다: 전화신고의 경우에는 “모월 모일 모시에 경사 김○○가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방문신고인 경우에는 기본적 사항을 기재한 신고접수증을 발부한다.
- ③ 경찰의 조치를 고지한다: 이미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든가 또는 몇분 내에 출동할 것이라는 사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예상 소요시간 등.

<표 3-4> 절차진행 단계별 정보제공

절 차	통 지 내 용	담 당 자
• 신고접수	피해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제공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 (피해자서포터) 조사계 담당경찰관
• 현장출동(피해자접촉)	피해자안내서 교부 / 정보제공 필요성 확인	
• 수사	수사상황의 통지	
• 피의자검거	피의자 검거사실 통지	
• 피의자 등 조사	조사상황 통지	
• 송치	송치결과 통지	
• 검사의 사건처리	사건처리 결과확인 및 통지	경찰서 피해자계 (확인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고지해 둠)
• 재판	재판의 진행경과 통지	
• 판결선고 및 확정	재판결과 통지	
• 형집행/ 석방	형집행 상황, 석방여부 통지	

(2) 피해자와의 최초 접촉과 정보제공

임검범(臨檢犯)의 경우에는 통상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처음으로 피해자를 접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를 언제 처음 접하든, 최초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경찰관은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피해자의 상태와 조사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피해자와 헤어질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 ①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은 맨 처음에 반드시 자신의 소속, 계급, 성명 및 담당한 직무(예컨대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한 어조로 밝혀야 한다. 이것은 단지 피해자보호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2년 보고서’에서도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예절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찰관이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의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하는 비접합에서 발로한- 잔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자신과 직무에 대해 긍지를 가진 자가 어째서 제 이름을 순식간에 입안에서 웅얼거리고 만다는 말인가. 경찰교육기관은 모든 경찰관에 대해 적어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예절을 교육해야 한다.

- ② 자신의 명함을 첨부한 피해자안내서를 교부한다(<그림3-4>).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만 달랑 적힌 ‘건방진 명함’이 아니라, **소속과 계급, 언제든 통화 가능한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명함이라야 한다.
- ③ 피해자안내서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의 권리, 향후에 진행될 형사절차,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단체의 명칭과 연락방법, 해당 피해자가 그 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가능성과 방법** 등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 ④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든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혀둔다. 이 때 연락가능한 시간대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관의 사생활도 존중되어야 하고, 그는 다른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피해자가 사건처리 및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 바라는지 확인하고, 그 대답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 반드시 기록해 둔다.
- ⑥ 문제된 사건의 종류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신변안전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108면이하).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경찰의 보호를 바라는지 확인하고, 경찰이 취할 조치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개략적으로 알려 준다.
- ⑦ 그 밖에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바라는 바를 분명히 물어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원하는 바를 물어 기록해 둔다.

<그림 3-4> 피해자안내서 예시

<앞면>	<뒷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께 </div> <p>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 • 사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hr/> <p>경찰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피해자계전화)</p> <hr/> <p>형사사건처리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 5px 0;"></div> <p style="text-align: center;">(형사절차를 가능한 한 쉽고 단순하게 도식화)</p> <hr/> <p>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뒷면에 표시된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과 상의해 주십시오.</p> <hr/>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경찰서 피해자계</p>	<p>만일 원하신다면 경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hr/>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경찰청의 '민간단체협의회' 대표단체) • 대표적 피해자지원단체 명칭과 연락처 • • • </div> <hr/> <p>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hr/>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일반적인 지원내용을 간략히... • • • </div> <hr/>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의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입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 style="font-size: 1.5em;">(명함첨부)</p> </div> <hr/> <p>경찰의 직무수행에 의문이나 불만이 있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즉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p> <p>○○○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전화) 02-000-000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전화)</p>

※크기: 10cm×20cm / 양면 인쇄 (잘 구겨지지 않을 만큼 두꺼운 종이)
 ※내용은 가능한 한 간단하고 쉽게 풀어쓰다.
 ※천숙하게 읽을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 명료한 색상을 사용한다.

(3) 수사 진행과정에서의 정보제공

①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정보

피해자에게 수사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가능한 한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통지한다.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은 정보제공을 희망한 피해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모두에게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씩은 수사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전화로도 충분하다.

미제사건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진심어린 유감을 표시한 다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한다.

② 피의자에 대한 정보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정보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포함된다. 피의자의 체포·구속, 석방에 관한 정보는 즉시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와 연락할 때는 매번 피의자가 체포되었는지의 여부를 통지하고, 피의자가 체포·구속 또는 석방되었다면 즉시 그 사실을 알려준다.

피의자는 범인으로 의심받는 자라는 사실, 재판을 통해 유죄로 확인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사실 등을 함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때 피의자의 성명과 연령 등을 알려주는 것은 좋으나, 그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 숙고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분을 밝히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년사건 피의자(형법법규 위반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소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성명을 대신 알려준다. 가해소년 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그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성의를 보인다면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송치단계의 정보제공

경찰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때에는 그 사실과 그 후의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한다. 그 내용은 송치일시,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 담당검사와 그 전화번호 그리고 경찰의 의견(송치의견) 등이다. 만일 경찰관이 사건 담당검사를 알지 못

한다면 확인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5) 송치이후의 정보제공

경찰은 가능한 한 송치이후의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찰로서는 통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검찰이나 법원이 스스로의 직무집행 상황을 일일이 경찰에 통지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치이후의 통지업무까지 ‘경찰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검찰도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송치이후의 통지업무는 검찰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송치사실을 통지할 때에, 검찰과 법원에서의 사건처리 및 행형에 대하여는 경찰이 즉시 알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때 “경찰이 피의자의 석방 등에 관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때에는 즉시 통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검찰에서 먼저 통지받는 경우에 경찰에 대해 문의 또는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는 취지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제4절 경찰의 위기개입: 가능성과 활용범위

1. 위기개입이론

1) 위기(crisis)

‘위기’란 일반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중요한 삶의 목적에 장애가 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익혀 온 문제해결 기제(mechanism)가 어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위기상황이다.¹¹²⁾ 예컨대 평생 해로(偕老)한 배우자가 급사(急死)하는 것과 같은

112) Calpan, *An approach to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Grune & Statraton, 1961, 8면;

혼란 상태에 직면하여, 삶의 목적이 좌절되고 스트레스에의 대응능력이 심각하게 붕괴됨으로써 공포·충격 또는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그것이다.¹¹³⁾ 위기상황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거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위기적 사건(hazardous or critical event)의 존재. 둘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약성과 연결된 본능적 욕구에 대한 위협. 셋째, 위기상황을 극복할 적절한 방법(또는 능력)의 결여.¹¹⁴⁾

위기의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요소를 지니고 있다.¹¹⁵⁾

- a) 근심과 스트레스는 위기적 사건(critical event)에 의해 야기 또는 수반된다.
- b) 위기적 사건은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 c) 위기적 사건은 단일한 것일 수도 있고, 복수의 사건일 수도 있다. 예컨대, 어떤 여성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까지 남편의 반복적 학대를 견뎌내었다면 다수의 위기적 사건이 누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d) 위기적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스스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된다.
- e) 압도적인 스트레스와 그것을 적절히 극복하지 못한 결과, 부적응의 행동양식이 발생한다.
- f) 위기는 관성을 획득하여 더욱 상승하고 개성파괴가 발생한다.
- g)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위기가 뒤이어 발생할 여지가 높아진다.

물론, 위기가 반드시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위기는 위협을 내포하지만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란 정신적으로 병적 상태에 빠진

Belkin, *Introduction to counseling*, Dubuque, IA: William C Brown. 1984. 424면.

113) Brammer, *The helping relationship: Process and skills(3rd ed)*,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1985, 94면.

114)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11면.

115)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11~12면.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위기적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보이는) 슬픔, 분노, 혼란 및 걱정은 위기적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반응일 뿐이다.¹¹⁶⁾ 따라서 그는 머지않아 스스로 심리적 균형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어떤 피해자들은 심리적 균형이 무너진 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빠져 버릴 수도 있다.

아무튼 위기발생의 초기는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피해자는 강력한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위기극복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절실하다. 시기의 제한이 바로 위기이론의 핵심이다. 즉, 피해자가 회복되는가 아니면 회복에 실패하고 마는가는 위기발생 초기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초기의 몇 주 혹은 몇 달 사이에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핵심적 기회가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¹¹⁷⁾

2)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위기개입이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극복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활관계에 개입하는 것이다. 즉,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개입의 방법과 목적은 전통적인 심리치료 또는 정신병치료 등과 유사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¹¹⁸⁾

(1) 위기개입과 심리치료 및 단기상담

위기개입의 방법은 심리치료 및 단기상담(카운슬링)과 비슷하다. 그러나:

- ① 위기개입의 목표는 위기피해자가 종전 수준의 기능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길을 찾아내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상담이나 심리치료와는 다소 다른 위기개입 고유의 방법들이 활용된다.
- ② 위기개입은 현재, 즉 지금 여기에 있는 위기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장기상담, 특

116)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13면.

117)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12면.

118) 이하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15~20면. ‘위기개입이론’에 대한 유형적 분석은 한인영 외, 『위기개입』, 나눔의 집, 2002, 26~29면을 참조하라.

히 심리치료는 과거의 문제와 그것이 상담대상(환자)의 현재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

- ③ 위개개입은 개입자(intervener)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다른 치료기술들은 통상 보다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은 접근을 활용한다.

요컨대, 위기개입은 단순하며 즉시적이고 단기간에 걸쳐 행해지며 대증적(對症的)이다. 따라서 고질적인 심리적 문제의 규명에 천착하지 않지만, 그 기술과 방법은 심리치료 또는 상담과 유사하다.

(2) 위기개입과 응급정신의학

위기개입은 응급정신의학과도 구별된다. 응급정신의학은 “의학의 한분과로서 심각한 정신적 혹은 감정적 불안정이나 기능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급성행동장애를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과이다.” 위기개입도 응급정신의학에서 활용되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신의학적 응급상황들은 대체로 약물 과/또는 입원가료를 요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위기개입은 형사사법실무자, 사회복지 활동가(복지서비스 전문가) 또는 긴급전화상담 자원봉사자 등에 의해서도 실시되지만, 응급정신의학은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하여 행해진다,

(3) 심리적 응급구호와 위기치료

심리적 응급구호는 심리적 위기상황에 대한 제1차적 개입(first-order interven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처치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지향적 개입이다. 그 목표는 심리적 위기극복의 기제를 즉시 재건하도록 지원하고 그 위기가 치명적으로 발전할 위험을 감소시키며 피해자를 지원조직에 연결해 주는 것 등이다. 이 과정은 수분에서 수시간 사이에 이루어진다.

반면, 위기치료는 심리적 위기상황에 제2차적 개입(second-order intervention)으로서 상담전문가에 의한 피해자(사람) 지향적 개입이다. 그 목표는 위기적 사건(crisis event)

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상황의 해결이다.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위기치료요법은 장기상담 및 치료적 접근과 유사하다.

(4) 위기개입과 재해발생 후 스트레스 보고

위기발생 후 스트레스 보고(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는 본질적으로 위기개입과 동일하다. 전형적 의미에서의 위기발생 후 스트레스 보고란 응급상황에서 일하는 사람(emergency worker)들에 대한 개입을 의미한다. 그들은 폭발·교내총기사건·인질사건·자연재해·기타 치명적 재해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지원하려는 스스로의 노력 때문에, 위기에 빠질 위험에 노출된다. 경찰관에게는 물리력, 특히 치명적 물리력의 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이, (위기상황인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하며, 경우에 따라 개입을 필요로 하는 ‘재해’(critical incidents)이다.¹¹⁹⁾

3) 위기개입이론의 발전과정

위기개입은 본래 자살방지를 위한 노력에서 유래하였는데, 초기의 자살방지 프로그램은 모두 성직자나 종교단체에 의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06년 뉴욕에서 워런(Harry M. Warren)이 『전국구명(求命)연맹(National Save-A-Life League)』을 창설하였고, 같은 해에 런던구세군도 『자살방지본부(Anti-Suicide Bureau)』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훈련된 자원봉사자와 실습생들에게 의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 후 자원봉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진 결과, 일부 위기개입프로그램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19) CISD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치료과정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표현이다. CISD는 다양한 구성으로, 다양한 그룹에 대해서 실시된다. 때로는 CISD에 관한 기본 훈련을 거친 실무가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CISD의 절차는 대개 중개자와 그에 의해 리드되는 집단에 의해 진행된다. 외상성 사건(traumatic event) 직후에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들이 대상이다. 그룹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통상의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설명에 따라 자신들이 겪은 사건과 그 예후에 관한 경험을 발표하도록 권유받는다, 이 절차를 통해 그들은 조기개입, 카타르시스 및 심리적 외상 토로의 기회를 부여받으며, 그룹단위의 지원 및 치료대상자 상호간의 지원이 회복을 돕기 위한 치료적 요소로 작용한다(Hiley-Young, Bruce,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 Value and Limitations In Disaster Response; at, 미연방 보훈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국립 PTSD 센터 웹사이트(<http://www.ncptsd.va.gov/publications/cq/v4/n2/hiley-yo.html>)).

미국에서는 제2차 대전 후, 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에 대해 전문적인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재향군인관리국(Veterans Administration)」은 수천명의 제대 군인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정신건강)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46년 연방의회는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주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를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관한 법률(National Mental Health Act)」을 통과시켰다.¹²⁰⁾ 이후 약 20년 동안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종합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된 결과, 1963년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 관한 법률(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ct of 1963)」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각 지방별로 정부조직 및 민간조직에 의한 위기개입서비스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위기피해자들을 24시간 체제로 지원하는 '위기지원응급전화(crisis hotline)'가 다수 등장하여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 약물남용자 또는 개인적 문제를 지닌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¹²¹⁾ 이상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개입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연구 분야로서도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다. 이 분야에서의 발전은 대부분 지난 50년간 이루어졌다.¹²²⁾

2. 경찰의 위기개입: 필요성과 활용범위

1) 위기개입 전문가의 특성

위기개입 전문가(intervener)가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무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위기에 빠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120)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4면

121)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5면.

122)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6면.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여 평정심(平靜心)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또한 감정이입(empathy)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온정(warmth)과 진심(genuineness)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감정이입이란 객관적 시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의 심정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온정이란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한다. 진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면서 그 감정과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¹²³⁾

그렇다면 위기개입 전문가가 그에게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위해 그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치료적 기술을 통합할 줄 알아야 한다. 위기개입 전문가는 최상의 길을 찾기 위해 위기 피해자의 욕구와 상황적 특성에 맞추어 치료적 접근방식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¹²⁴⁾

2) 경찰 위기개입의 필요성과 범위

(1) 경찰 위기개입의 필요성

범죄현장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도 위기개입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뜻하지 않은 범죄피해 그 자체가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위기적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시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나아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진술을 요구받는 등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것도 또한 위기적 재난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수사에 임하는 경찰관이 위기상황에 대한 평가와 위기개입의 기술을 습득한다면 피해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거나(대

123)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18면.

124) Hendricks, James E., *Crisis Intervention*(前註87), 19면.

학시절 심리학을 전공하였다는 등의 사정) 또는 특별히 뛰어난 자질을 지닌 경찰관이라면 스스로 그 기술들을 깨우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관련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효과적이고도 적절하게 위기에 개입하지 못한다. 그들이 위기개입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향에서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심리학 및 정신의학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며, 잘 정비된 교육시스템 아래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2) 경찰 위기개입의 한계와 바람직한 위기개입 태세

그렇지만,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경찰관을 만사에 정통한 전문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외국인 범죄자(또는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을 ‘동시통역사’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경찰청은 2006년 중에 11명의 심리학 전공자를 특채하여 이들을 위기개입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사전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여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의 전문화교육을 거쳐 위기개입 전문가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찰관들은 그 직무영역에 따라 일반재직자 교육과정이나 심화교육과정의 피해자심리, 감수성훈련 등을 통하여 ‘위기피해자’ 대응 및 위기상황 평가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게 하면 족하다(<표4-22>). 모든 수사경찰관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건 현장에 임한 수사경찰관(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은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한 후, 스스로 보호 조사할 것인지, 다른 전문가 또는 의사에게 위탁하거나 그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그림3-2>).

요컨대,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위기개입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경찰관이 위기개입의 전문가로 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점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기개입이론’이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람에 대한 조기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앞서서도 충분히 밝혀둔 것처럼, 굳이 ‘위기개입’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은 종래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응급정신치료, 심리상담 또는 CISD 등 무엇이라고 칭하든 모두 비슷한 목표를 가진 심리치료프로그램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의 피해자대책과 관련하여 진정 중요한 일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충분한 실력을 갖춘 피해자 심리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심리학자는 아마도 그것이 바로 “위기개입전문가”라고 주장할 터이지만, 정신의학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은 단기적 성과나 전시효과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내실 있게 교육함으로써(제4장) 단 한명이라도 ‘진정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4장 경찰관 교육훈련

제1절 경찰인사와 교육훈련체제

1. 경찰인사제도

1) 교육훈련의 효율성 확보와 인사제도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그 임무를 완수할만한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해당 경찰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직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나위조차 없다. 우리 경찰도 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정비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구호와 선언(교육과 홍보) 만으로 조직원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행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육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일상의 직무집행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나도록 하려면, 합리적인 교육시스템과 적절한 강제수단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모두(冒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찰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찰 없이 범죄피해자대책에 관한 교육체제만을 구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범죄피해자대책에 관한 교육훈련도 결국 경찰교육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피해자대책에 관한 교육훈련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합리적 시스템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모든 경찰관이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교육훈련에 임하고 보다 높은 개인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승진제도는 모든 봉급생활자의 직무행태와 학습방향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피해자대책에 관한 교육시스템을 구상하기 전에 먼저, 교육의 효율성을 보장할 전제조건에 관한 검토가 불가결하다.

2) 인사제도 개관

(1) 경찰인사기관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용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경찰 인사관리도 경찰의 모든 인적 자원을 그 자격과 능력에 따라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함으로써 경찰조직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인사기관은 모든 경찰관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은 물론,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고 높은 사명감과 성취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¹²⁵⁾ 경찰인사행정에는 신규채용, 승진과 전보, 교육훈련, 평가, 포상 및 징계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데, 현행 조직편제상 경찰인사 업무는 경찰청 경무기획국 인사과에서 관장하고 교육훈련은 경찰청 경무기획국 교육과의 업무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경찰인사에 관계되는 법규·훈령·예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경찰교육 기본계획 등은 모두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9조제1항, 경찰위원회규정 제5조제1항).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 인사에 관한 방침과 기본계획, 법령의 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등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경찰공무원법 제4조, 5조).¹²⁶⁾ 그런데,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상 경찰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찰위원회와 경찰인사위원회의 임무가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충돌은 경찰청이 출범한 1991년7월 경찰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발생하였다. 1991년7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통해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되고 「경찰법」 및 「경찰위원회규정」등이 제정됨으로써 경찰위원회에 인사를 포함한 제반업무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권이 부여되었다.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경찰인사위원회는 단지 ‘인사업무’에 관한 ‘심의권’만을 행사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찰위원회의 위상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출범 초기에는 경찰인사에 관한 기본시책과 법령의 개폐 등은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되, 경찰인사위원회는 보다 세부적인 인사문제에 관

125) 이황우·김진혁·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3, 23면 참조.

126) 경찰인사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경무기획국 인사과 인사운영계가 담당하고, 경찰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무기획국 혁신기획과 경찰위원회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 심의기구로서 존재 의의가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요정책과 세부 정책의 구별기준이 애매하고, 종국적으로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사항을 경찰인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실익도 없다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인사위원회는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이다.

(2) 주요인사업무

전술한 바와 같이, 인사업무에는 신규채용, 승진과 전보, 교육훈련, 평가, 포상 및 징계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신규채용, 교육훈련과 승진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수한 인재 선발이 경찰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나위도 없다. 경쟁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하고,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항, 2항).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특별 채용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내지 제5항). 최근 경찰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경찰직 공무원 지망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신규채용 경찰관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찰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한다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날로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면 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야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소속원의 능력을 함양하는 외에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승진인사는 조직의 업무능률화와 조직원의 사기에 직결된다.¹²⁷⁾ 모든 직장인에게 있어 승진은 개개인의 근무의욕과 성취동기를 진작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좋은 승진인사제도는 조직구성원들의 건전한

127) 경찰을 포함한 모든 급여생활자에게는 보수도 매우 중요하다. 보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때로 자존심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 보수도 공무원보수체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지만, 나쁜 승진제도는 직원들의 체념과 불평불만을 야기하고 조직 분열과 쇠퇴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

경찰인사제도에 관해서는 그간 수많은 연구가 행해졌고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논문도 매우 많이 발표되어 있다. 여기서는 경찰관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진인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승진제도는 소속원의 근무행태와 학습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3) 승진인사제도

승진은 하위직급이나 계급에서 상위직급 또는 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¹²⁸⁾ 현행법상 승진의 종류에는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 등이 있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 제4조,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1) 근속승진과 특별승진

근속승진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경장·경사·경위로 각 승진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12월29일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근속기간 및 승진임용 대상 계급이 변경되었다. 신설된 제11조의2에 의하면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해당계급 근속기간은 순경은 6년, 경장은 7년 그리고 경사는 8년이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경장 및 경사승진을 위한 근속기간은 각 1년씩 단축되었고 경위 근속승진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종래 경장 및 경사에의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75%) 이상이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¹²⁹⁾ 제4조1항), 2005년12월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4항 및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4조1항도 개정해야만 한다.

특별승진임용은 특별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승진 인원은 경감은 전체 승진 임용 예정인원 수의 5%이내, 경위는 15%이내 그리고 경사 이하는 20% 이내로 한다(승

128) 임창호,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공안행정학회보(2006. 3.발간예정)』, 3면.

129) 경찰청훈령 제303호(2000.4.20).

진임용규정 제4조4항).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진 사유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또는 승진임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승진임용규정 제40조). 특별승진 대상자도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이하 ‘교육훈련규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른 신입교육 및 기본교육은 이수해야 한다(승진임용규정 제41조2항).

(2) 심사승진

심사승진이란 평상시의 근무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대상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매년 계급별 승진 예정자 중에서 특별승진 대상인원을 제외한 수의 각 5할씩을 심사와 시험을 통해 승진시킨다(승진임용규정 제4조제1항).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승진임용규정 제15조)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승진임용규정 제16조)가 실시하며, 그 과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과 3단계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아래서는 경정이하 승진심사를 중심으로 심사승진제도 전반을 개관한다.

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우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점 50%, 경력평정점 35%, 교육훈련 성적평정점 15%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승진임용규정 제11조)

(가)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은 총경 이하의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행해지며 승진·전보·특별승급·특별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된다(승진임용규정 제7조제1항).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을 종합하여 산출하고,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만으로 평가한다(동조 제2항). 평정요소의 항목과 내용은 <표4-1>과 같다.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사람은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 3인으로 한다(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6조). 승진대상자명부의 근무성적점수는 명부작성기준일부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나)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한다.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구분하고,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으로,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년간을 원칙으로 한다(승진임용규정 제9조).

<표 4-1> 근무성적평정요소

	항 목	배점	평 가 내 용
제1평정요소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	15	중요업무계획수립, 중요범죄검거 등.
	포 상	5	상벌점수를 상계한다.
	직장훈련	5	사격훈련·체력단련 및 직장교육 등.
	첩보제출	3	첩보제출, 첩보활용도에 따른 능력.
	근 태	2	근태사항을 평가
	계	30	
제2평정요소	근무실적	6.5	· 담당직무의 양 · 직무수행의 정확성 · 직무수행의 신속성
	직무수행능력	7	· 직무지식 및 기술 · 직무의 이해력 · 창의 및 기획력 · 관리 및 통솔력
	직무수행태도	6.5	· 성실 및 준법성 · 친절 및 협조성 · 적극 및 책임성
	계	20	
총 계		50	

출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변형임.

(다) 교육훈련성적평정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성적에 따라 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승진임용규정 제10조). ‘교육훈련기관에서 실

시하는 교육훈련'의 성적이란 총경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3항에 의한 경찰고위정책교육과정의 성적을, 경정이하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신입교육과정 또는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필수교육과정의 성적을 말한다(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입교육과정 제외한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성적은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다. 1999년 이후 이른바 '이수만점제(履修滿點制)'를 택하고 있어서 차별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㉞) 가점(加點)

그 밖에 특수지근무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3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승진임용규정 제11조제2항, 동 시행규칙 제14조 이하).

② 제1단계 승진심사

승진심사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승진시험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5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승진임용규정 제20조제1항). 제1단계 심사는 이들 중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부적격자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경찰청의 06년 경정이하 승진심사기준).

- 교육훈련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승진임용규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 승진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정신질환 등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 또는 인성 상 문제 등으로 상위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내·외의 지탄을 받는 등 과립치한 행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가 배제기준 적용 대상자. 단, 사면·말소·상벌 상계된 징계처분 등은 추가 배제 기준으로 정할 수 없음.

③ 제2단계 승진심사

제1단계 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7개 심사항목을 수·우·양·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배점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심사승진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인원을 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제2단계 심사항목 및 배점은 <표2-4>와 같다. 2004년부터 경감(경정승진대상)과 경정(총경승진대상)에 대하여 상급자·동료·하급자 등의 평가(다면평가) 결과를 2단계 심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승진임용규정제22조의2).

④ 제3단계 승진심사

제2단계 심사에서 회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최종 승진임용 예정자를 선발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단계 심사의 고려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국가관이 투철하고 충성심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자.
- 친절하고 청렴하며 개혁의지가 확고한 모범경찰관이라고 정평이 있는 자.
-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
- 맡은바 직무에 성실, 근면하여 상위직 수행능력이 있다고 정평이 있는 자.
- 당해계급에서 직무수행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기타 소속별, 기능별 배려 등.

<표 4-2> 제2단계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수	우	양	가	
1. 경험한 직책		15	13	11	9	
2. 승진 기록		12	10	8	6	
3. 기본교육성적		10				
4. 근무 성적		최고 32점 기준으로 실점수 평가				
5. 상별	경 감	5	4	3	2	
	경위이하	15	12	9	6	
6. 지휘관추천		8	6	4	2	
7. 적성	경감	다면평가	10	8.5	7	5.5
		위원평가	8	6	4	2
	경 위 이 하	8	6	4	2	

출처: 06년 경정이하 승진심사기준, 경찰청

(3) 시험승진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매년 1회 실시하여, 계급별 승진 예정자 중에서 특별승진 대상 인원을 제외한 수의 5할을 승진 임용한다(승진임용규정 제4조제1항). 시험은 원칙적으로 1차 시험(선택형), 2차 시험(논문형) 및 3차 시험(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승진 임용규정 제31조), 경감이하에의 승진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동 규정 제31조의2 제1항).

3차 또는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1차 및 2차 시험은 전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성적 30%, 2차 시험성적 30% (필기시험성적 60%),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 및 교육훈련성적 1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 때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장 이하는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산정하며, 경사이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한다(승진 임용규정 제33조).

3)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와 승진인사

한국경찰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속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만한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활동이 바로 교육훈련이다. 그렇지만 교육훈련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지식과 능력이 향상되어, 경찰조직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교육훈련이 개인이나 조직의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면, 예산낭비의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의 성과를 최대한 흡수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만큼 체득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경찰관이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교육훈련에 임하고 보다 높은 개인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선(最善)의 방법인지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찰관 승진임용제도에서는 교육훈련의 효과가 승진인사에 (거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승진임용예정자 선발과정에서 고려되는 교육훈련성적이 전체 평정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정형화하면 <표4-3>과 같다.¹³⁰⁾

<표 4-3> 승진인사에 있어 교육훈련평정점의 반영율

		승진임용기준			전체가중치
		평가항목		비중	
심사 승진	승진대상자 평정요소	근무성적평정 중 직장훈련	5/50	50/100	0.025
		경력평정		35/100	교육훈련과 관계없음
		교육훈련평정		15/100	0.075
		소계			0.100
	심사	2단계 심사 중 기본교육성적	10/100		0.050
		계			0.150
시험승진		시험성적		60/100	교육훈련과 관계없음
		경력평정		35/100	교육훈련과 관계없음
		교육훈련평정		15/100	0.150
		계			0.150

<표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승진임용과정에서 (직장훈련을 포함한) 교육훈련의 성과는 겨우 15%만이 반영될 뿐이다. 그나마 신입교육과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육훈련과정이 '이수만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개인적 효과를 묻지

130) 이 표에 교육훈련과 관련된 평가가 모두 나타나 있지는 않다. 제2단계 승진심사항목 속에 근무성적(최고 32점까지)이 들어있는데(<표4-2>), 근무성적의 제1평정요소에는 직장훈련도 포함되기 때문이다(<표4-1>). 그러나 직장훈련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행하는 훈련으로서(교육훈련규정 제2조제5호), 그 내용도 사격훈련·체력단련 및 직장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의 깊이와 강도는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않고 단지 '출석하기만 하면' 모두 똑같은 점수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표4-2>의 제2단계 심사항목 및 배점표에서도 기본교육 점수는 일률적으로 10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그 교육훈련을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었는지의 여부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 경찰교육훈련체제

1) 경찰관 교육훈련의 중요성

교육훈련은 경찰관의 일반적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¹³¹⁾ 다시 말해서, 모든 경찰관이 그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과 지식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경찰관이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공고해지고 경찰조직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수준은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권리의식이 고양되면 경찰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전통적인 직무수행 방식은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다. 민주화가 진전되면 정부와 국회도 시민사회의 '정치적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그러나 - 어느 나라에서든 - 경찰과 같은 폐쇄적 관료집단이 현대 시민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더라도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지식의 재충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은 - 사회변화의 속도만큼 빠르게 - 자기논리에 매몰된 고집불통의 관료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진전되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

131) 이황우·김진혁·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前註125)』, 163~164면.

록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커진다.

피해자문제도 20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그 중요성이 확인된 새로운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분야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경찰의 주요 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한 이미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교육훈련 과정에서도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를 이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 특히 범죄피해자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 현행 경찰교육체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교육훈련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구분

『교육훈련규정』 제7조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학교교육·위탁교육 및 직장훈련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학교교육

학교교육은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교육훈련규정 제2조1호). 그 밖에도 경찰대학 부설 수사보안연수소, 지방경찰학교 등도 경찰교육기관에 속한다.

경찰대학은 2003학년도부터 대학생교육과정에 3학년 전공필수과목으로 피해자학을 설강하고 있으며(2학점), 치안정책과정(총경) 및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2시간씩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종합학교에는 2005년 현재 경찰간부 후보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에 피해자 관련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다.¹³²⁾ 단지 수사요원 양성과정(3주)에만 피해자 관련 직무과목 3시간을 배정하고 있을 뿐이다.¹³³⁾ 중앙경찰학교 신입순경과정(24주, 101경비단 포함)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이해 3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성폭력피해자보호에 관해서도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32) 경찰청, 『2005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 176~177면.

133) 경찰청, 『2005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 250면.

②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교육훈련규정 제2조4호).

③ 직장훈련

직장훈련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통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교육훈련규정 제2조5호)

(2) 대상 및 내용에 따른 구분

① 신임경찰관 교육훈련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는 누구나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육훈련규정 제8조1항).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 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1항 참조). 시보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규정에 따라 중앙경찰학교도 신임교육과정 평가종류별 졸업성적이 6할 미만인 자는 당연 퇴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중앙경찰학교 교칙 제27조4호) 경찰대학은 한학기 2개 과목 이상 제시형성적이 60점 미만인 학생을 퇴학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경찰대학 학칙 제25조1항). 경찰종합학교 교칙 제28조도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평가한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과성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퇴교당하는 예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② 기본교육

총경·정정·경감·경위 및 경사는 모두 해당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훈련규정 제8조2, 3항). 기본교육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식을 습득케 하는 교육훈련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정정 및 경감 기본교육과정, 경찰종합학교의 경위 및 경사 기본교육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찰관 기본교육을 계급별 직무내용에 따라 분류한다면 일반재직자 교육훈련, 중간관리자(감독자) 교육훈련 및 상급관리자 교육훈련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¹³⁴⁾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치안정책과정은 상급관리자 교육훈련과정에, 정정·경감 및 경위 기본교육과

정은 중간관리자 교육훈련과정에, 그리고 경사기본교육은 일반재직자 교육훈련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전문교육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훈련규정 제8조4항). 2005년 현재 경찰대학에서는 경찰홍보과정을 비롯한 11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부설 수사보안연수소에도 피해자서포터 전문교육과정 등 23개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경찰종합학교에는 외사경찰실무과정을 포함한 42개 전문교육과정 및 3개 수탁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에는 각각 교육목표와 중점교육방향 및 수료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1999년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기만 하면 모두 수료자격을 부여하는 ‘이수만 점제’가 채택된 이후 전체 수업시간의 90% 이상 출석하기만 하면 전원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교육훈련의 내용

(1) 경찰대학

경찰대학에는 대학생과정 1, 치안정책과정 등 기본교육과정 3, 경찰홍보과정 등 기능별 전문교육과정 11개 과정이 있다.

① 경찰대학생 교육과정

경찰대학생 대상 신입교육과정에서는 4년간 15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피해자관련 교과목으로는 법학과 경찰수사학전공의 3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피해자학 이 배정되어 있다(2학점). 이 강좌에서는 범죄피해자학의 기초이론,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국내의 범죄피해자 대책, 외국의 범죄피해자 대책, 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교육한다.¹³⁵⁾

134) 이황우·김진혁·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前註125)』, 170면 이하 참조.

135) 경찰대학, 『2005경찰대학요람』, 70면.

(가) 증점교육방향

- a. 전문 직업경찰간부로서의 공직윤리관 및 국가관 확립
- b. 교양·법학·행정학과 경찰학의 체계적인 병행 학습
- c.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이론학습과 실무능력 겸비한 전문경찰관 양성
- d.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
- e. 현업부서, 타 대학 등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열린교육 지향

(나) 과정개요**<표 4-4> 경찰대학생 교육과정개요**

구 분	신입교육과정	기 간	4년
대 상	경찰대학생	총학점	156학점
교과편성 기준	전공 115학점 74%(기초 85학점 54%, 심화 30학점 20%) 교양 25학점 16%, 기타(무도, 관서실습) 16학점 10%		
입교요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중 소정의 입학시험 합격자		

- a. 학점과목은 매학기 평가 : 수시평가 20%, 중간시험 40%, 기말시험 40%.
- b. 학장 지정과목 평가 : 「경찰대학교과과정에관한규칙」으로 정함.
- c. 졸업에 필요한 학점(현행156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자격 인정.
- d. 퇴학·학사경고는 학칙에 따른다.

② 치안정책과정

총경 및 총경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과정으로서 22주 836시간 중 범죄피해자학 3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그 교육은 주로 수사 일선의 범죄피해자 보호사례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 중점교육방향

- a. 참여식 전문직무교육을 통한 직무지식 공유.
- b. 분야별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직무교육으로 직무핵심역량 강화.
- c. 폭넓은 소양교육 및 국내외 연수를 통한 식견과 거시적 안목 형성.
- d. 국제화·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외국어·컴퓨터 교육 확대.

(나) 과정개요

<표 4-5>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과정개요

구 분	기본교육과정	기 간	22주
대 상	총경 및 총경승진후보자	시 간	836시간(1일 7시간)
교과편성 기 준	적응도입 7.3% 직무 21.8% 인접지식 5.5% 기본소양 6.0% 외국어 및 정보화 14.1% 자료수집 6.8% 국내외 연수 12.0% 체력단련 취미활동 10.0% 체험학습 8.4% 기 타 8.1%	교 육 방 법	1주 합숙, 21주 비합숙
입교요건	총경 및 총경승진후보자중 선발된 자		

③ 경정기본교육과정

경정 및 경정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과정으로서 4주 152시간 중 피해자 관련 교과목은 2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가) 중점교육방향

- a. 중견간부로서의 식견과 안목을 함양할 체계적 소양교육.
- b. 실무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 실시.
- c.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인터넷 등 컴퓨터활용능력 제고.
- d. 사회봉사활동, 분임토의 등 참여식 토론교육 확대.

(나) 과정개요

<표 4-6> 경찰대학 경정기본교육과정개요

구 분	기본교육과정		기 간	4주
대 상	경정		시 간	152시간(1일 7시간)
교과편성 기 준	기본소양 직무분야	53% 35%	교 육 방 법	비 합 속
입교요건	경정 기본교육 미이수자 중 계급 배명일자순 선발			

④ 경감기본교육과정

경감 및 경감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과정으로서 3주 114시간 중 피해자 관련 교과목은 2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가) 중점교육방향 : 경정기본교육과정과 동일하다.

(나) 과정개요

<표 4-7> 경찰대학 경감기본교육과정개요

구 분	기본교육과정		기 간	3주
대 상	경감		시 간	114시간(1일 7시간)
교과편성 기 준	기본소양 직무분야	57% 32%	교 육 방 법	비합속
입교요건	경감 기본교육 미이수자 중 계급 배명일자순 선발			

⑤ 전문교육과정

경찰대학에는 경찰홍보과정 등 11개의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피해자관련 교과목은 교육하지 않는다.

(가) 경찰홍보과정

대언론 관계의 중요성과 경찰공보의 이해, 보도자료 및 보도예상·진상보고 작성실습, 언론관계자 특강, 경찰관련 보도사례 발표 및 연구 토의 등을 중점 교육방향으로 설정하여 다음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4-8> 경찰대학 경찰홍보 교육과정개요

구 분	전문직무과정	기 간	1주
대 상	경정이하	시 간	38시간(1일7시간)
교과편성 기준	직무교과 71% 소양분야 5% 행정기타 24%	교육 방법	비합숙
입교요건	공보업무 및 민원(수사·형사·교통)업무담당 직원 보직변경자 및 교육희망자 우선 선발		

(나) 청문감사과정

감찰·감사 운영방향의 숙지, 불합리한 제도·관행 시정 및 대안개발능력 제고, 감사 기법·직무감찰 등 감사관련 전문분야 지식습득 및 감사사례 발표 및 연구 토의 등을 중점교육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4-9> 경찰대학 청문감사 교육과정개요

구 분	전문직무과정	기 간	1주
대 상	경정이하	시 간	38시간(1일7시간)
교과편성 기준	직무교과 71% 소양분야 5% 행정기타 24%	교육 방법	비합숙
입교요건	청문감사관 및 감찰·감사업무 담당직원 보직변경자 및 교육희망자 우선 선발		

(다) 정보검색사과정

인터넷 활용기술 및 홈페이지 작성, 운영능력 습득, 고급기능의 단계적 학습, 이론과 실기 병행학습으로 교육효과 제고 등을 중점교육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4-10> 경찰대학 정보검색사 교육과정개요

구 분	전문직무과정	기 간	2주
대 상	경정이하	시 간	76시간(1일 7시간)
교과편성 기 준	직무교육 67% 소양분야 15% 행정기타 18%	교 육 방 법	비합숙
입교요건	인터넷을 활용할수 있는 고급능력 소유자 경찰종합학교 또는 지방학교에서 인터넷 교육수료자		

(㉞) 기 타

그 밖에도 경리회계과정, 기획예산과정, 민간경비 관리과정, 리더십 향상과정, 창의력 향상과정, 송무실무과정, 행정혁신과정 및 미래설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경찰종합학교

경찰종합학교에는 신입교육과정으로 경찰간부후보생과정 1개, 경위기본교육과정 등 기본교육과정 2개, 외사경찰실무과정 기능별직무교육과정 등 41개, 해경신임순경과정 등 수탁교육과정 3개 등 총 47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① 경찰간부후보생과정

(㉞) 중점교육방향

- a.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경찰간부 육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
- b. 실제적 과제 중심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 c. 국제화·정보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컴퓨터 활용능력배양.
- d. 참여식 교육, 관서실습 등 체험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e. 교육진행 중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환류로 교육효과 제고.

(나) 과정개요

<표 4-11> 경찰종합학교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개요

구 분	신임교육과정	기 간	52주
대 상	간부후보생	시 간	1,976시간(1일 7시간)
교과편성 기 준	직무교과 70% 소양분야 9% 기 타 21%	교 육 방 율	합 속
입교요건	경찰간부후보생 모집시험에 합격한 자		

② 경위기본교육과정

(가) 증점교육방향

- a.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현장지휘능력 향상
- b. 토론식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학습 유도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 c. 정보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중심의 정보화교육 강화
- d. 적절한 법 적용 및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관련 판례교육 실시

(나) 과정개요

<표 4-12> 경찰종합학교 경위기본교육과정개요

구 분	기본교육과정	기 간	3주
대 상	경위 및 승진후보자	시 간	114시간(1일 7시간)
교과편성 기 준	직무교과 68% 소양분야 12% 기 타 20%	교 육 방 율	합 속
입교요건	경위기본교육 미이수자 중 선임용자 순		

③ 경사기본교육과정

(가) 중점교육방향

경위기본교육과정과 대동소이하다.

(나) 과정개요

<표 4-13> 경찰종합학교 경사기본교육과정개요

구 분	기본교육과정	기 간	3주
대 상	경사 및 승진후보자	시 간	114시간(1일 7시간)
교과편성 기 준	직무교과 66% 소양분야 14% 기 타 20%	교 육 방 법	합숙
입교요건	경사기본교육 미이수자 중 선임용자 순		

④ 기타 전문교육과정

인터넷과정(중급), 정보통신요원과정, 외사경찰실무과정, 국제범죄수사과정, 외국어전문과정, CIA국제대테러과정, 민원행정과정, 경찰인권과정, 장비실무과정, 경리실무과정, 사격훈련과정, 사격관리자과정, 무도사범과정, 생활안전관리자과정, 생활안전실무과정, 지역경찰관리자과정, 지역경찰실무과정, 민원담당관실무과정, 풍속지도실무과정, 게임장지도실무과정, 총포화약지도실무과정, 청소년범죄대책과정, 수사요원양성과정, 경비관리자과정, 경비실무과정, 전술지휘과정, 전경대기간요원과정, 전의경관리과정, 교통관리자과정, 교통안전시설관리과정, 운전면허행정처분관리과정, 교통외근과정, 교통사고조사과정,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수사과정, 정보관리자과정, 정보실무과정, 정보채증과정, 교수요원양성과정, 지방학교교수요원과정, 해경신임순경과정, 해경초급간부경위과정, 해경초급간부경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3)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는 신입교육과정으로 일반순경과정 등 6개, 전·의경교육과정으로 의무경찰과정 등 5개, 총 11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피해자관련 교과목으로는 신입순경과정 24주 840시간 중 소양과목에 인권 20시간(범죄피해자의 이해 3시간, 시민단체의 이해 3시간, 장애인의 이해 3시간, 장애인 체험 4시간, 인권의 이해 2시간, 인권감수성 키우기 5시간)과 형사특별법에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3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4) 수사보안연수소

<표 4-14> 피해자 서포터 전문과정 교과 체계

분 야	교 과 목	시 간	비 율
총 계	13과목	38	100
소양과목	2과목	4	10.5%
	1. 수사와 인권	2	
	2. 공직윤리	2	
직무과목	8과목	28	73.7%
	1. 피해자학	2	
	2. 외국의 피해자보호실태	2	
	3. 우리나라 피해자보호제도	3	
	4. 감수성 훈련	5	
	5. 상담이론	3	
	6. 피해자 상담원리와 기법	3	
	7. 상담실습(역할극)	4	
	8. 범죄별 피해자 호보(사례연구)	6	
기 타	3과목	6	15.8%
	1. 입교 및 수료	2	
	2. 설문조사	1	
	3. 자료수집	3	

출처 : 경찰청, 2005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 159면.

수사보안연수소는 2005년 현재 수사지휘과정 등 23개의 전문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수사 보안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과정에 피해자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2005년부터는 개설된 범죄피해자 서포터 전문교육과정(1주일)은 전국 경찰서 수사과의 형사반별로 지정된 범죄피해자 서포터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교과과정에는 감수성 훈련이라든가 상담 기법과 같이 심리학적 유능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편성되어 있다.

수사보안연수소의 전문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건·환경범죄수사전문과정, 총기범죄수사전문과정, 강력범죄수사전문과정, 조직폭력범죄수사전문과정, 현장감식전문과정, 범죄분석전문과정, 일반수사기법과정, 피해자서포터전문과정, 마약류전문수사과정, 금융경제범죄수사전문과정, 공공지능범죄수사전문과정, 선거범죄수사전문과정, 사이버범죄수사전문과정, 디지털증거분석전문수사과정, 화재수사전문과정, 테러인질범죄수사전문과정, 과학수사기법전문과정, 범죄정보시스템분석전문과정, 여성폭력예방수사전문과정, 보안수사지휘전문과정, 보안수사전문과정, 보안실무전문과정.

(5) 지방경찰학교

지방경찰학교는 1999년 4월에 각 지방경찰청 차장직속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이 매년 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기간은 1일 내지 5일이다. 교육내용은 각 지방청의 특성에 맞추어 경찰청에서 선정한 39개 교육과정 중에서 선정한다.¹³⁶⁾ 전국 14개 지방경찰학교 중 충남지방경찰청, 서울울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 5개청을 표본으로 지방경찰학교 교육과정을 개관해보기로 한다.

① 충남지방경찰청

경장기본과정 등 21개 과정을 운영 중인 바, 피해자관련 교과목은 범죄피해자대책과정(교육기간 1일 7시간)에 피해자학 2시간, 피해자 상담원리와 기법 2시간, 범죄별 피해자 보호(사례연구) 2시간, 수사와 인권 1시간이, 수사행정과정(교육기간 2일 14시간)에

136) 39개 과정 중 유사기능 통합 및 자체 운영과정 신설 등을 포함하여 충청청 21개과정, 서울청 41개과정, 울산청 26개과정, 제주청 17개과정, 부산청 2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범죄피해자보호 2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② 서울지방경찰청

경장기본과정 등 41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피해자관련 교과목은 각 과정 공히 전무한 실정이다.

③ 울산지방경찰청

경장기본과정 등 26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피해자관련 교과목은 피해자서포터과정(교육기간 1일 7시간)에 피해자보호와 경찰의 역할 2시간, 직무사례 분임토의 1시간, 경찰과 인권 2시간, 범죄피해자 대책업무(상담기법) 2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④ 제주지방경찰청

경장기본과정 등 17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피해자관련 교과목은 각 과정 공히 전무한 실정이다.

⑤ 부산지방경찰청

경장기본과정 등 28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피해자관련 교과목은 경찰인권과정(교육기간 1일 7시간)에 피해자보호대책 1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3.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찰관 교육훈련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합리적 시스템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모든 경찰관이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교육훈련에 임하고 보다 높은 개인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승진제도는 모든 봉급생활자의 직무행태와 학습방향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전향에서 개관한- 경찰 교육훈련시스템 속에서 적용 가능한 피해자대책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그 실천을 위한 전제로서 경찰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찰인사제도 개선방향

(1) 경찰 승진인사제도의 장점

인사관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경찰인사제도는 향후 경찰조직의 위상과 실질을 고려한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취급되어야 한다.

경찰조직은 확고한 목표를 가진 국가기관이다. 경찰소속원은 애당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도 더 나은 사람을 고르는 방식으로 선발된다. 따라서 경찰인사행정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행정과는 달리, 모든 경찰관이 예외 없이 경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역량을 구비한 것으로 전제하고 행해진다. 경제적·사회적 또는 지적 능력이 실로 다양한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행정에서는 무제한 자유경쟁이나 만인을 똑같이 취급하는 평균적 정의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인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조치’ 또는 ‘노령자를 위한 무임승차 혜택’ 따위를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연고와 출신성분을 불문하고 모두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모든 경찰구성원이 직무집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최선을 아껴 노력하고 경쟁하도록 하는 인사제도가 최선의 제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조직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동물의 세계에서든 천적(경쟁상대) 없는 종(種)은 진화하지 못한다. **구성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조직은 고사(枯死)한다.**

필자(김용세)는, 우리경찰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태동했으며 지난 반세기동안 허다한 문제를 노출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험에 의한 승진’이라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매년 승진심사 전후(前後) 조직 내에 떠도는 그 술한(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소문과 불평을 생각해보라. 적어도 절반은 ‘연고나 모략(?)’이 개입할 여지없는 경쟁(시험)을 통해 승진할 수 있으므로, 역으로 심사승진시스템 또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5년12월29일에는 경위근속승진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다른 직역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및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격렬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정부여당은 경찰공무원법의 재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경찰관들이 이 규정을 재개정한다면 수사권독립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법을 모르는 경찰간부보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낫다고 경찰조직을 비하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다.¹³⁷⁾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몸담은 경찰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자기파괴적 행동’을 보인 것이다.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서, **국민은 이처럼 사익(私益)을 위해 공의(公義)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모범적인 공복(公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일선 경찰관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에 2006년2월27일 당정협의회가 개정 경찰공무원법의 재개정을 포기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라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가능했으므로, 소속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자기파괴적’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아무튼, 2006년2월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당정협의회는 (재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다시 번복하여)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방관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경위는 ‘사법경찰관’이다. 독자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주체이다. 경위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여, 경찰은 (소수의 예외는 있겠지만) 시험을 통해서도 심사를 통해서도 자력으로 승진할 역량이 없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맡겨도 좋을 것인지, 국민은 과연 그 경찰을 독자수사권의 주체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경사가 8년 뒤에 승진할 수 있다면, 5~6년 경력의 경사들은 더 이상 시험준비와 실적관리에 매진할 동기가 약화될 것이므로 경찰의 수준 하락을 방지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선, 근속승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결과를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경찰인사기관 정비

① 경찰위원회와 경찰인사위원회

전술한 바와 같이, 1991년 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경찰인사위원회는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였다. 물론, 경찰위원회와 경찰인사위원회의 법률상 기능이 일부 중복된다 하더라도 현재처럼 경찰인사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인사업무 수행에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무운용의 현실은 법령과 합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경찰인사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137) 오마이뉴스 2006.2.14. 보도.

법령을 실무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관리주체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원칙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 채용시험과 승진시험만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의 자질향상과 경찰인사에 대한 신뢰증진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6조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3조 등을 개정하여, **경찰관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권한을 중앙인사위원회로 (동 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하겠지만) 이양할 필요가 있다.**

- (가)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5월24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 이래 최초의 인사전담기관”이다.¹³⁸⁾ 따라서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기관이다.
- (나) 경찰관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을 중앙인사관리위원회에 일임하면 전문적인 시험관리를 통해 보다 우수한 경찰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경찰관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의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증진될 것이다. 종래 수험생들 사이에는 경찰관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특정 출판사의 문제집을 암기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퇴직경찰관들이 결성한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경찰시험이 농단되고 있다는 비난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라) 현재 거의 모든 국가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 채용시험은 문제도 점수도 공개되지 않는다. 헌법소원까지 갈 것도 없이 정보공개청구 만으로도 비공개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찰 시험관리는 (시험관리에 관한 한)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문제가 공개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많다. 시험관리를 중앙인사위원회에 넘기면 경찰은 이 모든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138) 중앙인사위원회 웹사이트(<http://www.csc.go.kr/>).

(마) 시험관리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이관하더라도 현직경찰관들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출제 및 시험관리 과정에서 경찰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3) 신입경찰관 임용제도 개선

① 신규채용제도현황

현행법상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경찰공무원법 제8조제1항).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졸업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합격자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한다(동조 제2항). 그 밖에 특수한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비롯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 채용을 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현재,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별채용을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인 신규채용방식은 a) 5급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경정으로 임용하는 경우(동조 제3항 제4호) b) 경찰대학졸업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동조 제2항) c)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합격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동조 제2항) d)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를 채용시험을 거쳐 경장으로 임용하는 경우(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4) 및 e) 순경신규채용시험에 의하여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이다.

② 5급 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

현재 5급 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는 경정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들 시험 합격자는 우리 사회에서 그 능력이 공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고 경찰의 자질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을 일률적으로 경정으로 임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직급 체계상 경정은 5급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경정으로 임용하는 것은 형식논리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경찰조직 내에서 경정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그 권한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면 초임 행정사무관 자격자를 경정

으로 임용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 초임 경정과 초임 행정사무관이 가지는 각각의 조직 내 위상이나 실질적 권한의 크기에는 매우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b)경찰조직의 통합을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경찰업무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일거에 중견지휘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c)최근 경찰공무원의 인기가 상승하고 경찰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5급시험이나 사법시험 합격자 중 경찰관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으므로 반드시 경정으로 임용해야 할 필요성도 적다. d)(물론 처음부터 성격이 다른 시험이긴 하지만)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합격자는 경위로 임용된 후 7년 이상 경찰업무를 경험한 후에, 엄청난 경쟁 속에서 승진시험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경정으로 승진할 수 있음에 비하여 5급시험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는 그것만으로 승진시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직급을 부여받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요컨대, **5급 공무원 채용시험 및 사법시험 합격자는 경감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이 가진 자격보다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이지만,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이상, 당연히 그들 스스로 하위직급에 임용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법리상(法理上)의 장애는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5급시험 또는 사법시험 합격자도 일선 지구대장, 일선서 계장 또는 형사반장을 거쳐 경정으로 승진하게 하는 편이 경찰조직의 통합과 업무효율을 위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③ 경찰대학 졸업자

경찰대학의 존재 의의 또는 존폐(存廢)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므로 여기서 그 내용과 논거들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찰대학 체제의 이론적·이념적 당부(當否)에 관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일의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김용세)가 지난 10여년 동안 수많은 경찰관들과 접촉하면서 느낀 바에 따르면, 경찰대학 졸업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현행 제도는 조직의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조차 없지 않다. 2006년2월 ‘경위근속승진제도’를 둘러싼 소동의 와중에서도 ‘무궁화클럽’의 일부 회원들이 “경대 폐지”를 주장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근무성적 평가체제 개선

① 실적평가방식 개선

수량 중심의 ‘형식적 실적주의’의 폐해에 관하여는 2002년 보고서에서 자세히 지적한 바 있다.¹³⁹⁾ 어떠한 업무영역에서든 직무집행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드러난 실적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찰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실적은 반드시 숫자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숫자로 표시되는 검거율이 낮을지라도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와 이해를 획득한 경찰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검거율만’ 높인 경찰서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장기발전 과제로서 보다 합리적인 평가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② 다면평가 확대 실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를 총경이하 모든 경찰관에 대해 확대 실시하고 승진인사에서의 평가비중을 높여야** 한다(승진임용규정 제22조의2 참조). 다면평가는 지휘관의 자의와 편견을 배제하고 개인의 역량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과 도덕성은 가까이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기 마련이다. 다면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 적어도 ‘아무개는 상급자에게 아부를 잘해서 승진했다’는 근거불명의 불평과 불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가) 현재 제2단계 승진심사 항목 중 하나로 되어 있는 ‘적성’항목을 모두 다면평가 점수로 전환해야 한다. 요컨대, 제2단계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다면평가(현재는 ‘적성’) 점수를 경감이상 총경은 총 18점, 경위이하는 8점으로 하는 것이다. 경찰조직의 명령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추천항목도 필요하므로 나머지 평가항목은 그대로 뒤도 무방할 것이다.

(나) 현재 시험승진 임용에서는 다면평가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진시험 준비자들이 ‘업무를 도외시한다’거나 ‘상사 또는 동료와의 관계를 경시한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면평가를 승진평가의 요소로 삼을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

139) 金容世,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前註1)』, 229면 이하.

해 근무성적평정표의 제2평정요소 세 항목을 두 가지로 압축하고 7점짜리 항목(현재는 '직무수행능력')을 다면평가결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표4-1> 참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심사승진에서는 다면평가가 2중으로 평가되지만, 승진심사 전 과정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적정한 수준까지 향상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요컨대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의 모든 평정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5) 근속승진 요건 강화

전술한 바와 같이, 2005년12월 개정 경찰공무원법이 2006년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는 각각 6, 7, 8년을 경과하면 상위계급으로 근속 승진하게 된다. 경장과 경사 승진을 위한 근속기간이 각각 1년씩 단축되고 경위 근속승진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종래 경장 및 경사에의 근속승진에는 승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근속한 사실 외에 최근 2년간 근무성적이 75%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을 뿐이다(근속승진 운영규칙 제4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진이 좌절되는 예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경찰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으므로 근속승진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만 개정하면 충분하므로 논란의 여지도 거의 없다. 근무성적 요건을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의 80%이상으로 변경하고, 각 계급별 근속승진의 최소조건으로서 교육훈련성적의 하한을 정해야 한다.

(6) 교육훈련 평정의 방법과 반영비율 개정

① 평정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훈련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지식과 능력이 향상되어, 경찰조직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의 성과를 최대한 흡수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만큼 체득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경찰관이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교육훈련에 임하고, 보다 높은 개인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경찰관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에 교육훈련성적이 반영되긴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입경찰관의 경우 교육훈련의 효과를 평가하여 만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자는 신규임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의미 없는 선언에 그치고 있다. 또한 승진인사에서도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하며(승진임용규정 제10조),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 절차에서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을 15%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1999년 이후 이수만점제가 도입되어 교육훈련평정의 변별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즉, 교육훈련의 개인적 효과를 묻지 않고 단지 ‘있어 있기만 하면’ 모두 똑같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리하여 제2단계 승진심사에서도 기본교육점수는 일률적으로 10점을 부여한다.

경찰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경찰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입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효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만 한다**(평가방법에 관하여는 후술).

② 승진인사에의 반영비율

현재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에서 똑같이 15% 씩 반영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직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직자 교육훈련의 성패는 경찰관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증진시켰는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효과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단순 참가의 결과조차 이처럼 경시되는 상황에서 경찰관 교육훈련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다하더라도 경찰관 개개인의 직무수행 기술과 지식은 승진임용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4조 등을 개정하여 **교육훈련 평정점의 비중을 <표4-15>와 같이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5 >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요소의 비중 개정

	현 행		개정(안)	
	심사승진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훈련평정점	50% 35% 15%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훈련평정점
시험승진	필기시험점수 근무성적평정점 교육훈련평정점	60% 25% 15%	필기시험점수 근무성적평정점 교육훈련평정점	50% 25% 25%

특히 시험승진에서 필기시험점수의 비중을 낮추고 교육훈련평정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승진시험 성적은 단기간의 집중학습으로도 획득 가능하다. 그리하여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시험승진 희망자들의 업무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그에 반하여, 교육훈련의 성적을 엄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면, 평상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인사에 반영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심사승진 임용자와 시험승진 임용자의 비율

현재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의 인원수는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에서 특별승진 임용 예정인원을 제한 수의 각 50%씩으로 되어 있다(승진임용규정 제4조1항).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험승진 비중을 확대하면 시험준비로 인해 직무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고 지휘관 평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지휘감독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반대로 심사승진 비중을 확대하면 지휘관의 권한이 커지는 대신 연고나 친소에 따른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넓어지고 승진인사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시험승진의 경우에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25% 고려되므로 지휘관의 평가가 무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다면평가를 전 계급으로 확대 실시하면 직무집행을 소홀히 하기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더하여 시험성적의 비중을 낮추고 평시 교육훈련의 비중을 다소 높인다면 승진시험에만 몰두하는 경향도 완화될 것이다. 시험승진이나 심사승

진의 문제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과 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험승진임용자 수를 70%로 하고 심사승진 비율을 30%로 낮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 내의 리더십, 관리능력 및 업무숙달도 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경위·경감·경정 승진의 경우에는 반대로 심사승진 비율을 70%로 하자는 의견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¹⁴⁰⁾ 다만, 가까운 장래 경찰의 독자수사권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경찰수사의 최일선에서 사법경찰리를 지휘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1차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위만은 충분한 직무관련 지식을 함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위 이하에의 승진임용은 시험승진 70%, 심사승진 30%의 비율로 하고 경감 이상에의 승진임용은 시험승진 30%, 심사승진 70%의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8) 승진심사절차 개선 (3단계 심사 폐지)

심사승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승진임용대상자 명부작성 이후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 중 제3단계 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행하되, 매년 경찰청이 시달하는 ‘고려사항’에 입각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124면 참조). 그런데 그 ‘고려사항’의 대부분이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판단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승진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나 각종 의혹과 불평불만이 끊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3단계 승진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의 승진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단지 제1, 2단계의 승진심사 결과를 점검하고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동점자 처리만을** 행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상급자들은 어차피 근무성적 평정과 제2단계 심사의 ‘지휘관 추천’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각종 의혹과 지휘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3단계 심사체제를 유지할 실익도 그다지 크지 않다.

140) 임창호, 경찰수사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前註128), 23면.

2)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경찰관 자질향상을 위한 필수조건

교육훈련이란 모든 경찰관에게 임무 완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과정이다. 경찰교육기관은 신입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의 고유한 임무와 업무상 특성을 이해시키고 객관적 판단능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교육해야 함은 물론, 재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교육훈련은 경찰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중추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경찰관이 나날이 변화하는 법규를 이해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경찰조직은 국가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2006년 현재 경찰직 공무원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수많은 인재들이 경찰관을 지망하고 있다. 따라서 신입경찰관들의 자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관 교육훈련체제는, 이들이 경찰조직 내에서 각자의 능력을 계발하고 스스로를 연마하여 훌륭한 공직자로서 조직과 국가에 기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20년이 지나도 신규임용 당시의 지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만한 고집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철밥통’으로 전락하게 할 것인지를 좌우한다.

(2) 경찰교육 및 교과과정위원회 설치

올바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이 과학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교육기관의 책임자와 간부들이 교육과정이나 교과과정에 자의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종래 교육기관장이 바뀔 때면 저마다 조금씩 교과과정을 손질해 온 현실은 너무도 딱하다. 예컨대, 1990년대 이후 중앙경찰학교의 교과과정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형법

시수는 50여 시간에서 20여 시간까지 들쭉날쭉 변경되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층의 방문이 예고되면 느닷없이 제식훈련 시수가 부풀려지기도 한다. 이래서는 체계적이고도 표준화된 교육이 불가능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경찰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경찰인사와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권한을 지닌 **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교육 및 교과과정 (소)위원회』**를 상설해야 한다. 소위원회에서는 모든 교육훈련과정과 각 과정별 교과과정의 신설·변경·폐지는 물론이고, 교과운영 및 평가 기준 제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교육체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또는 교과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는 그 의견을 소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 후, 경찰위원회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소위원회는 경찰위원 중에서 책임자를 선발하여 구성하되, 반드시 경찰관 출신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과정에서는 어차피 관련 부서의 담당자(현직 경찰관)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되므로 그 심의와 의결만은 가능한 한 객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면, 아래에서 제시하는 교육훈련 개혁과제가 모두 『경찰교육 및 교과과정 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에 포함된다.

(3) 학교교육체제의 개선: 교과과정 개편과 평가강화

① 교과과정 개편

현행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교과과정의 합리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특히 신입경찰관 교육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수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교과목 수는 많지만 깊이는 없는 ‘겉핥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익숙해지기 어려운 업무에 관한 실습에 시간을 배정하거나, 심지어 3개월 정도만 일해 보면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실무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기본교과목의 시수를 줄이기도 한다. 예컨대, 중앙경찰학교의 신입경찰교육과정에서는 누구나 몇 번만 ‘구경해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교통범칙금부과통지서

(‘딱지’) 발급을 ‘실습’시키기도 한다. 우연한 총기사고가 발생하면 갑자기 사격시간을 늘리고, 국회의원 한명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변하면 인권교육 시간을 늘리느라 사격실습 시수를 단축하는 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교육에 ‘기본원칙’이란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경찰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은 교수요원들의 이해관계나 지휘관의 관심사 또는 정치권의 즉흥적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경찰교육 및 교과과정 위원회』는 경찰관에게 진정 필요하면서도 실무현장에서의 관행이나 선임자의 지도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원리적(原理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할 최적의 교과과정을 다시 설계하여야 한다. 우선 모든 경찰교육과정, 특히 신입경찰관 교육과정의 교과목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② 평가강화

앞에서도 충분히 강조한 바와 같이, 어떠한 교육훈련이든 그것을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관 개개인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여 실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되었는지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규정에서도 모든 교육훈련에 대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신입경찰 교육과정에 입교한 자는 ‘말썽 없이’ 시간만 보내면 누구나 임관된다. 심지어 일부 경찰교육기관에서는 시험 전에 출제예상문제를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정말 한심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경우에는 교육생 대부분이 학과수업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시험을 앞두고 예상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교수요원에 대해 격렬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래서는 ‘우수인력 양성’이란 헛구호에 불과하다.

엄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만 조직의 기강이 바로서고, 기강이 바로서면 말썽도 없어진다는 당연한 원리는 단지 교육과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가) 신입경찰관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혜택(incentive)을 부여하되, 하위 10%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낙제점(만점의 40% 미만)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교육자 전원이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아무리 엄격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낙제를 면할만한 실력을 갖춘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수준 미달 경찰관을 가려내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경찰관을 계속 걸러낸다는 취지를 가진 것이며, 따라서 법리상으로는 조직 원리상으로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사기업에서는 본래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조직관리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나) 낙제점을 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재이수의 기회를 부여한다. 신입경찰관 교육과정에서는 1기(학기)에 세 과목 이상 낙제점을 받거나 전교육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60%에 미달하는 자는 당연 퇴교시켜야 한다. 재직자 교육훈련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재이수 의무를 부과한다.

(다) 재직자 교육훈련과정의 성적을 시험승진 및 심사승진 시의 ‘교육훈련평정점’에 차등 반영할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훈련평정점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한다. **모든 경찰관에게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그 결과(성적)를 승진 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경위까지의 근속승진이 허용된 2006년도 부터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하다 할 것이다.

(4) 교육주체

① 수준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2002년 보고서에서도 경찰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의 자격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거니와, 최근 교수요원의 선발과 승진임용에서의 특례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수요원 후보에 대한 위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군은 거의 모든 장교에 대해 일반대학 석사과정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매우 크리라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교수요원에 관한 한 **학비보조를 통한 위탁교육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수요원 후보를 선발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수탁대학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까지의 교육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우수인력을 양성한다면 경찰관 교육훈련의 내실화는 물론 경찰 전체의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강의평가제 전면 도입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훈련 강좌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의평가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은 새삼 설명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가) 지난 10여년간 강의평가의 대상이었던 필자(김용세)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피교육자의 주관에 따라 감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던가, “강의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인기위주의 교육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비판은 근거가 거의 없다. 예컨대, 과제를 부여하지 않거나 자주 휴강하는 강좌의 강의평가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휴강 공고를 보고 환호하던 학생도 학기말에는 담당교수가 성실하게 교육에 임했다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강의평가 설문구성이 중요하다. 한국 대학에 강의평가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는 설문이 불필요하게 길고 질문의 취지가 모호한 설문도 많았다. 그렇지만 강의평가 제도가 10년 이상 실시되어 확고하게 정착한 현재의 설문들은 평가자(학생)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관해서만 응답하도록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표 4-16>참조).

(다) **경찰교육기관의 모든 교육생에 대해 최종 평가일 전일(前日)의 교육시간 종료 후 온라인으로 강의평가를 입력**해야만 최종평가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라) 강의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해당 교관에게만 통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 강의의 문제점을 스스로 점검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강의평가 결과가 3회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 교관은 교육기관 이외의 부서에 재배치한다.

<표 4-16> 강의평가 설문지 예시

학년도/학기	과목명	담당교수	학부(과)/학년			이수구분	
문항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강의목표는 분명하고,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수는 강의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수는 강의내용을 조리 있고 명쾌하게 전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수는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재나 참고도서는 적절히 선택되고 이용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강의의 수준이나 난이도는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적절히 제시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 강의를 통해 학문적 또는 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 수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재

경찰교육기관의 교재를 대폭 교체해야 한다. 예산 등 각종 장애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사용되는 교재의 대부분은 너무나도 부실하다. 경찰교육기관의 교재는 단지 해당 교육훈련과정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과정에서의 참고자료이자 승진시험을 위한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교재 중에는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교과서 몇 가지를 조약하게 정리하거나, 수십년 동안 거둬 표절된 낡은 외국서적을 기본으로 한 것도 없지 않다. 예컨대, 수사 교재의 상당수가 아직도 1973년에 처음 출간된 츠나카와 마사오(綱川政雄)의 『初期捜査の實際』를 상당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며, 심지어 기존 교재 또는 시중의 교과서를 다시 정리했을 뿐 법령의 개폐조차 반영되지 않은 교재도 있다.

「경찰교육 및 교과과정 위원회」 주도로 경찰관 교육훈련용 교재 전반을 교체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과목에 따라서는 시중에 출간된 정규 교과서의 저자와 접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교과서를 「경찰관 교육훈련용」으로 다시 편집하도록 한 다음, 매년 적정 수준의 원고료(또는 저작권료)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피해자대책에 관한 교육훈련체제

1. 현황개관

1) 정책부서의 구상과 조직적 실천

2004년 경찰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신설된 후 한국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기술한 바와 같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피해자대책계, 지방경찰청 피해자담당, 각급 경찰서의 피해자담당관 및 피해자서포터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도 발간되었다. 2005년도에는 수사보안연수소에 범죄피해자대책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서포터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임상심리사를 특별채용하여 「위기개입」전문가로 활용할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경찰의 피해자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지식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자보호가 자연스럽게도 일상적인 직무집행의 일부로 정착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감독하거나 지식수준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리하여 일반시민들이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실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본청 정책부서의 구상이 일선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피해자관련 교육현황

(1) 일본의 경우

① 일반현황

일본 경찰은 1996년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고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한 이래 경찰의 내부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일본피해자학회를 비롯한 피해자지원 민간조직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점령당국은 군국일본의 검찰권을 약화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권력을 분산시켰다. 현행법상 일본경찰청은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청에 대해 명령을 발할 수 없다. 통달(通達)을 통해 권고·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경찰청은 직무집행의 기본방침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하여 통달을 발할 수 있으며 지방경찰은 대체로 경찰청의 통달을 충실히 이행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경찰청의 권고 또는 지도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본청에서 구상된 피해자대책의 우선순위가 지방경찰에서는 달라질 수 있고 그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제에서는 지방경찰이 각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전이 촉진될 수도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본청의 피해자대책 구상이 일선 경찰조직의 말단까지 충분히 전파되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본경찰은 이미 1990년대 말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직과 직무집행의 원칙을 완비했지만,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② 교육과정

<표4-17>은 일본 경찰청이 작성한 피해자대책 교육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신규채용 경찰관과 승진임용 경찰관에 대한 기본교육은 2~6시간으로 편성된 ‘피해자대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교육훈련은 피해자대책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에서 실시된다. 다만, 본청 피해자대책실의 구상이 반드시 모든 지방경찰에서 그대로 구

현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대책 전문교육과정의 경우 2004년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¹⁴¹⁾ 중 41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에서만 실시되었고 총 909명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같은 해 피해자대책지도 전문교육과정 수료자는 20명, 피해자상담기술 전문교육과정은 초급 18명, 상급 2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소년반 이수자는 초급이 60명, 상급이 20명이었다.

<표 4-17> 일본경찰의 피해자대책 교육과정

교육과정	담당교육기관	교육내용
1. 경찰교육기관에서의 연수		
(1)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 신입경찰에 대한 초입과 연수	도도부현경찰학교	피해자대책 6시간
㉡ 각 직무분야에의 배속 전 연수	도도부현경찰학교	피해자대책 2시간
㉢ 승진임용자 연수		
• 순사부장(경사) 임용과정	관구경찰학교	피해자대책 6시간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2시간
• 경부보(경위) 임용과정	관구경찰학교	피해자대책 6시간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4시간
• 경부(경감) 임용과	경찰대학교	피해자대책 2시간
(2) 피해자대책 종사자 연수		
㉠ 피해자대책 전반에 관한 연수		
• 피해자대책 전문교육과정	도도부현경찰학교	5일간
• 피해자대책지도 전문교육과정	경찰대학교	5일간
㉡ 피해자대책 각 분야별 연수		
• 피해자상담기술 전문교육과정 초급, 상급과정 및 소년반 초급·상급으로 분류	관구경찰학교	5~10일간
2. 연수회 및 직장훈련		
㉠ 피해자, 유족, 민간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하여 연수·강연회 실시		
㉡ 피해자대책실 근무자의 각 경찰서 순회교육		
㉢ 피해자지원을 경험한 직원의 체험기 배포 등.		

* 출처: 2005.10. 일본경찰청 범죄피해자대책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함

141) 1都(東京都), 1道(北海道), 2府(大阪府, 京都府), 43개의 현(縣).

③ 교과과정

피해자대책지도 전문교육과정은 일본경찰이 실시하는 피해자대책 일반에 대한 교육과정 중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은 과정이다. 나아가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피해자상담(카운슬링)기술 전문교육과정이 있다. 다음 페이지에 각 교육과정별 교과내용을 소개한다(<표4-18><표4-19><표4-20>).

<표 4-18> 일본경찰의 피해자대책지도 전문교육과정 수업일정표

	1교시 (90분)	2교시 (90분)	3교시 (90분)	4교시 (90분)	5교시 (90분)
제1일	점 호	피해자대책의 현상과 과제, 직무윤리교양	법원에서의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언론대책
제2일	연 습	경찰의 피해자대책	변호사의 피해자지원	법무성의 피해자지원활동	경찰정책상 피해자대책
제3일	연 습	생활안전 경찰의 피해자대책	연 습	피해자지원 (동경)도민센터 견학	
제4일	연 습	교통경찰의 피해자대책	연 습		대리피해
제5일	연 습		검토회	수료식	

*출처: 일본경찰청 범죄피해자대책실(2005년)

<표 4-19> 피해자상담기술(초급) 교육과정 수업일정표

	1교시 (90분)	2교시 (90분)	3교시 (90분)	4교시 (90분)	5교시 (90분)
제1일	입교식	오리엔테이션	피해자 카운슬러로서의 지원활동		연습 (수사와 카운슬링)
제2일	연습 (수사와 카운슬링)	범죄피해자대책의 경위와 개요, 직무윤리	카운슬링 개론	케이스 스터디	연습(사례검토)
제3일	롤 플레이(역할극)		유족에의 대응	어린이의 상처에 대하여	연습(사례검토)
제4일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심리 I (PTSD)	피해자심리 II (인지적 변화와 대응)	연습(사례검토)
제5일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하여	총괄(질의응답과 마무리)	수료식		

*출처: 일본 관동관구 경찰학교(2005년)

<표 4-20> 피해자상담기술(상급) 교육과정 수업일정표

	1교시 (90분)	2교시 (90분)	3교시 (90분)	4교시 (90분)	5교시 (90분)
제1일	입교식 오리엔테이션	범죄피해자대책의 경위와 개요	임상심리사에 의한 피해자 카운슬링		연습
제2일	연습		대리피해		연습
제3일	워크숍		사례검토		연습
제4일	연습	멘탈헬스	연습	사례연구	
제5일	연습(마무리)				

*출처: 일본 관동관구 경찰학교(2005년)

④ 교 재

피해자대책에 관한 교육용 교재는 사실상 따로 없다. 초임과에 한해서 교육용 교재의 일부(경찰교과서 제2장)에 피해자대책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수사관의 피해자보호 매뉴얼로서 『피해자대응 매뉴얼』을 모든 수사관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범죄수사 규범에서도 피해자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범죄피해자대책실에서도 교육과정별로 교육내용을 확정하고 기본교재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의 교육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의 신입경찰관 교육훈련과정 및 계급별 기본교육과정에는 2시간 내지 3시간의 피해자학 또는 피해자보호 관련교과목이 설강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범죄피해자의 문제성을 이해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정으로는 경찰종합학교의 수사요원 양성과정에 피해자 관련교과목이 3시간 편성되어 있는 외에, 2005년에 처음 개설된 피해자서포터 전문교육과정에서 피해자대책에 관한 체계적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수사보안연구소에 설치된 피해자서포터 전문과정의 교과체계는 <표4-21>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서포터 전문과정에서는 감수성훈련과 심리상담 기술연마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표4-21> 피해자 서포터 전문과정 교과 체계 (수사보안연수소)

분 야	교 과 목	시 간	비 율
총 계	13과목	38	100
소양과목	2과목	4	10.5%
	1. 수사와 인권	2	
	2. 공직윤리	2	
직무과목	8과목	28	73.7%
	1. 피해자학	2	
	2. 외국의 피해자보호실태	2	
	3. 우리나라 피해자보호제도	3	
	4. 감수성 훈련	5	
	5. 상담이론	3	
	6. 피해자 상담원리와 기법	3	
	7. 상담실습(역할극)	4	
	8. 범죄별 피해자 보호(사례연구)	6	
기 타	3과목	6	15.8%
	1. 입교 및 수료	2	
	2. 설문조사	1	
	3. 자료수집	3	

*출처 : 경찰청, 2005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 159면.

2. 범죄피해자대책 교육·교과과정

1) 전문화 및 차별화

모든 경찰관이 모든 직무영역에 관하여 만능일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피해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문제에 관해 완벽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언제나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이다. 범죄자에 대한 정의실현을 위해 피해자의 불이익을 가중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경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경찰은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지만, 수사 경찰관 모두가 각자 피해자보호조치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것은 없다. 피해자 문제는 단순한 업무처리 기능이나 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관련법규와 실무능력 외에 인간 본성과 심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며 특히 장기간의 임상실습과 경험이 중요하다. 수사경찰관은 제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피해자대책 전문가 또는 의사 등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의 여부, 지방청 산하에 조직된 「피해자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소속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지의 여부 등을 판단할 정도의 지식을 갖추면 족하다(<표2-7>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피해자대책도 과학수사기법(감식)이나 정보통신 분야처럼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특화**시켜 관련 전문가(각급 경찰관서 피해자계 직원, 위기개입전문가 또는 화해알선전문가 등)를 양성하고, 피해자대책에 관한 **직무영역에 따라 교육훈련을 차별화**해야 한다.

2) 교육과정

(1) 경찰피해자대책 교육과정의 설계

피해자관련 업무의 빈도와 강도는 담당한 직무영역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계급이나 직무권한의 크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재직자 교육훈련, 심화교육 및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단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표4-22>).

<표4-22>에 제시된 4단계의 교육과정이 모두 독립적인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 이외에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피해자관련 교과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심화교육과정」에 속하는 청문감사과정을 예로 든다면, 경찰대학에 설치된 기존의 교육과정을(<표4-9>) 개편하여 피해자학 관련과목을 최대 28시간까지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시간이 다소 늘겠지만, <표4-22>의 적용교육과정 모두를 똑같이 개편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수사요원양성과정과 여성·아동범죄에 대처하게 될 생활안전과정은 각각의 업무 특성에 따라 특정과목

의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표 4-22> 경찰 피해자대책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	대 상	적용교육과정	교과내용
상시교육	모든 경찰관	직 장 훈 련 (지방경찰학교 교육훈련)	1~2년 단위 교육계획을 설계하여 소그룹으로 편제된 경찰관들을 반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침, 규정 숙지 • 일반재직자 교육내용
일반재직자 교육과정 (20시간)	모든 경찰관	신입경찰관 교육과정 계급별 기본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학개론 • 피해자심리 • 감수성 훈련 • 역할극을 통한 실습 •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I)
심화교육과정 (4일/2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경과 경찰관 • 여성청소년계 근무자 • 교통사고조사계 근무자 • 민원상담실, 청문감사관실 근무자 • 순찰지구대 근무자 	전문 교육과정 청문감사과정/리더십향상과정 의사경찰과정/국제범죄수사과정/대테러과정/경찰인권과정/생활안전과정/지역경찰과정/민원담당관과정/청소년범죄대책과정/수사요원양성과정/경비과정/교통외근·교통사고조사·도주사건수사과정 수사보안연수소 일부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학 • 피해자심리 • 감수성훈련 • 역할극을 통한 실습 • 피해자관련 규정 및 직무지침 • 피해사례 소개 •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II) • 피해자대응요령(기초심리상담) • 피해자유형별 특성과 대응방법(I) • 민간조직과의 협력방안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 (4주/1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피해자계 근무자 •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서포터) • 임상심리사 특채경찰관 • 형사화해 알선 담당자 	전문 교육과정 (신설) 피해자대책실무과정 관련분야 교수요원양성과정 범죄피해자서포터전문교육과정 위기개입전문가 양성과정/형사화해알선전문가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학 • 피해자심리 • 감수성훈련 • 역할극을 통한 실습 • 기초정신의학 • 위크숍 •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II) • 심리상담 이론과 실습 • 민간조직과의 협력체제 • 피해자유형별 특성과 대응방법(II) • 회복적 사법과 대화기법 • 피해사례 분석 • 피해자관련 규정 및 직무지침

다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만은 신설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 경찰의 피해자대책 전문요원으로서 최상급의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만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2) 상시교육과 일반재직자 교육과정

모든 경찰직원에 대해, 제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음은 물론, 보다 전문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지속적인 추수(追隨)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기능을 함양케 한다.

① 상시교육

직장훈련과 지방경찰학교 교육훈련을 통해 실시한다. 직장훈련과 지방경찰학교 교육훈련의 내용을 피해자대책 관련과목만으로 채울 수는 없다. 또한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대책에 관한 기초소양을 구비한 이후에는 직장훈련시간을 피해자대책에 집중적으로 할애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다만, 한국의 모든 경찰관이 <표4-22>에 따라 개편되는 일반재직자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직장훈련 및 지방경찰학교 교육훈련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문제에 관한) 일반 소양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경찰청 피해자계는 -교육계와 협의 아래- 소속 직원 수, 직장훈련 및 지방경찰학교의 1회 교육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표준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표준교육훈련계획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교과과정을 소속 직원 전원이 한차례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산하 경찰서에 하달한다. 교육내용은 일반재직자 교과과정의 기본과목들을 기본으로 하되 『피해자관련 규정 및 지침』, 『피해자지원민간단체와의 관계』 등 직무집행의 현장을 고려한 과목들을 적절히 추가하면 될 것이다. 교육주체는 피해자대책 전문가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찰직원, 관련분야 교수, 의사, 민간조직의 전문상담원 등을 활용한다.

<표 4-23> 표준교육훈련계획(직장훈련) 예시

2006년도		
1월	사격	
2월	피해자학1	
3월	정신교육1	기관별로 내용구성
4월	피해자학2	
5월	정신교육2	기관별로 내용구성
6월	피해자심리	
7월	사격	
8월	피해경험청취	
9월	정신교육3	기관별로 내용구성
10월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11월	정신교육4	기관별로 내용구성
12월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② 일반재직자 교육과정

교육목표는 직장훈련 등을 통한 상시교육과 동일하지만, 보다 집중적이고도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학, 피해자심리,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등 이론교육은 1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감수성 훈련과 역할극을 통한 실습 등 실제상황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10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단계에서는 자격 있는 강사를 발견 초빙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전공영역별로 특히 ‘피해자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이 흔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해자심리는 심리학 전공교수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관련 저서 또는 논문 등의 실적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등, 각 과목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도 피해자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경험을 쌓은 사람을 강사로 위촉해야 한다.

(3) 심화교육과정

범죄피해자와의 접촉가능성이 높은 수사경찰관 및 민원상담실, 청문감사관실 및 순찰지구대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직무집행 기술을 숙지하게 한다.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및 수사보안연수소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문교육과정의 교과과정을 다소 수정하거나 교육기간을 늘여서 피해자대책 관련 교과를 편성하되, 전문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의 종류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활용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기초 없이는 실로 다양한 (엄밀하게 말해서 완전히 똑같은 사례가 되풀이 될 수는 없다) 상황 속에서 매번 가장 적절한 행동원리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강사 섭외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피해사례 소개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을 초빙하여 강의하게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진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더욱이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자신의 피해사례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이욕이나 이기심 등으로 인하여 사실이나 감정을 왜곡 과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찰청 피해자계 등이 전문가 및 피해자지원 민간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공개되지 아니한 곳에서

피해자의 경험담 등을 녹화하거나 혹은 TV방송의 추적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 등을 폭넓게 수집한 뒤 교육목적에 맞도록 편집하여 시청각 교육자재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될 수 있고, 심리학 등의 전문가가 전체 수업을 이끌면서 피해사례를 분석해 주거나 현장에서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

경찰 피해자대책에 관한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경찰관서의 피해자대책 담당자, 각 형사(수사)팀별 피해자지원 전담직원(서포터), 임상심리사 특채찰관, (향후 우리나라에도 형사화해제도가 도입되고 경찰의 화해알선 기능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형사화해 알선전문가 및 관련분야 교수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은 모든 피교육자가 다른 직무분야의 지식과 기능은 이미 숙지한 것을 전제하고, 오직 피해자대책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표4-22>에 예시한 바와 같이 피교육자의 직무영역에 맞추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신설)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교과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대책에 관한 교과과정(커리큘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대책 전문가 양성과정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교과과정에 <표4-22>의 교과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① 이 때, 피해자학(개론)과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피해자유형별 특성과 대응방법, 민간조직과의 협력방안, 회복적 사법, 피해자관련규정 및 직무지침 등은 모두 ‘피해자학’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고, 피해자심리 감수성훈련, 심리상담, 대화 기법 등은 모두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포괄하여 교육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교관의 관심사나 교육역량에 따라 특정한 영역만 교육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교육내용을 표준화 하기 위해서는 <표4-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목을 세분화하여(교육시간을 잘게 세분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현 단계에서는 각 과목별 담당교관을 경찰관으로 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부득이 교육의 대부분을 외래강사에 의존해야 하는 바, 관련지식이외에 열성과 교수역량을 함께 갖춘 강사를 위촉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강의평가제 도입을 통해 (181면이하) 강의내용의 개선과 강사교체가 실현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무고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재활을 지원할 국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이제는 한국 경찰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004년 경찰청 범죄피해자 대책실이 출범한 이후 한국경찰의 피해자정책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피해자)들은 아직도 경찰의 피해자정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시민일반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백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 피해자 보호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관련 법규 또는 직무규정에 명시하고 b) 구체적 실천방법을 시행세칙(또는 지침 등)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한편 c) 직무내용별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d) 당해 직무집행을 둘러싼 공과(功過)에 대해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보호의 당위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무 원칙들이 저절로 몸에 배는 것은 아니다. 귀찮고 신경 쓰일 뿐 ‘실적’이나 ‘시험’과는 아무 관계없는 ‘생경한’ 업무가 상부의 지시만으로 일사불란하게 실천될 수는 없다.

내부의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집단적 반발을 일삼는 그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직무집행의 성과를 높여 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 조직 내 특정집단이 ‘무리를 이루어’ 수뇌부의 지휘에 저항하는 오늘(2006년 상반기) 한국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인기와 평판에 연연하여 수뇌부 스스로가 원칙을 무너뜨렸던 어제의 반영(反影)이다. 2002년 보고서에서도 강력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일선경찰관들이 ‘좋아하도록’ 승진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이른바 ‘이수만점제(履修滿點制)’를 도입함으로써 경찰관 교육훈련을 민방위교육과 다를 바 없이 만들더니 급기야 ‘무차별 경위승진’까지 약속하자, 이제는 “우리의 의견에 따라 (승진인사를) 행하라”는 식의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엄정한 원칙을 선언하고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만이 기강을 바로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며, 기강이 바로 서야만 조직과 개인도 발전할 수 있다. 피해자정책도 다를 것 없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경찰의 피해자정책을 이끌어갈 조직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시책을 실천 가능한 모습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제3장). 마지막으로, (단지 피해자정책에 한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찰의 비약과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경찰의 교육·인사시스템을 혁신할 최소조건을 탐구하고, 경찰의 피해자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교육·훈련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제4장).

그렇지만,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해결한 것보다 더 많은 과제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말았다. 우리 경찰의 피해자정책이 건강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의 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 a) 경찰 피해자대책의 근거가 될 법령 및 규정의 정비, 관련 직무집행의 공과에 따른 상별기준의 제정.
- b) 이 보고서 제3장은 그대로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직무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사경찰의 직무매뉴얼로서 실질적인 효용을 발휘하려면, 영역별로 남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지침’으로서는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여 ‘읽히지 않고 있는’ 각종 직무지침을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
- c)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표준교안과 교재 개발.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용세, 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23호(2005)』, 224~253.
- _____,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2권2호(2004.10)』, 27~52.
- _____,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발전과정, 『새울법학 제5권2호(2002)』, 85~124.
- _____, 일본 범죄피해자보호법(2000.5)의 피해자 보호시책-형사화해제도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9권1호(2001)』, 103-131.
- _____, 현행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1호(2000.5)』, 77~100.
- _____, 범죄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연구 10권3호(1999), 113~144.
- 김용세·김종덕,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전망, 『피해자학연구 제11권2호(2003.10)』, 261~292.
- 김용세·도중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 『비교형사법연구 제2권2호(2000)』, 249~276.
- 김용세·박광섭·도중진,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연구보고서 01-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12.
- 박순진·최영신, 199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성광호, 新犯罪搜查論, 서울:진리탐구, 1997.
- 손동권,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경찰대학논문집 제13집(1993)』, 191~225.
- 吳秉周, 警察權의 根據 및 限界, 『법조(47권2호)』, 1998.2, 60~78.
- 이경재, 영국 피해자학의 발전과정과 그 주요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1998)』, 3~26.
- _____, 譯, 日本警察의 被害者對策, 『형사정책연구 제7권1호(1996)』, 285~308.
- 李蓮洙 편, 『범죄수사규칙해설』, 서울: 동민출판사, 1993.

- 이황우·김진혁·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3.
- 장규원, 독일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1998)』, 27~50.
- _____ 譯, 宮澤浩一,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1998.
- 서울고검, 『搜查指揮論』, 1998.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2005.
- 경찰청, 『대여성·아동범죄실무매뉴얼』, 2004.

2. 북미·유럽문헌

- Barnett, R.E. Restitution: A new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Ethics, i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Vol. 87, no. 1., (1977) 279~301.
- Barnett, R.E. Restitution: A new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in: B.Galaway and Hudson(eds.), Perspectives on Crime Victims, St.Louis: The C.V.Mosby Co. 1981, 245-261.
- Blau,G./Franke,E., Diversion und Schlichtung, in: ZStW Bd.96(1984), 485~501면.
- Castellano, Thomas C.,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in Controlling Crime: a Plea for Balanced Punishments, i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Journal, Vol.23.
- Christie, N. Conflicts as Property, i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17 No.1(1977.1) 1-15.
- Erez, E. Victim Participation in Sentencing : Rhetoric and Reality. in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8, 19~31.
- Fattah, E.A. Victim Redress and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in Theory and Practice Some Personal Reflections, in; 法學研究 第35卷1号(1999.7), 日本北海學園大學, 182-155면.
- Forst, B., & Herson, J.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to Victim Harm,

- Washington, D.C.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84.
- Frehsee, D. Schadenswiedergutmachung als Instrument strafrechtlicher Sozialkontrolle, Berlin: Dunker & Humboldt, 1987.
- Hendricks, James E. · Mckean, Jerome · Hendricke, Cindy Gillespie, Crisis Intervention: Contemporary Issues for On-Site Interveners,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2003.
- Hudson, J., & Galaway, B. Victims, Offenders and Alternative Sanctions,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0.
- Hough, M., & Moxon, D. Dealing with Offenders: Popular Opinion and the Views of Victims. Findings from the British Crime Survey. in: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1985, 160~175면.
- Hudson, P.S. The Crime Victim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ime for a Change. in: Pepperdine Law Review, 11, 23~62.
- James, Rihard K.,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Belmont: Tomson Brooks, 2005.
- Johnstone, G., Restorative Justice: Ideas, values, debates, Willam Publishing, 2002.
- Kelly, D. Victim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Lurigio, A., Skogan, W. & Davis, R.(Eds.), Victims of Crime. Problems, Policies and Programs, Newbury Park, London & New Delhi: Sage Publication, 1990, 172-187.
- Maguire, M., & Shapland, J. The "Victim Movement" in Europe, in : Lurigio, A., Skogan, W. & Davis, R.(Eds.) Victims of Crime. Problems, Policies and Programs, Newbury Park, London & New Delhi : Sage Publication, 1990, 205~225면.
- Mawby/Gill, Crime Victims : Needs, Services and the Voluntary Sector, Tavistock Pub., 1987.
- Moriarty, Laura J., Policing and Victims,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2002.
- Neumann, U.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 in: Hassemer, W. (Hrsg.) Strafrechtspolitik, Frankfurt a. M. etc. : Peter Lang, 1987. 225~253.

- Reynolds, Jean・Mariani, Mary, Police Talk: A Scenario-Based Communications Workbook for Police Recruits and Officers,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2002.
- Shapland, J. Victim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mpensation. i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4, 131~149.
- Umbreit, M.S., National Survey of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for Victims of Crime(OVC), 2000.4.
- Zehr,H., Stumbling Toward A Restorative Ideal, New Perspectives on Crime and Justice 7(1989)

3. 일본문헌

- 新 恵里, 犯罪被害者支援, 積信堂, 2000.
- 新屋達之, 刑事手續への被害者参加,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 阿久津照美, 被害者相談をめぐる一考察, 『警察學論集』 第50卷4号(1997.4), 121~ 127.
- 市村眞一, 犯罪被害者と報道, 『法律のひろば』 第50卷3号(1997.3), 45~51.
- 伊藤 眞, 要綱骨子における民事的事項について, 『ジュリスト』 2000.4.15(1176号), 48~56.
- 太田達也, 犯罪被害者支援の國際的動向と我が國の展望, 『法律のひろば』, 第53卷2号(2000.2), 4~18.
- 太田裕之, "被害者對策の歴史的經緯と全國警察における推進狀況(上)・(中)・(下) 『警察公論』 第53卷9・10・11号(1989), 20~27・62~70・64~72.
- 大谷直人 外, 犯罪被害者の保護, 『ジュウリスト』 2000.4.15(1176号), 2~38면.
- 大谷 實, イギリスにおける犯罪被害者の救濟, 『警察學論集』 第44卷12号(1991) 85~99.
- 奥村正雄, イギリスにおける被害者學の生成と發展 『被害者學研究』 第6号(1996) 日本被害者學會, 81~107.
- _____, イギリスの刑事手續における犯罪被害者支援對策, 『犯罪被害者對策に關する

- 調査研究報告書』, 財団法人全國防犯協會連合會, 1999, 35.
- 加藤克佳, 「刑事訴訟における犯罪被害者の保護」, 夏日文雄先生古稀記念論文集, 中部日本教育文化會, 2000.1, 197~254.
- 甲斐行夫, 「刑事手続における犯罪被害者等の保護に関する従前の法整備等の状況と立法的課題」, 『ジュリスト』, 1999.9.15, 13~17.
- 酒卷 匡, 「犯罪被害者保護等のための新法律」, 『法學教室』, 240号(2000.9) 36~46.
- 椎橋隆幸・小木曾綾, 「犯罪捜査と被害者保護」,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 瀨川 晃, 「被害者支援の歴史」, 大谷 實 外編, 『犯罪被害者支援の基礎』, 東京法令出版, 2000.
- 田口守一, 「犯罪被害者への情報提供」,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 _____ 譯, Kaiser, M., 「被害者保護法からみた刑事司法における被害者の地位」, 『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215.
- 富田信穂, 「犯罪被害者に対する民間機關の活動」, 『法律のひろば』, 第50卷3号(1997.3), 28~36.
- 野井祐一, 「英國の犯罪被害者支援政策と警察の関わり」, 『警察學論集』, 第53卷3号(2000.3), 53~75.
- 浜井浩一・横地 環, 「連合王國における犯罪被害者施策」, 法務總合研究所編, 『法務總合研究所研究報告 9号』, 2000.
- 原田宗宏, 「警察の犯罪被害者對策について」, 『法律のひろば』, 第50卷3号(1997.3), 21~28.
- _____ , 「警察の犯罪被害者對策の推進狀況について」, 『警察學論集』, 第50卷4号(1997.4) 47~66.
- 藤本哲也・朴元奎,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被害者の權利運動と被害者救濟政策」, 『被害者學研究』, 第4号(1994), 日本被害者學會, 35~54.
- 水谷規男, 「被害者の手續參與」, 『法律時報』, 第71卷10号, 37~42.
- _____ 譯, Joutsen, M., 「被害者政策の變化」, 『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東京: 成文堂, 1995.
- 諸澤英道, 「被害者學の過去・現在・未來」, 『法學新報』, 94卷6.7.8号(1988) 104~109.
- _____ , 「犯罪被害者對策の現状と課題」, 『法律のひろば』, 第50卷3号(1997.3), 4~10.
- _____ , 「日本における被害者支援團體の課題と展望」, 『自由と正義』, 1998.11. 112~

123.

_____, 『新版 被害者學入門』, 成文堂, 1998.

安田貴彦, 諸外國における警察の被害者対策, 大谷 實 外編, 『犯罪被害者対策の現状』,
東京法令出版, 2000.

_____, ‘米國における警察による犯罪被害者援助活動—ロチェスター市警察の被害者
援助組織を事例として(上)(下)’, 『警察學論集』 48卷1号・2号, 1995.

山上 皓, 被害者支援の新たな展開に向けて 『警察學論集』 第50卷4号(1997. 4) 94~111.

横山雅之, 生活安全警察における被害者対策について 『警察學論集』 第49卷4号(1996.4),
57~74.

연구보고서 2006-02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경찰관 교육방안

2006년 11월 발행

2006년 11월 인쇄

발행인 : 이 병 진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88번지
인쇄처 : (주) 대한피앤디
(TEL : (02)2268-0458)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